

서울시보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001호 2010. 09. 30.(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한강자전거도로 (군자교지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서울특별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847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02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
제50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4
제5023호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
제5024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바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5
제5025호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5026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12
제5027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502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5029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5030호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2
제5031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5032호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5033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5034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	39
제503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응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40
제50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503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규 칙]

제3767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48
제3768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2

[입법예고]

제2010-168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제2010-1684호 서울특별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제2010-1685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제2010-170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6

◆ 고 시

제2010-336호 청량리지구 청량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8
제2010-3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05
제2010-3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9
제2010-33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1

제2010-340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231
제2010-341호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231
제2010-342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232

◆ 공 고

제2010-1671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공고	233
제2010-167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33
제2010-1679호 서울특별시 수해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계획 공고	234
제2010-1680호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취소 공시총달 공고	236
제2010-168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236
제2010-1688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37
제2010-168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38
제2010-1690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38
제2010-16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41
제2010-1692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계획 공고	241
제2010-169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공고	246
제2010-169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47
제2010-169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48
제2010-1696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249

◆ 서울시교육청공고

제2010-15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51
----------------------------------	-----

◆ 구 고 시

제2010-7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중구)	252
제2010-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255
제2010-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인가(송파구)	255
제2010-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256

◆ 구 공 고

제2010-6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00병원 이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종로구)	257
제2010-6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성동구)	257
제2010-86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강동구)	258

◆ 사업소공고

제2010-152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지(한강사업본부)	262
제20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동부도로사업소)	264
제2010-1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북부도로사업소)	264

제2010-1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북부도로사업소)	265
제20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남부도로사업소)	268
제2010-24호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도봉소방서)	273
제2010-5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관악소방서)	273

◆ 기 타

제2010-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지방국토관리청)	274
제2010-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지방국토관리청)	274
제2010-23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지방국토관리청)	275
제2010-23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지방국토관리청)	277
제2010-23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지방국토관리청)	277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예술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차질 없는 사업수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예술섬 운영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재단은 관할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협력·조정 등을 해야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의 도시계획과 관리라는 공공영역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재단설립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3호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재산운용기금의 사업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4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장”이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공공용지”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장, 사업소장, 산하 공단 이사장 또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건립주체”란 동상·기념비·조형물(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수”란 동상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동상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관리기관장이 공공용지에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미 설치된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학문·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5조(건립위치) 동상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건립되도록 한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연고 여부
2. 건립 예정 장소인 공공용지와 동상등과의 조화여부

제6조(동상등의 제작기준) 동상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형성 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 부지면적) 동상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의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전별 심의

제8조(건립인가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동상등의 건립인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동상등의 성분 및 구조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후관리계획서

② 제1항의 건립인가 등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상등의 건립 및 이전
2. 동상등의 교체 및 해체
3. 동상등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 및 동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2. 관리책임자는 동상등을 순찰하여 동상등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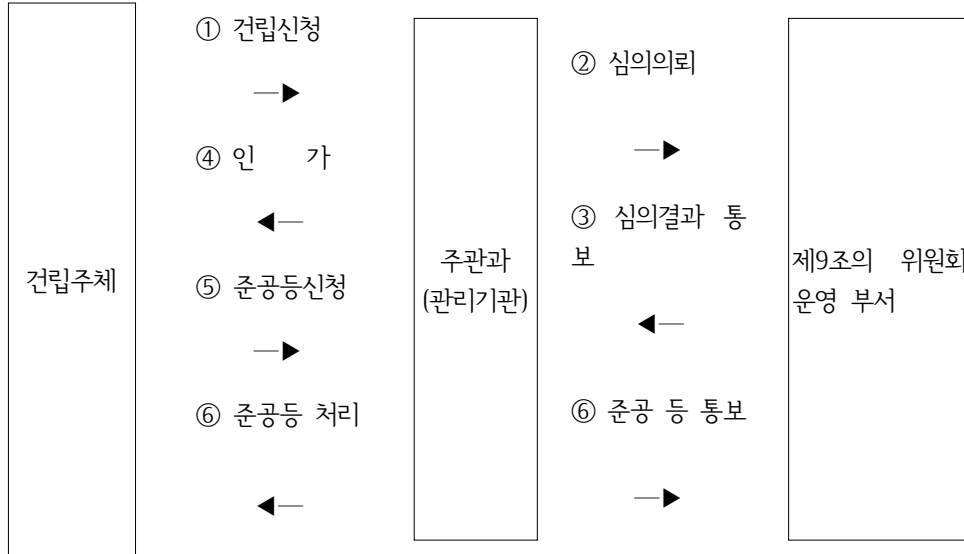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동상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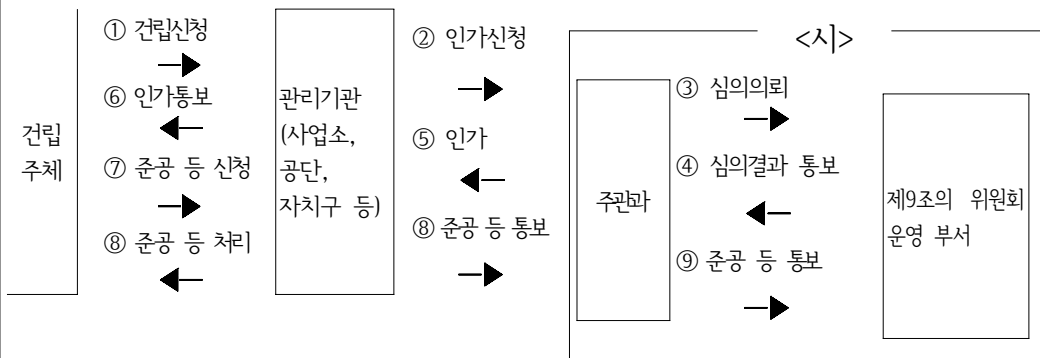
[별표]

업무처리 절차도

1. 건립주체가 시장에게 건립신청 시



2. 건립주체가 사업소장, 산하 공단, 자치구청장에게 건립신청 시



다만, 건립계획서를 접수한 시 주관과는 건립 예정장소와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서식>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년.월.일	
위 치		형 상	
구 조			
규 격			
건 립 자		관 리 주 체	
건립취지			
사건 또는 인물 소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가 동상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상 등의 건립·이전·교체·보수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5호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상담”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을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한다.

제3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조제목 중 “상담”을 “법률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상담”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청사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오후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을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적 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④ (생 략) 제6조(상담방법) ① (생 략)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법률상담----- -----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 제3조(상담실 위치) -----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법률상담-----)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상담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청사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시 노인 100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층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상담실의 예약인원 과다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사에 설치된 기존 무료법률상담실 외에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상담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 설치하는 상담실의 경우 각 상담실 여건에 따라 상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3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6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구역 중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구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기관리담당관으로 제출(또는 FAX 02-2115-7759)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대기관리담당관실 (02-2115-7763)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지역 중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다음의 자동차로 규정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특정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7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로, “설치하고 이를”을 “설치하고, 기금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조·보수 및”을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로, “설치, 보유하는데”를 “설치·보유하는데”로,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여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47조제1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65조 및”을 “법 제82조·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를 “영업자의”로,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위생 및”을 “식품위생과”로 하며, 제4호 중 “법 제71조의2”를 “법 제90조”로, “지급의 지원”을 “지급 지원”으로 하고, 제5호 중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하며, 제6호 중 “개선 및 좋은식단”을 “개선과 좋은 식단”으로, “사업의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고, 제7호 중 “집단급식소에 한한다”를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개조·보수”를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으로 하며, 제8호 중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71조제3항제1호 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용자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내에서”를 “관내의”로, “영 제7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영업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를 “제11조의 용자대상 중 용자를 받고자”로, “영업장소”를 “영업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업종별한도액”을 “업종별 한도액”으로,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신 설> 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3. (생 략)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생 략)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7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 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

현 행	개 정 안
다)의 급식시설 개조·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9. (생 략) 제5조~제9조 (생 략) 제3장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영업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융자신청)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7조 (생 략)	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현행과 같음) 제5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3장 기금의 융자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신청) 제11조의 융자대상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7조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나아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조문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4호 및 제8호)
- 나. 상위법령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 기금의 용자대상에 집단급식소 급식시설의 개수·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
 -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조·보수”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제3호, 제4조제1호 및 제7호, 제13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2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전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전을 심의하는 데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전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 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 시설물과 규모, 종류, 운영 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서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서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 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전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0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제5조의 신설규정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조례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심의 ○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13,000,000원 이상 17,000,000원 미만
	○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2,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3 및 제2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현행	개정안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21조제5항제5호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2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신설>	

현행	개정안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u>하되</u>,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심의 2.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 ⑦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 과반수,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신 설> <신 설>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u>하고</u>,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전을 심의하는 데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삭 제> ⑥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현행	개정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 시설물과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u>유지관리부서</u>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u>사업계획부서</u>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전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 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 시설물과 규모, 종류, 운영 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u>유지·관리 부서</u>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u>사업계획 부서</u>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 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

현행	개정안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신 설>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1. 영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삭 제> 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시장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전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전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0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수수료) ①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제14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 행	개 정 안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u>심의 요청하는 때</u>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u>심의 요청하는 때</u> ②수수료는 위원회 심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u>심의 내용</u>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u>심의를 요청하는 경우</u>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u>심의를 요청하는 경우</u> ② 수수료는 위원회 <u>심의 전까지</u>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의 연임, 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 제19조에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내 공무원을 과반수 임명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공무원 위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 기존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
- 위촉위원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치법규 개선 과제 검토 결과를 반영함.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1조의2제2호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3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조정함.
- 영 제22조 및 제23조의 신설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029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가 행하는 <u>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u> 와 <u>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u>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u> ② (생략)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보조) ①~③ (생략) <u><신설></u>	제6조(사무보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의장은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u>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생략)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u>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u> <u><신설></u> ③~⑤ (생략) ⑥ <u>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u> ⑦ (생략) ⑧ (생략)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u>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③~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총괄부서를 두어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전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요구 사항은 관련기관 총괄 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0호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 교육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 창의교육 지원을 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1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회의의장 허 광 태 인

2010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활동 등”을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을 “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 및 관리”를 “관리”로 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하고, 본문 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며,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광장사용신고서”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를 “(사용의 정지)”로 하고, 본문 중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로 한

다.

제10조제2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수리”로 하고, “사용허가사항이”를 “사용신고수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고, 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서식] 중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서”로 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사용을 신고합니다.”로 하고, “신청자”를 “신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 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광장사용 목적 및 관리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함(안 제1조, 제3조).
- 나. 광장의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다. 위탁운영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에 관한 사항만 법인 또

- 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행사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및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바. 성별·장애·정치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사. 신고수리내용 변경시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아.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자. 부칙에서「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부칙 안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2호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께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불가피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3조제6항의 ----- -----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1명----- -----1명-----11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 ----- -----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 -----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7조(간사) ----- ----- 1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2005.08.04. 전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가. 근거법령 변경(제1조)
 -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변경함.
 - 나. 일부 조문 변경
 -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 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제2조)
 - 단서 중 “불가피한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함. (제6조)
 - “1인”을 “1명”으로 변경함.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3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곽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를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로 한다.

제2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4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다음 각 호와 ----- 1. (현행과 같음)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대상) ----- ----- 각 호 -----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 컴퓨터 통신 이나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 ----- ----- 인터넷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 컴퓨터통신 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터넷 -----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기타 일부 조문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구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일부 조문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제1조, 제2조)
 - "조례와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를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로 함.
 -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를 신설함.
 - 나. 입법예고 방법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변경함. (제6조,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4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곽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제8069호, 2006.12.20)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 8. 31자로 폐지되고, 2010. 9. 1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
 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곽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 중 4명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인중에서”를 “5명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인중에서”를 “4명 중에서”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급기관 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하급기관"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명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 9명----- 각 호-----. 1. 위원 중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 풍부한 자 -----. 2. 위원 중 4명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 각 호 -----. 1. ----- 5명 중에서-----. 2. ----- 4명 중에서-----. ③ <삭 제>
제3조(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각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 속 지방별정직공무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 우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지리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 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 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삭 제>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삭 제>

현행	개정안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 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 ----- 지역교육청 단위 -----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의회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 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하급기관 ----- -----.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면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제8조 <삭 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본청 : <u>서울특별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u>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제8069호, 2006. 12. 20)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 8. 31자로 폐지되고, 2010. 9. 1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그 회의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국이 폐지되므로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제1조)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8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2조)
 - 나. 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 8. 31자로 폐지되므로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삭제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곽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제142조 준용)”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준용)-----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세입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 : 학교지원과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2007.5.11. 전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현행 직제와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및 2007. 5. 1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에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제142조 준용)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제1 조)

나. 기금운용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현행 직제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학교지원과장” 으로 변경함. (제8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03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꺾 노 현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831명"을 "6,82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6,83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u>7명</u>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u>6,831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 ----- <u>10명</u> 2. ----- ----- <u>6,828명</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함. (제2조제1호)
 - 나.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6,831명”에서 “6,828명”으로 변경함. (제2조제2호)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767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 기관 및 사업소
 -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바. 「민법」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 라.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 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장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인가 작성자	담당부서 : 작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서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계약사유서(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계약금액)	()		
공사개요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자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u>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u>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u>시본청의 과·담당관</u> 나. <u>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u> 다. <u>시의회사무처</u> 라. <u>시자치구</u> 마. <u>시지방공기업</u> 바. <u>시출연기관</u>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과 <u>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사</u>	<u>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u>국비·시비보조사업</u>

현 행	개 정 안
업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라목 내지 바목의 발주 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신 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다. 7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신 설>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정적하다고	으로 제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라.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

현 행	개 정 안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u>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u>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u>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u>계약을 체결하기 전에</u>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u>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u>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 설> ③기타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개정('10. 5. 1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자치구의 “국비·시비보조사업”을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사업에 대한 심사대상기관을 자치구·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까지 확대함. (안 제3조)
- 구체적인 계약심사 대상금액의 범위를 신설·조정하고,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나. 계약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적절한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함. (안 제7조, 별표 제7호서식)

다. 자문의견을 받아 업무에 참고하는 자문단 성격의 회의체인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768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times a \div 10,000 \times 3,600 = 3.2a$$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은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m³)

A = 면적 (m²)

L = 연장 (m)

③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 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이미 지원을 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공사 계획
 - 가. 공사 사유
 - 나. 공사 개요
 - 다. 공사 시기
 -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나목의 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 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

제9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경 \ 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도로포장층 제외)
D = 700mm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도로포장층 제외)
비 고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제13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제5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분담금은 조례”를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시설분담금 부과구경”을 “원인자부담금 부과구경”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중 “시설분담금”을 각각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부분을
 . .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 간 :
- 단수 및 통수 시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파 손 상 태 :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소장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0.64 \times a \div 10,000 \times 3,600=3.2a$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은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 A = 면적 (㎡) L = 연장 (m)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0.64 \times a \div 10,000 \times 3,600=3.2a$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기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은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 A = 면적 (㎡) L = 연장 (m)

현행	개정안
③ <u>조례 제4조제1항제4호</u>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④ <u>조례 제4조제1항제6호</u>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u>손괴원인자부담</u>을 원칙으로 한다. ⑤ <u>조례 제4조제1항제7호</u>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u>자</u>로 한다. 가. 복구작업 감독자 나. 수계조절 등 작업자 다.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라. 급수차 운행안내자 마.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 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판단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u>지원한</u>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u>손괴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 하여야 한다.</u>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u>하자기간내</u>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③ <u>조례 제4조제2항제3호</u>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④ <u>조례 제4조제2항제5호</u>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u>원인자부담</u>을 원칙으로 한다. ⑤ <u>조례 제4조제2항제6호</u>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u>사람으로</u>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안내자 5. <u>그 밖에</u>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 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u>위하여 이미 지원을 한</u>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u>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u>하자기간 내</u>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현행	개정안
7. <u>기타</u>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u>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u>각호</u>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u>탄</u>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u>조례 제7조제1항에</u>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u>수도공사 요청시에</u>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 사유 나. 공사 개요 다. 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u>기타</u>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u>수도공사</u>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u>각호</u>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u>기타</u>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u>원인자 부담금</u>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u>각호</u>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7. <u>그 밖에</u>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u>조례 제6조제1항에</u>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u>각 호</u>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u>다른</u>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u>조례 제7조제1항에</u>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u>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u>,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 사유 나. 공사 개요 다. 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u>그 밖에</u>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u>조례 제2조제1호나목의 공사</u>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u>각 호</u>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u>그 밖에</u>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u>원인자부담금</u>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u>각 호</u>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현행	개정안
3. 시민 홍보계획 등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첨 서식 # 1),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9조에 규정한 부담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부담자에게 통지할 날 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 제9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11조제2항	3. 시민 홍보계획 등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 한다. 제9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에 따른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공사시행)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2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경\구분</th><th>수도시설 좌우측</th><th>수도시설 하단</th><th>수도시설 상단</th></tr><tr><td>D = 700mm 이상</td><td>50cm 이상</td><td>50cm 이상</td><td>불가 (도로포장층 제외)</td></tr><tr><td>D = 700mm 미만</td><td>30cm 이상</td><td>30cm 이상</td><td>불가 (도로포장층 제외)</td></tr><tr><td>비고</td><td></td><td></td><td>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td></tr></table>	구경\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D = 700mm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비고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경\구분</th><th>수도시설 좌우측</th><th>수도시설 하단</th><th>수도시설 상단</th></tr><tr><td>D = 700mm 이상</td><td>50cm 이상</td><td>50cm 이상</td><td>불가 (도로포장층 제외)</td></tr><tr><td>D = 700mm 미만</td><td>30cm 이상</td><td>30cm 이상</td><td>불가 (도로포장층 제외)</td></tr><tr><td>비고</td><td></td><td></td><td>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td></tr></table>	구경\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D = 700mm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비고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구경\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D = 700mm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비고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구경\구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 = 700mm 이상	50cm 이상	5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D = 700mm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비고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제13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별첨서식#2) 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도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상(별첨서식#3)</u>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도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원인자부담금</u>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및 <u>둘</u>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u>같은 조례</u>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근거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취임시 선언하는 ‘복무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함
- 나.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연가일수 2일을 더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조례로 규정함
-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기간을 포함함
- 마. 그 밖에 경조사 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2)731-6019 FAX : 02)731-6053 E-mail : ldydrea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4호

서울특별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등 권고”에 따라 우리시 의정회 지원조례를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보조금 교부조항 중 우리시 권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개정조례안 시행 시기는 2011년 1월 1일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 [전화 : 02)731-6133, FAX : 02)731-6135, E-mail : han7351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5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청렴성 강화를 위한 윤리행동강령을 정함.

다.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명단 공개시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개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 공동설명회와 별도로 심의위원 또는 입찰참가업체가 상호 면담 및 접촉할 경우에는 소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함.

라. 설계도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의 기술검토 내용과 검토서 제출시

기 등을 명확히 함.

마. 심의안건별 감점기준은 총 5점의 한도 안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토록 함.

바. 설계채점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로 하고, 항목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최고점수율을 도입하여 업체 간 설계 변별력 확보토록 하며, 점수의 차등비율은 5~15%로 함.

사. 심의결과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6361-3904, FAX: 02-3707-8029, E-mail: wook1104@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70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특수지급무수당 신설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묘·하수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장려)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묘·하수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수지급무수당을 신설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2)731-6273, FAX : 02)731-6503, E-mail : bigdream2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

청량리지구 청량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20호(2009.05.07)에 따라 균형촉진발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공고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청량리지구 청량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20만㎡이상)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370,8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 (2009.9.10)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년도 : 2014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기능의 회복 도모

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청량리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 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 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70,844.0	-	370,844.0	
촉진 구역	소 계				169,044.1	감)1,414.6	167,629.5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 (1~22지구)	소 계	-	72,421.6	감)1,414.6	71,007.0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72,421.6	감)1,414.6	1,819.2	
			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5.0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51일대			60,224.5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706.5	-	51,706.5		
	전농 재정비 촉진구역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494일대	28,679.0	-	28,679.0		
	주택 재개발	전농12 재정비 촉진구역	전농12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존치 지역	소 계			-	201,799.9	증)1,414.6	203,214.5	
	존치관리구역			-	201,799.9	증)1,414.6	203,214.5	

5.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10-12일대	2,376.1	감) 556.9	1,819.2	

※ 구역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내 1지구를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분할하여 계획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19.2	-	1,819.2	100.0	
주거지역	소 계	65.6	-	65.6	3.6	
	제3종일반주거지역	65.6	-	65.6	3.6	
상업지역	소 계	1,753.6	-	1,753.6	96.4	
	일반상업지역	1,753.6	-	1,753.6	96.4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819.2	100.0	
획 지	소 계	1,517.0	83.4	
	업무시설용지	1,517.0	83.4	
정비기반시설	소 계	302.2	16.6	
	도 로	302.2	16.6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1	35~38.5	주 간선	1,980	신설동 101-7	청량리11호 광장 청량리동749	일반		서고 제1093호 (1966.11.26)	선형변경
변경	대로	1	51	35~47.5	주 간선	1,980 (36m)	신설동 101-7	청량리11호 광장 청량리동749	일반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37)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37)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기정	중로	2	503	15	집산 도로	150 (47)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서고 제2000-23호 (2000.2.9)	구역내 폭원변경 B=1→3m
변경	중로	2	503	15	집산 도로	150 (47)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51	대로1-51	· 선형변경 · B=35~47.5m, L=36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2-379	중로2-379	· 선형변경 · B=15m, L=92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2-503	중로2-503	· 구역내 폭원변경 · B=15m (구역내확폭1→3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내 폭원 변경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기존건축물 없음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2,376.1	택지	1,646.0	용두동 10-12일대	16,460	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1,000 이하	100이하 (25/7)
변경	청량리1 재정비 촉진구역	1,819.2	택지	1,517.0	용두동 10-12일대	-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110이하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공공시설부담률(%) = {c-(d+e)} ÷ {a-(d+e)} × 100 = 16.61%

구역면적 (㎡) (a)	획지면적 (㎡) (b)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 고(㎡)
		계 (c)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공공용지 (d)	획지 내 기존공공용지 (e)
1,819.2	1,517.0	302.2	302.2	-	-

(4)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합 계	1,517.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1,517.0	800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	비 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1+1.3\alpha)$ $= 800 \times (1+1.3 \times 0.199) \approx 1,000\%$ 이하 ※ α 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c-(d+e)\}/b = 0.19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 정	-
	변 경	건축한계선 ▷ 대로1-51호선변 : 5.3m ▷ 중로2-503호선변 : 3m ▷ 중로2-379호선변 : 3m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을 수립함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연속성을 확보함 ▷ 건축물 전면에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기계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 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 설치 ▷ 자동식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토지등 소유자	-	해당사항없음	

아. 기타사항

- 건축계획 변경시는 사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할 것.

6. 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786일대	2,456.3	감) 518.0	1,93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28호(2004.10.25)에 따라 완료된 지역이며, 높이계획변경(68m→70m) 외 기타 변경없음.

7.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11-1일대	5,511.7	증) 1,513.3	7,025.0	

※ 구역면적은 측량성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내 3지구를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분할하여 계획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025.0	-	7,025.0	100.0	
주거지역	소 계	2,070.5	감) 106.7	1,963.8	28.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70.5	감) 106.7	1,963.8	28.0	
상업지역	소 계	4,954.5	증) 106.7	5,061.2	72.0	
	일반상업지역	4,954.5	증) 106.7	5,061.2	72.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용두동 11-1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106.7	800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획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함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7,025.0	100.0	
획 지	소 계	3,891.0	55.4	
	업무, 판매, 주거복합용지	3,891.0	55.4	
정비기반시설	소 계	3,134.0	44.6	
	도 로	2,233.4	31.8	
	공 원	900.6	12.8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88)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88)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기정	중로	2	503	15	집산 도로	150 (103)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서고 제2000-23호 (2000.2.9)	구역내 폭원변경 B=1→3m
변경	중로	2	503	15	집산 도로	150 (103)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11	용두동 9-2	용두동 11-24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구역내 폭원변경 B=10→8 m
변경	중로	2	492	18 (8)	집산 도로	112	용두동 9-2	용두동 11-24	일반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379	중로 2-379	• 선형변경 • B=15m, L=92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 2-503	중로 2-503	• 구역내 폭원변경 • B=15m (구역내확폭1→3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내 폭원 변경
소로 1-2	중로 2-492	• 폭원변경 • B=10~15m→18m(구역내축소10→8m) L=112m	• 청과시장정비사업에 따른 폭원 변경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1	공 원	근린 공원	용두동 9-11일대	1,547	감)1,547	-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변경	31	공 원	어린이 공 원	용두동 9-11일대	-	증)1,584	1,584		구역내 900.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	공 원	근린공원 폐지(면적:1,547㎡) →어린이공원 신설(면적:1,584㎡)	대규모 획지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여 양호한 가로경관계획을 수립 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답십리길변 광장과 연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기존건축물 없음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청량리재정비촉진 구역 (3지구)	5,511.7	택지	3,817.1	동대문구 용두동 11-1일대	38,170	판매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100이하 (25/7)
변경	청량리3 재정비 촉진구역	7,025.0	택지	3,891.0	동대문구 용두동 11-1일대	-	업무, 판매, 주거	60 이하	1,000 이하	150이하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공공시설부담률(%) = $\{c-(d+e)\} \div \{a-(d+e)\} \times 100 = 16.88\%$

구역면적 (㎡) (a)	획지면적 (㎡) (b)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 고(㎡)
		계 (c)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공공용지 (d)	획지 내 기존공공용지 (e)
7,025.0	3,891.0	3,134.0	796.3	2,337.7	6.1

(4)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합 계	3,89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3,891	800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	비 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1+1.3\alpha)$ $= 800 \times (1+1.3 \times 0.203) \approx 1,000\%$ 이하 ※ $\alpha_{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c-(d+e)\}/b = 0.20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기 정	-
	변 경	• 건축한계선 ▷ 중로2-379호선변 : 3m ▷ 중로2-503호선변 : 3m ▷ 중로2-492호선변 : 3m • 공공(입체)보행통로 ▷ 중로2-503호선과 제31호공원을 연결하는 공공(입체)보행통로 조성

(6)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주택연면적 비율	기정	-
	변경	65%이하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변경	• 용도용적제 배제에 따라 증가되는 주택용도 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용적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용적률)×주거비율×25%이상=(800%-600%)×65%×25%=32.5%이상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1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9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4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변경	• 주택 전체연면적의 5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포함 전체세대수 220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0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88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2세대

■ 주택규모별 공급계획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이하		85㎡초과	합 계
	60㎡이하	60~85㎡		
세대수 (Shift)	30 (9)	188 (4)	2 (-)	220 (13)
비 율	13.6%	85.5%	0.9%	100.0%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을 수립함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연속성을 확보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기계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 ▷ 자동식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이내	토지등 소유자	220세대	해당사항없음	

사. 기타사항

- 건축계획 변경시는 사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할 것.

8.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620-51일대	62,077.5	감) 1,853.0	60,224.5	

※ 구역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내 4~22지구를 통합하여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분할하고, 청량리교차로변 불규칙한 구역계 재조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224.5	-	60,224.5	100.0%	
주거지역	소 계	2,157.6	감) 588.1	1,569.5	2.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03.0	감) 327.1	475.9	0.8%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4.6	감) 261.0	1,093.6	1.8%	
상업지역	소 계	58,066.9	증) 588.1	58,655.0	97.4%	
	일반상업지역	58,066.9	증) 588.1	58,655.0	97.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농동 588-49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일반 상업 지역	327.1	800	•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획지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함
-	전농동 819도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 지역	261.0	800	•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획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함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왕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대문~청량리동80-1	100,800	4,200	양측12	서고 제164호 82.04.22	
변경	왕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대문~청량리동80-1	100,800	4,200	양측12		왕산로 확폭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답십리길	일반 미관지구	전농동621-2~ 답십리2-146	63,000	2,100	양측15	서고제257호 (81.04.04)	
변경	답십리길	일반 미관지구	전농동621-2~ 답십리2-146	63,000	2,100	양측15		답십리길 확폭에 따른 선형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심지 미관지구	왕산로확장에 따라 양측 12m지정	왕산로 확장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변경
-	일반 미관지구	답십리길확장에 따라 양측 15m지정	답십리길 확장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변경

(2)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청량리동 176일대	- (1,891)	건설부 제727호 1963.12.13	
변경	-	방화지구	청량리동 176일대	- (1,760)		왕산로 확폭에 따른 선형·면적변경
기정	-	방화지구	동대문~청량리간	84,720 (9,676)	건설부 제727호 1963.12.13	
변경	-	방화지구	동대문~청량리간	84,720 (8,618)		왕산로 확폭에 따른 면적변경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방화지구	구역내 방화지구 선형·면적변경 (1,891㎡→1,760㎡)	왕산로확장에 따라 구역내 방화지구 선형·면적변경
-	방화지구	구역내 방화지구 선형·면적변경 (9,676㎡→8,618㎡)	왕산로확장에 따라 구역내 방화지구 선형·면적변경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0,224.5	100.0	
획 지	소 계	39,394.0	65.4	
	업무,판매,주거,숙박,문화 복합용지	39,394.0	65.4	
정비기반시설	소 계	20,830.5	34.6	
	도 로	11,773.0	19.6	
	공 원	5,809.4	9.6	
	광 장	3,248.1	5.4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1	35~ 38.5	주간선	1,980 (229m)	신설동 101-7	청량리11호 광장 청량리동 749	일반		서고 제1093호 (1966.11.26)	구역내 폭원확장 B=9m
변경	대로	1	51	35~ 47.5	주간선	1,980 (229m)	신설동 101-7	청량리11호 광장 청량리동 749	일반			
기정	대로	2	1	8~32	보조 간선	226	전농동 625-3	전농동 588-49	일반		-	구역내 폭원·연장확장 B=2m L=50m
변경	대로	2	1	3~34	보조 간선	276	전농동 625-3	전농동 588-49	일반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262m)	오스카 극장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		-	구역내 폭원변경 B=31→ 42~58m
변경	대로	3	130	25~58	보조 간선	2,100 (262m)	오스카 극장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			
폐지	중로	2	378	15	집산 도로	222	전농동 625-2	전농동 620-30	일반 (지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6)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6)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폐지	중로	3	1	12	집산 도로	78	전농동 620-67	전농동 591-72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폐지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8	전농동 620-20	전농동 620-23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폐지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54	전농동 620-44	전농동 620-54	일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폐지	중로	3	4	12	집산 도로	55	전농동 622-10	전농동 620-62	일반 (지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폐지	중로	3	5	12	보행자 전용	104	전농동 620-66	전농동 620-78	특수 (지하)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획지계획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51	대로 1-51	• 폭원확장 • B=35~38.5m→35~47.5m, L=229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도로폭원변경
대로 2-1	대로 2-1	• 폭원·연장확장 • B=8~32m→3~34m, L=226→276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도로폭원·연장변경
대로 3-130	대로 3-130	• 폭원확장 • B=25~31m→25~58m, L=262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도로폭원변경
중로 2-378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중로 2-379	중로 2-379	• 선형변경 • B=15m, L=92m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 3-1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중로 3-2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중로 3-3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중로 3-4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중로 3-5	-	• 노선폐지	• 획지계획변경에 따른 구역 내부도로폐지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공 원	소공원	전농동 620-70일대	-	증)2,296	2,296	-	
신설	4	공 원	어린이 공 원	전농동 620-111일대	-	증)2,328	2,328	-	
신설	5	공 원	소공원	용두동 7 일대	-	증) 502	502	-	-
기정	31	공 원	근린 공원	용두동 9-11일대	1,547	감)1,547	-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변경	31	공 원	어린이 공 원	용두동 9-11일대	-	증)1,584	1,584		구역내 683.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 원	소공원 신설(면적 : 2,296㎡)	대규모 획지계획에 따라 양호한 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답십리길변 광장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신설
4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2,328㎡)	
5	공 원	소공원 신설(면적 : 502㎡)	
31	공 원	근린공원 폐지(면적 : 1,547㎡)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1,584㎡)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광 장	일반 광장	전농동 620-71일대	-	증)2,906	2,906	-	
변경	25	광 장	교통 광장	전농동 588-1일대	24,150.0	증) 21.1	24,171.1 (342.1)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광 장	광장 신설 (면적 : 2,906㎡)	• 대규모 획지계획에 따라 광장을 신설하여 보행자편의를 고려하여 양호한 가로경관 조성
25	광 장	광장 변경 (면적 : 24,171.1㎡)	• 대규모 획지계획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행자의 편의, 양호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광장 변경

(4) 공공공지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공공공지	용두동 7구 일대	512	감)512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면적 : 512㎡)	•대규모 획지계획에 따른 공공공지폐지 및 소공원으로 변경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 (4~22지구)	62,077.5	-	42,813.2	동대문구 용두동 620-51일대	161	-	-	-	161	
변경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60,224.5	-	39,394.0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청량리재정비 촉진구역 (4지구)	2,786.7	택지	1,927.5	전농동 621-1일대	19,270.0	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1,000 이하	100 (25/7)
	" (5지구)	2,194.6		1,511.4	전농동 620-56	15,110.0	의료	60 이하	1,000 이하	100 (25/7)
	" (6지구)	1,440.4		990.5	전농동 622-1	9,900.0	숙박,업무	60 이하	1,000 이하	50 (15/3)
	" (7지구)	5,834.9		3,985.6	전농동 620-60	39,860.0	의료	60 이하	1,000 이하	80 (20/7)
	" (8지구)	1,096.6		759.7	전농동 622-8	7,60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60 (15/3)
	" (9지구)	2,129.8		1,475.4	전농동 620-18	14,750.0	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1,000 이하	100 (25/7)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 (10지구)	2,315.4	택지	1,604.0	전농동 620-10	16,040.0	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1,000 이하	100 (25/7)
	" (11지구)	4,135.8		2,811.2	전농동 620-26	28,110.0	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1,000 이하	120 (30/7)
	" (12지구)	1,705.4		1,181.4	전농동 620-54	8,267.0	판매(업무)	60 이하	700 이하	60 (15/5)
	" (13지구)	1,795.6		1,180.7	전농동 620-51	8,267.0	판매(업무)	60 이하	700 이하	60 (15/5)
	" (14지구)	1,789.0		1,183.9	전농동 620-52	8,288.0	판매(업무)	60 이하	700 이하	60 (15/5)
	" (15지구)	15,567.4		10,425.5	전농동 620-69	104,24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120 (30/7)
	" (16지구)	11,444.2		7,226.1	전농동 620-41	72,090.0	숙박,위락,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100 (25/7)
	" (17지구)	2,066.8		1,290.8	전농동 620-46	12,98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60 (15/5)
	" (18지구)	2,340.2		1,454.0	전농동 620-45	14,64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80 (20/5)
	" (19지구)	1,747.4		1,094.6	전농동 620-115	11,140.0	주상복합	60 이하	1,000 이하	60 (15/5)
	" (20지구)	1,461.9		923.7	전농동 622-10	9,25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60 (15/5)
	" (21지구)	1,522.2		1,054.5	전농동 620-65	10,480.0	주상복합	60 이하	1,000 이하	80 (20/5)
	" (22지구)	1,057.7		732.7	전농동 623-4	7,190.0	판매(업무)	60 이하	1,000 이하	80 (20/5)
변경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60,224.5	택지	39,394.0	동대문구 전농동 620-51 일대	-	업무,판매, 주거,숙박, 문화	60 이하	990 이하	랜드마크 200이하 기타 180이하 (150~180)

※ 청량리4구역의 조건사항

- 랜드마크 빌딩에는 숙박시설(호텔)을 연면적 31,600㎡ 이상 설치할 것.
- 랜드마크 빌딩의 스카이라운지는 호텔 상부에 설치할 것.
- 문화시설 빌딩에는 연면적 13,500㎡ 이상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공공시설부담률(%) = $\{c-(d+e)\} \div \{a-(d+e)\} \times 100 = 16.45\%$

구역면적 (㎡) (a)	획지면적 (㎡) (b)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 고(㎡)
		계(c)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공공용지 (d)	획지 내 기존공공용지 (e)
60,224.5	39,394.0	20,830.5	14,824.5	6,006.0	7,066.6

(4)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합 계	39,394.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7.1	200	
3종일반지구지역	261.0	250	
일반상업지역	38,805.9	800	
기준용적률 = $(327.1\text{㎡} \times 200\% + 261.0\text{㎡} \times 250\% + 38,805.9\text{㎡} \times 800\%) \div 39,394.0\text{㎡} = 791.3\%$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	비 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1.3\alpha)$ $= 791.3 \times (1+1.3 \times 0.196) \approx 990\%$ 이하 ※ α 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c-(d+e)\} / b = 0.19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4)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기정	-
	변경	• 건축한계선 ▷ 대로1-51호선변 : 3m ▷ 대로2-1호선변 : 3m ▷ 대상지북측 민자역사 연결지역 : 5m • 공공(입체)보행통로 ▷ 제3호광장과 청량리역광장 및 민자역사 선상광장을 연결하는 공공(입체)보행통로 조성

아.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주택연면적 비율	기정	-
	변경	65%이하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변경	• 용도용적제 배제에 따라 증가되는 주택용도 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용적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용적률)×주거비용×25%이상=(800%-600%)×65%×25%=32.5%이상 • 규모별 건설비용(시프트 134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2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52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변경	• 주택전체연면적의 5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 규모별 • 건설비용(시프트 포함 전체세대수 1,81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8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724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908세대

■ 주택규모별 공급계획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이하		85㎡초과	합 계
	60㎡이하	60~85㎡		
세대수	184	724	908	1,816
(Shift)	(82)	(52)	(-)	(134)
비율	10.1%	39.9%	50.0%	100.0%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을 수립함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연속성을 확보함 ▷ 건축물 전면에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함	
환경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 기존 건축물 철거전에 정화조 전량수거 처리후 철거작업시행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기계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 ▷ 자동식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이내	토지등 소유자	1,048세대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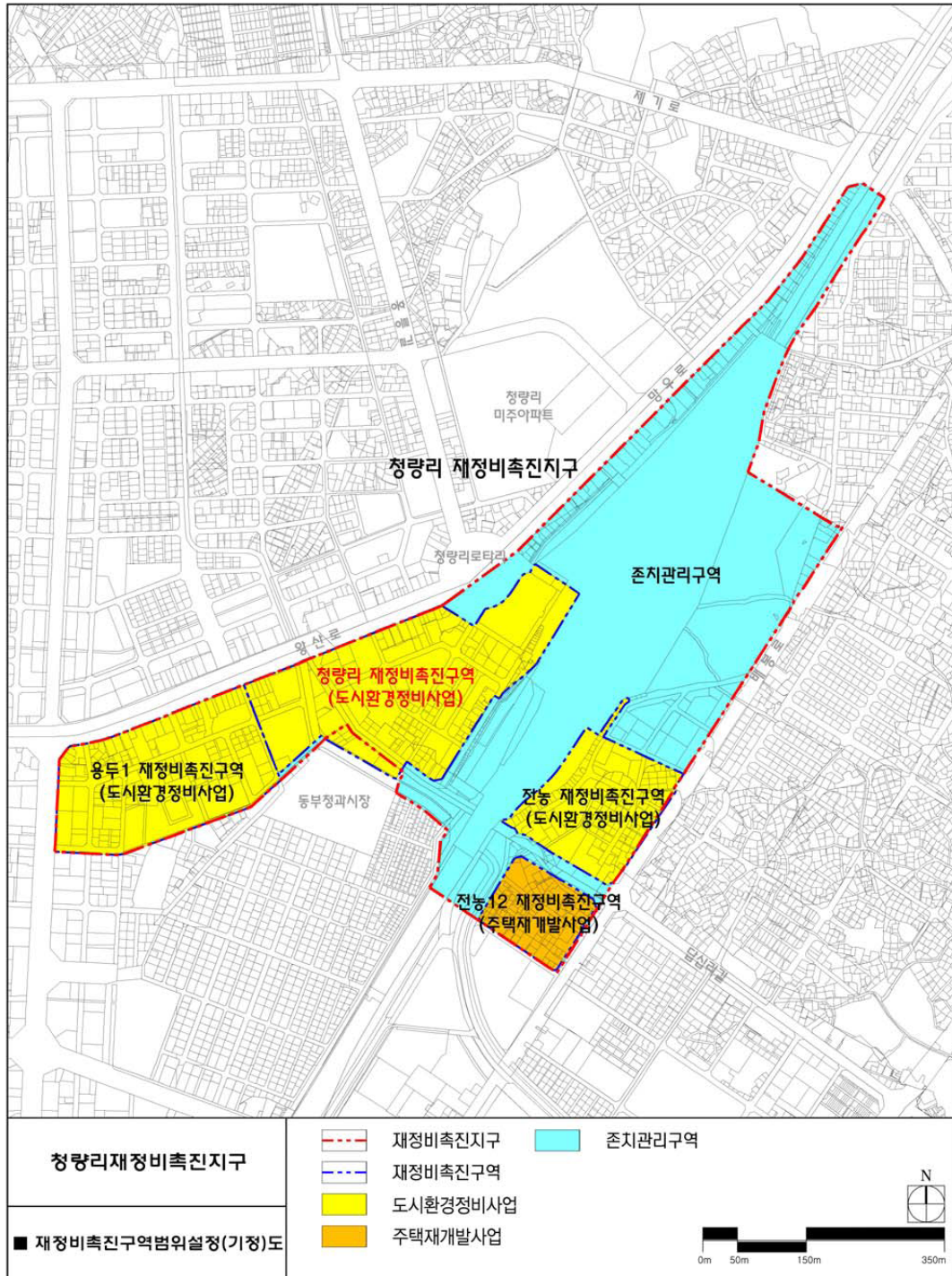
※ 증가예상 세대수 = 계획세대수(1,816세대) - 주민등록세대수(768세대) = 증) 1,048세대

카.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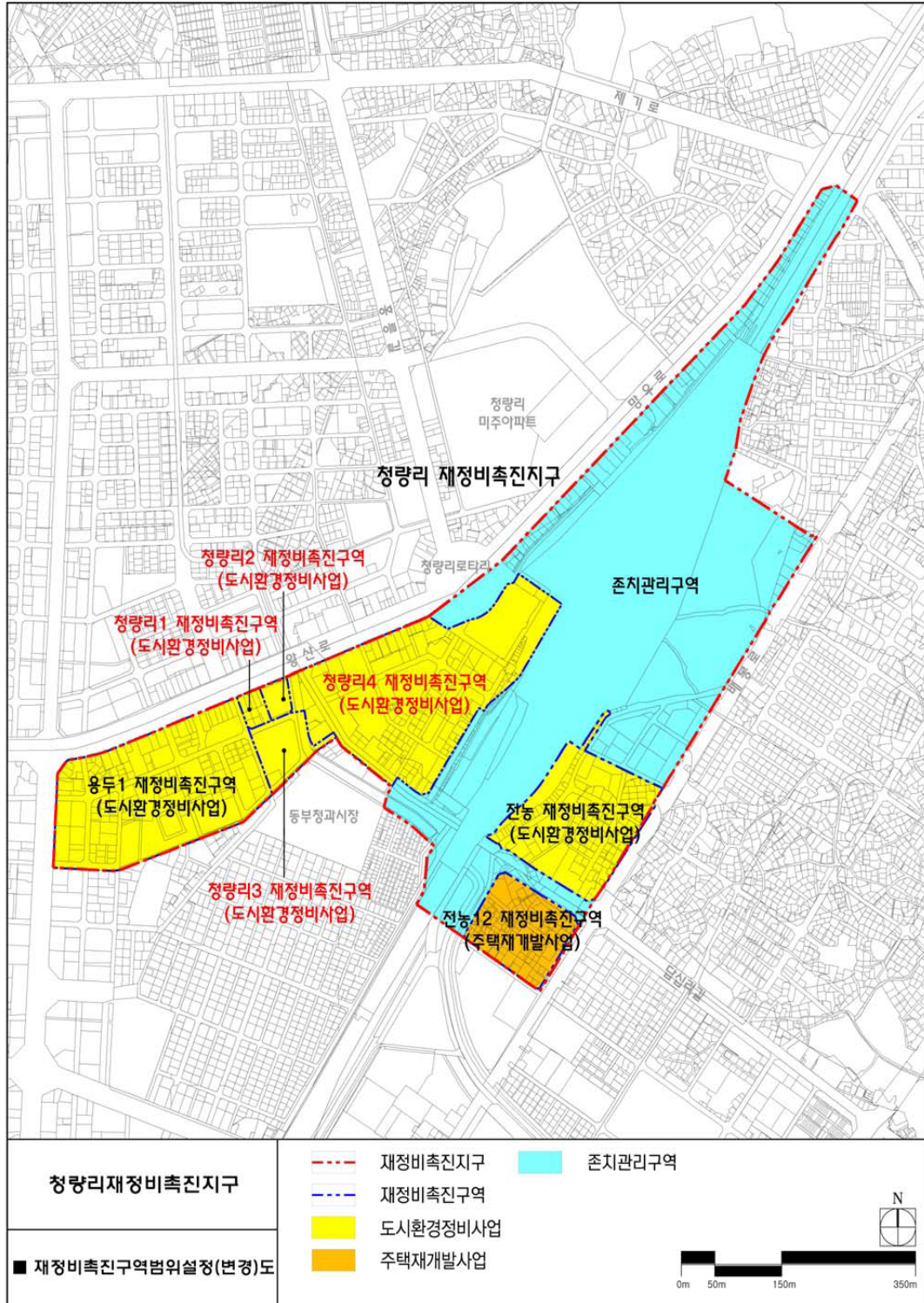
- 성바오로병원측과 협의하여 존치, 대체부지 조성, 복합용도시설중 일부를 병원으로 계획하는 방안 등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전까지 협의 완료하도록 하고, 추진과정과 결과를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할 것.
- 건축계획 변경시는 사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할 것.

9. 청량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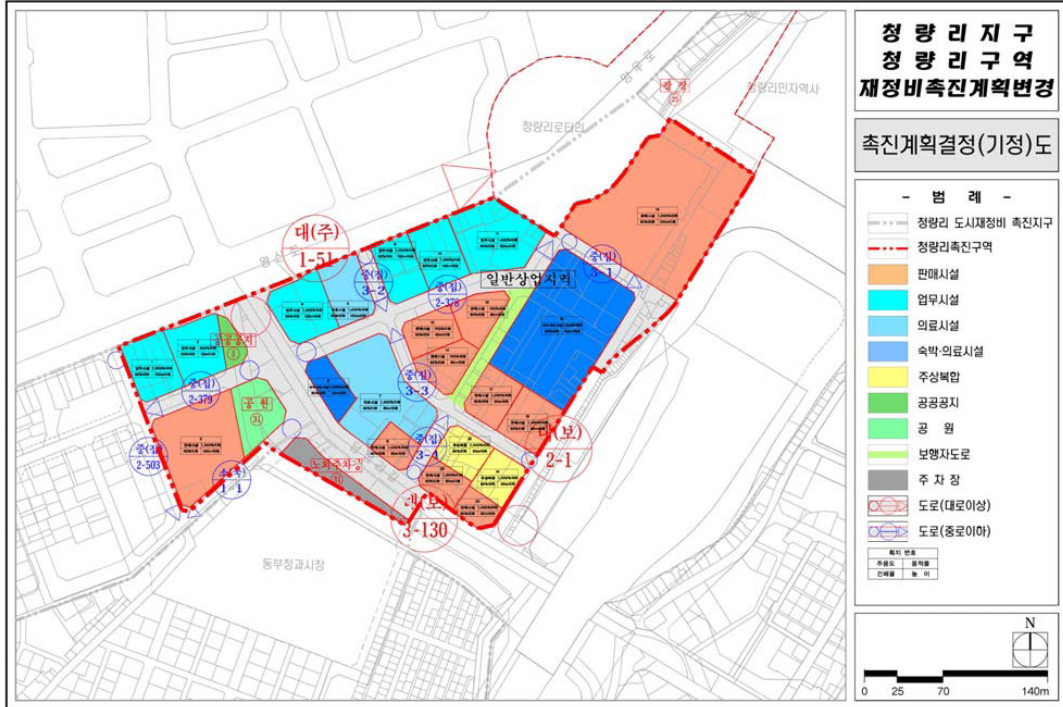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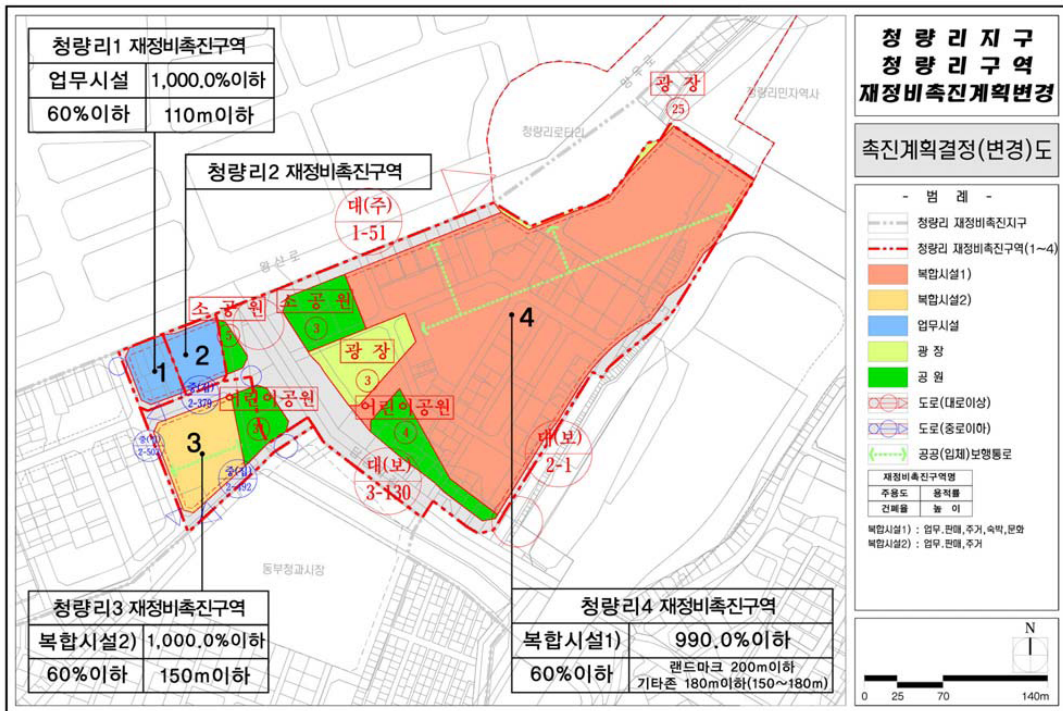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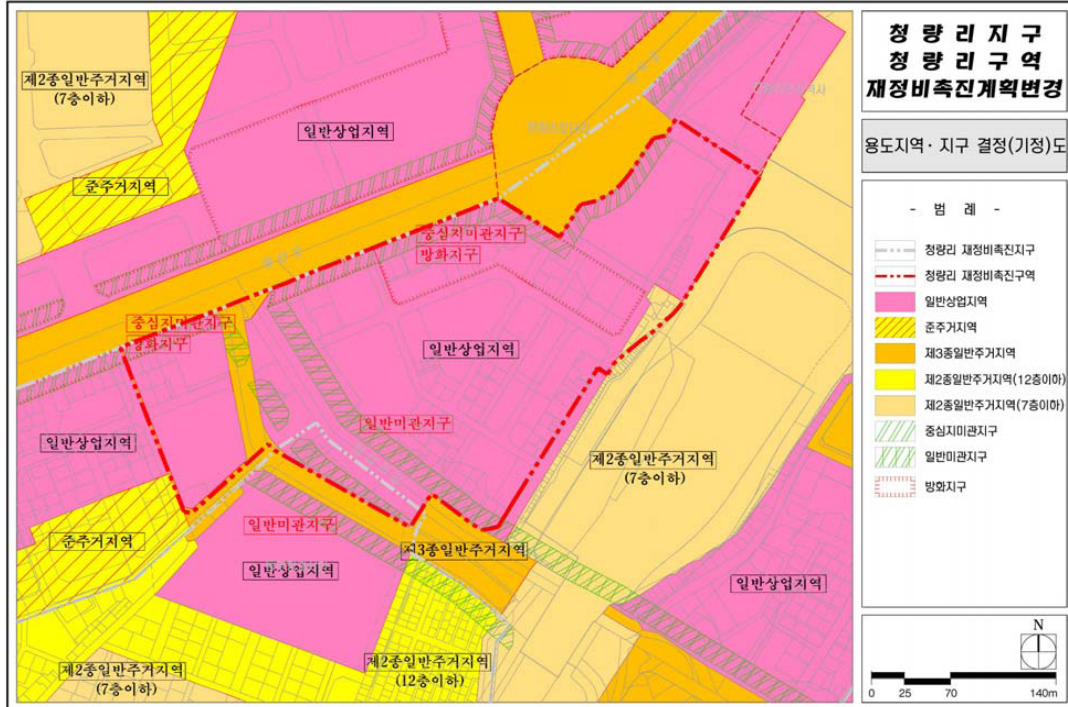
[청량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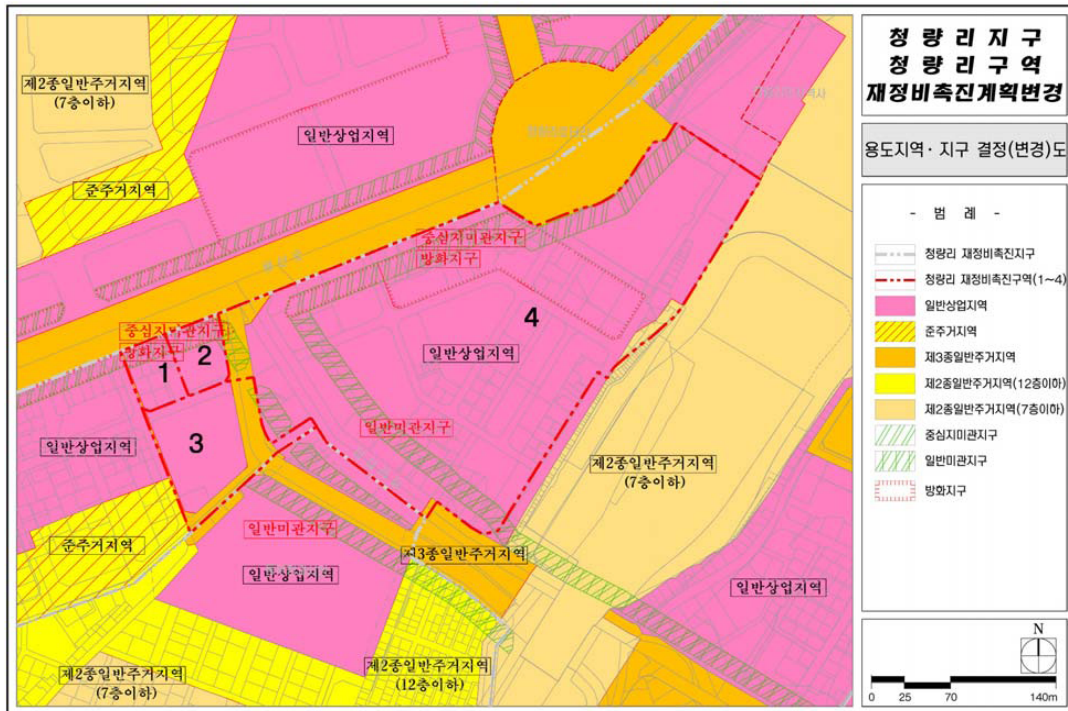
[청량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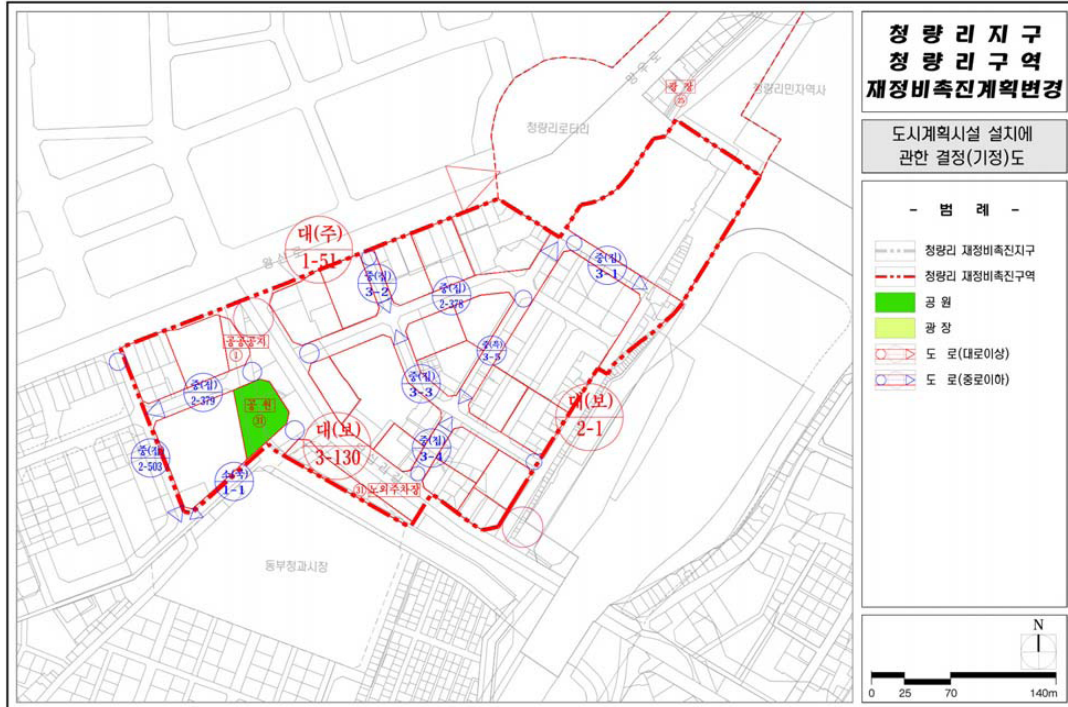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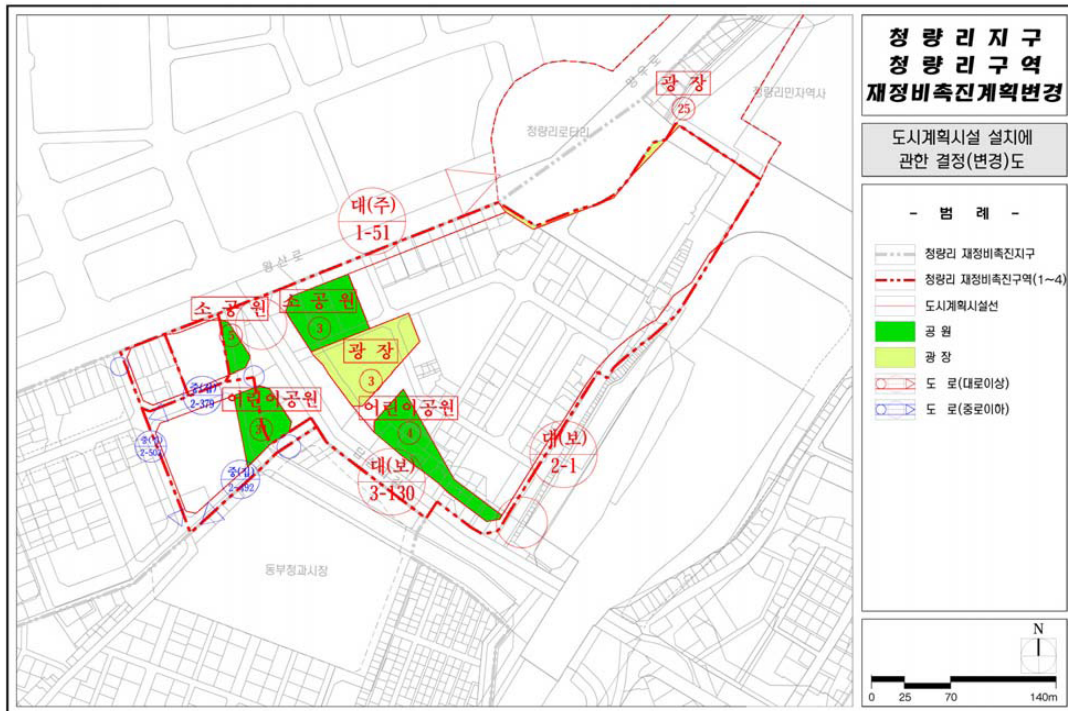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기정)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도]



[배 치 도 (안)]



10.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지구 청량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에 명시
11.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1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699)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1982.1.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6호(2008.4.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0-38호(2010.6.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구로구 구로동584-12 ~ 가리봉동2-137)
- 구로역 구간 : 구로동584-12~구로동473-19(연장 460m)
 - 은일정보 구간 : 구로동390-180~가리봉동2-137(연장 190m)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 당초 : 도로개설 폭 20m, 연장 650m
 - 변경 : 도로개설 폭 20m~25m, 연장 65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청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3708-8134)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등 명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1-50번 변경없음 -					
51	추가	구로동	390-276	대	77	77	김재덕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목련아파트1227-501호				
52	추가	가리봉동	1-28	학교 용지	2	2	서울특별 시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1122				
53	추가	가리봉동	1-29	대	175	175	서울특별 시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1122				
54	추가	가리봉동	1-30	학교 용지	18	18	서울특별 시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1122				
55	추가	구로동	369-5	철도 용지	241	91	국	건설교통부				
56	추가	구로동	369-6	철도 용지	178	178	국	건설교통부				
57	추가	구로동	392-97	도	1	1	서울특별 시					
58	추가	구로동	산119-6	임	20	20	김현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가 41				
59	추가	구로동	390-202	대	28	28	국	건설교통부				
60	추가	구로동	390-5	도	13,557	384	서울특별 시					
61	추가	구로동	391-6	철도 용지	263	39	국	건설교통부				
62	추가	구로동	390-209	도	2,034	21	서울특별 시					
63	추가	구로동	390-269	도	632	542	국	기획재정부				
64	추가	구로동	390-3	도	3,672	159	국	국토해양부				
65	추가	구로동	391-3	도	307	97	국					
							- 이하여백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 1~8번 변경없음 -																	
9	당초	구로동 390-180	공장	스라브/ 콘크리트,벽돌	1	김재덕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 목련@1227-501												
			화장실	스레트/ 시멘트블록조	4														
			담장	시멘트블록	1식														
			대문	철재	1식														
			리프트	철재	1식														
	변경	구로동 390-276	공장(1층)	스라브/ 콘크리트,벽돌	37	김재덕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 목련@1227-501												
			공장(2층)	스라브/ 콘크리트,벽돌	37														
			화장실	스레트/ 시멘트블록조	4														
			담장h=1.7m	시멘트블록L=19m	32.3														
			대문	철재	1식														
			리프트	철재	1식														
			외부계단	철재	1식														
			가건물	목재	13														
			정화조	25인용	1개소														
			수도계량기		1개소														
														- 10~19번 변경없음 -					
					- 이 하 여 백 -														

영 업 권 조 서

□ 사업명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상 호	물건의종류	수량	영업권종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추가	구로동	390-276	정인산업	공장	1	가구공장	소정환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1324번지	휴먼시아			
									아파트606-602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된 사항이며,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지적 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일부 선형 변경으로 단 순면적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원지	-	강북구 우이동 산14-3일대	124,120	증)65	124,185	'68.1.15	

3.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원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원	합계	124,120	증 65	124,185		
			건 축 부 지	소계	21,975	-	21,975	
				유희시설	900	-	900	
				운동시설	1,150	-	1,150	
				휴양시설	12,129	-	12,129	
				특수시설	-	-	-	
				편익시설	3,035	-	3,035	
				기타시설	4,761	-	4,761	
			녹지부지	29,204	감 77	29,127		
			조경부지	46,832	증 124	46,956		
			도로·주차장부지	17,508	증 17	17,525		
			하천부지	8,601	증 1	8,602		

-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23이하	110이하	7층이하	

- 세부건축규모결정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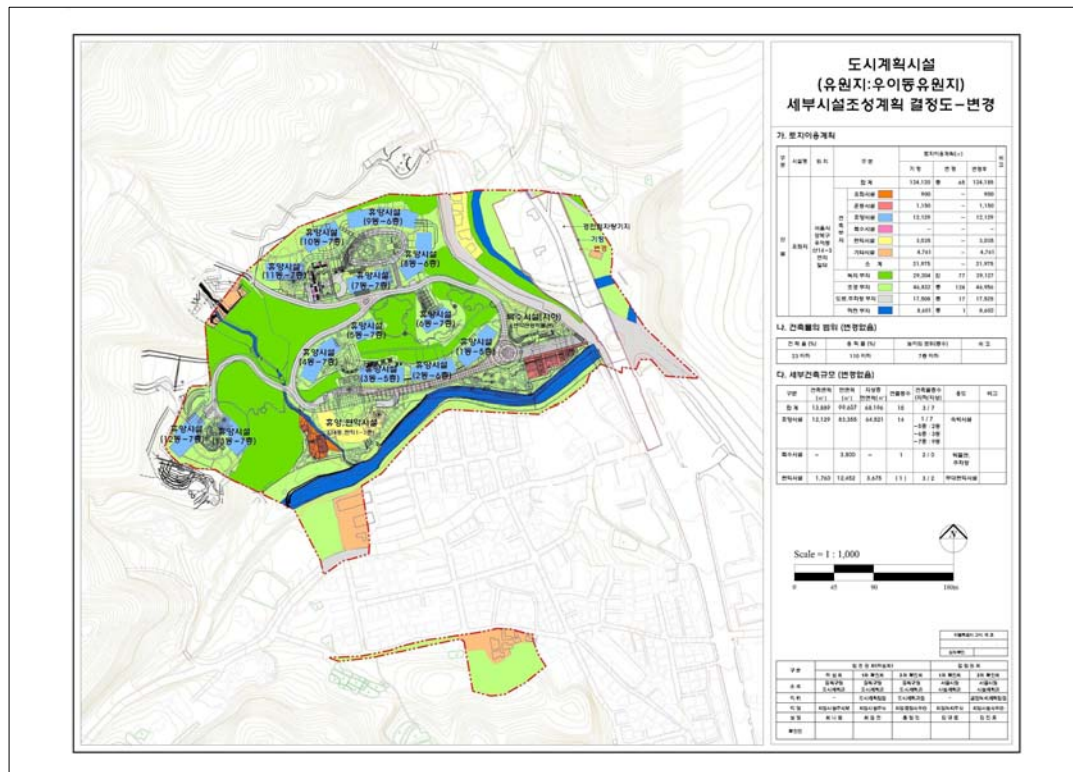
구분	건축 면적(㎡)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건물 동수	건축물층수 (지하/지상)	용 도	비고
계	13,889	99,607	68,196	15	3/7	-	-
휴양시설	12,129	83,355	64,521	14	1/7 - 5층 : 2동 - 6층 : 3동 - 7층 : 9동	숙박시설	
특수시설	-	3,800	-	1	2/0	박물관,주차장	
편익시설	1,760	12,452	3,675	(1동)	3/2	부대편익시설	

4.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1)및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901-6844), 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336	-	3,665,336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현재 마곡구역은 발산 택지개발 시행,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9호선 건설 및 인천 국제공항철도 계획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남서권역의 관문도시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마곡구역을 국제적,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없음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65,336	-	3,665,336	100.0%	
주거용지	소 계	618,924	감)6,290	612,634	16.7%	
	단독주택용지	15,645	증) 188	15,833	0.4%	
	공동주택용지	603,279	감)6,478	596,801	16.3%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145,304	감) 7	145,297	4.0%	
업무용지	국 제 업 무	323,516	증) 810	324,326	8.8%	
산업시설용지	연 구 개 발	737,011	감) 67	736,944	20.1%	
기반시설용지	소 계	1,778,204	증)5,673	1,783,877	48.7%	
	도 로	554,920	증)6,938	561,858	15.3%	
	보행자도로	7,695	-	7,695	0.2%	3개소
	철도용지	15,357	감)1,485	13,872	0.4%	3개소
	의 료 시 설	43,330	-	43,330	1.2%	1개소
	공 공 청 사	52,049	감) 5	52,044	1.4%	12개소
	학 교	72,159	-	72,159	2.0%	6개소
	사회복지시설	1,000	-	1,000	-	1개소
	광 장	13,239	-	13,239	0.4%	2개소
	근 린 공 원	559,333	감) 239	559,094	15.3%	4개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반시설용지	어린이공 원	19,646	감) 18	19,628	0.5%	10개소
	경 관 녹 지	1,068	-	1,068	-	2개소
	완 충 녹 지	-	-	-	-	
	연 결 녹 지	233,069	감) 54	233,015	6.4%	22개소
	주 차 장	25,112	-	25,112	0.7%	5개소
	열공급설비	26,440	-	26,440	0.8%	1개소
	전기공급설비	7,727	-	7,727	0.2%	1개소
	자원회수시설	14,724	-	14,724	0.4%	1개소
	방 수 설 비	21,954	-	21,954	0.6%	2개소
	공공공지	815	증) 536	1,351	-	1개소
	유수지	107,320	-	107,320	2.9%	1개소
	하수도(오수펌프장)	1,247	-	1,247	-	3개소
기타시설용지	소계	62,377	감) 119	62,258	1.7%	
	주유소	3,200	-	3,200	0.1%	4개소
	가스충전소	4,000	-	4,000	0.1%	2개소
	유보지	461	-	461	-	3개소
	종교시설	2,941	증) 6	2,947	0.1%	4개소
	편익시설	46,775	감) 125	46,650	1.3%	5개소
	택시차고지	5,000	-	5,000	0.1%	1개소

- 변경사유 ①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 단독주택용지 교통처리계획 반영 · 공동주택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신설 등
 ②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 철도용지 선형변경 · 공공공지 면적조정(마곡역)
 ③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맹지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임대		분양		임대		분양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18,924	612,634	5,676 (3,123)	5,676 (3,123)	5,742	5,742	15,893 (8,746)	15,893 (8,746)	16,077	16,077	
단독 주택	15,645	15,833	-	-	65	65	-	-	182	182	230~330㎡
공동 주택	603,279	596,801	5,676 (3,123)	5,676 (3,123)	5,677	5,677	15,893 (8,746)	15,893 (8,746)	15,895	15,895	60㎡이하 : 60~85㎡ : 85㎡초과 = 30%:42% : 28%
60㎡ 이하	193,459	177,880	4,115 (1,562)	4,115 (1,562)	455	455	11,523 (4,376)	11,523 (4,376)	1,274	1,274	
60㎡ ~85㎡	247,661	250,879	1,249 (1,249)	1,249 (1,249)	3,235	3,235	3,497 (3,497)	3,497 (3,497)	9,057	9,057	
85㎡ 초과	162,159	168,042	312 (312)	312 (312)	1,987	1,987	873 (873)	873 (873)	5,564	5,564	

사.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별 첨(※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항(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아래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조서'를 제외한 모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65,336	-	3,665,33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425	감) 41	26,384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738,308	증) 41	738,349	20.2	
	준주거지역	340,790	-	340,790	9.3	
일 반 상 업 지 역		712,753	-	712,753	19.4	
준 공 업 지 역		1,112,515	-	1,112,515	30.4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734,545	-	734,545	20.0	

-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항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564)	1,510 (995)	양측12 (편측12)	82.4.22	()는 구역내 사항임
기 정	양천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9,600 (4,720)	400	양측12 (편측12)	03.6.22	()는 구역내 사항임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마곡동 305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3,609,961㎡ ② 원추표면 (해발 57.86m~ 63.36m미만) 55,375㎡	29,129,000 (3,665,336)	77.4.22	()는 구역내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조서(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69	71	22,439	22,437	562,615	569,553	
일 반 도 로	소 계		-	3	3	3,277	3,277	166,736	166,736	
	광로	3 류	40~45	3	3	3,277	3,277	166,736	166,736	
	소 계		-	7	7	4,641	4,641	157,711	158,216	
	대로	2 류	30~31	6	6	4,222	4,222	145,141	145,646	
		3 류	25	1	1	419	419	12,570	12,570	
	소 계		-	39	39	11,798	11,798	214,025	220,503	
	중로	1 류	20	14	14	5,736	5,736	106,530	110,137	
		2 류	15~18	20	20	5,667	5,667	102,755	105,626	
		3 류	12	5	5	395	395	4,740	4,740	
	소 계		-	17	19	2,131	2,129	16,448	16,403	
	소로	1 류	10	5	5	570	570	5,820	5,839	
		2 류	8	10	11	1,458	1,426	9,981	9,787	
		3 류	4~6.5	2	3	103	133	647	777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	1	1	288	288	5,226	5,226	
	중로	1류	18	1	1	288	288	5,226	5,226	
	소계		-	2	2	304	304	2,469	2,469	
	소로	1류	10	1	1	224	224	2,062	2,062	
		3류	5	1	1	80	80	407	407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대	2	38	30	보조간선 도로	7,250	내발산동 644-2 (가양동 709도)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답)	일반 도로	-	'71. 4. 7	
기정 변경	대	2	41	30	보조간선 도로	6,500 (914)	양화교-광16 (마곡동 55-5제)	개화동시계 (마곡동 272-22도)	일반 도로	-	서고제333호 '84.6.5	()사업 구역내
기정 변경	중	1	1	20	집분산 도로	643	양천길 마곡동 224-7전	대2-2 마곡동 363-7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7	20	집분산 도로	565	광3-16 공항동 968-2공	대2-2 방화동 224-2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8	20	집분산 도로	739	광3-16 가양동 533-5답	대2-2 마곡동 363-5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1	20	집분산 도로	353	방화로 공항동 2-105답	중1-7 공항동 4-178잡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7	20	집분산 도로	661	방화로 공항동 833-32구	광3-16 공항동1036-1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8	20	집분산 도로	645	광3-16 공항동1313-2공	소1-6 공항동 1252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2	18	집분산 도로	427	대2-2 방화동 225답	방화동 183-3전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3	18	집분산 도로	240	중2-2 방화동 235-3답	방화동 208-27전	일반 도로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중	2	5	18	집분산 도로	194	방화로 방화동 산75-9임	중1-7 방화동 217-14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7	18	집분산 도로	205	방화로 방화동 240-4도	중2-2 방화동 238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5	18	집분산 도로	426	광3-16 내발산동 228-6공	내발산동 358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7	18	집분산 도로	314	방화로 공항동 36-23잡	중1-17 공항동 1133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8	18	집분산 도로	271	중1-17 공항동 1136답	중1-18 공항동 1325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9	18	집분산 도로	243	중1-18 내발산동 1327답	발산택지개발지구 외발산동 338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20	18	집분산 도로	233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 335답	중2-15 내발산동 340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소	1	2	10	국지도로	345	중1-1 마곡동 317전	소1-1 마곡동 222-37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4	8	국지도로	131	소2-4 방화동 255-2답	소2-4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5	8	국지도로	111	중2-2 방화동 255-1구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6	8	국지도로	105	소2-4 방화동 255-2답	소2-4 방화동 241-1구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7	8	국지도로	71	소2-10 방화동 255-2답	소2-5 방화동 244-2구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8	8	국지도로	102	소2-10 방화동 243-3답	중2-2 방화동 234-1답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9	8	국지도로	78	소2-10 방화동 243-3답	소2-9 방화동 239-2대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10	8	국지도로	145	소2-10 방화동 240-7전	소2-4 방화동 239-2대	일반 도로	-	-	
폐지	소	2	11	8	국지도로	154	중2-7 방화동 240-7전	소2-4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2	8	국지도로	97	소2-12 방화동 239-2대	소2-18 방화동 240-7전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3	8	국지도로	84	방화동 240-1답	소2-18 방화동 242-3도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4	8	국지도로	66	소2-18 방화동 243-3답	소2-15 방화동 242-9구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5	8	국지도로	61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3 방화동 239-2대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6	8	국지도로	81	중2-2 방화동233-1답	소2-18 방화동 253-2답	일반 도로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	2	17	8	국지도로	69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8	8	국지도로	158	소1-5 방화동239-5전	소2-19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9	8	국지도로	123	중2-2 방화동 183-2전	방화동 257-7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20	8	국지도로	126	소2-19 방화동 255-2답	소2-19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3	3	4	국지도로	130	대2-2 마곡동 361-6답	마곡동 360-1대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2-38	대2-3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버스베이 및 가감속차로)
변경	대2-41	대2-41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	중1-1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7	중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8	중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1	중1-11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7	중1-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8	중1-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2	중2-2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3	중2-3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5	중2-5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7	중2-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5	중2-15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7	중2-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8	중2-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9	중2-19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20	중2-20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소1-2	소1-2	가각 : 5m → 10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4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5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소2-6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7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8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9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10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폐지	소2-11	-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2	폭원 : 8m 연장 : 97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3	폭원 : 8m 연장 : 84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4	폭원 : 8m 연장 : 66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5	폭원 : 8m 연장 : 61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6	폭원 : 8m 연장 : 81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7	폭원 : 8m 연장 : 69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8	폭원 : 8m 연장 : 158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19	폭원 : 8m 연장 : 123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2-20	폭원 : 8m 연장 : 126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신설	-	소로3-3	폭원 : 4m 연장 : 130m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맹지에 대한 진입도로신설(강서구청 요청사항)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구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마곡동,가양동, 공항동,방화동	23,417 (2,484)	344,581.2 (44,343)	건고제233호 (1997.7.11)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참조
변경						강서구:마곡동, 가양동,공항동, 방화동,과해동	23,417 (2,484)	350,000.61 (44,343)		

구분	도면표시 시번호	시설명	시설구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당산역(2호선) 노량진역(국철) 동작역(4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 7호선)	26,185 (폭:10 ~56m)	322,676	서고제2002-5 (2002.1.9)	()는 마곡지구 내 구간임
변경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역,동 작역,고속버스터미널 역	26,185 (1,905)	325,289 (30,210)		
기정	3	철도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알대	강동구 하일동 579알대		47,400	-	건고제695호 (‘90.10.13)	
변경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47,400 (1,891)	- (24,130)		

■ 철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본선 주요경과지 : 마곡동,가양동,공향동,방화동 → 강서구:마곡동,가양동,공향동,방화동,과해동 면적 : 344,581.2㎡→350,000.61㎡	· 본선 구간별 변경내용 반영
변경	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본선 주요경과지 : 당산역(2호선),노량진역(국철), 동작역(4호선),고속터미널역(3호선,7호선) → 김포공항,당산역,여의도역,노량진역, 동작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면적 : 322,676㎡→325,289㎡ 구간내 연장 : - → 1,905m, 면적 : - → 30,210㎡	· 본선 구간별 변경내용 반영 · 구간내 연장 및 면적 표기
변경	3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구간내 연장 : - → 1,891m, 면적 : - → 24,130㎡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구간내 연장 및 면적 표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외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향동 6-19	강서구 공향동 6-18	길이 폭 높이	42m 17~21m 해발고도 8.5m이하	- 0~19m 최저8.5~최고13.8m	42m 19~2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3.8m이하	-	마곡지구 내 구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1-2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8	강서구 공항동 399일원	길이 폭 높이	311m 12~19m 해발고도 8.5m이하	- 12~16m 최저8.5~최고13.8m	311m 12~16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3.8m이하	-	"
변경	1-3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마곡동 372-19일원	강서구 마곡동 371-9일원	길이 폭 높이	115m 12m 해발고도 8.5m이하	- 11~18m 최저8.5~최고13.8m	115m 11~18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3.8m이하	-	"
변경	1-4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마곡동 260-6일원	강서구 마곡동 258-9일원	길이 폭 높이	188m 12~21m 해발고도 8.5m이하	- 11~21m 최저8.5~최고13.8m	188m 11~2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3.8m이하	-	"
변경	2-1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70-3	강서구 가양동 674	길이 폭 높이	217m 11~24m 해발고도 8.5m이하	- 11~37m 최저8.5~최고11.2m	217m 11~37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2m이하	-	"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27-2	강서구 가양동 182-1	길이 폭 높이	451m 12~23m 해발고도 8.5m이하	- 10~21m 최저8.5~최고11.2m	451m 10~2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2m이하	-	"
변경	2-3	904정거장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길이 폭 높이	6m 1m 해발고도 8.5m이하	13m 7m 최저8.5~최고11.2m	13m 7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2m이하	-	"
변경	2-4	905정거장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길이 폭 높이	242m 65~91m 해발고도 8.5m이하	- 57~63m 최저8.5~최고11.2m	242m 57~6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2m이하	-	"
변경	2-5	906정거장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23m 3m 해발고도 8.5m이하	6m 1m 최저8.5~최고11.2m	6m 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2m이하	-	"
변경	3-1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1일원	길이 폭 높이	266m 14m 해발고도 8.5m이하	- 12m 최저8.5~최고11.5m	266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5m이하	-	"
변경	3-2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811-2일원	강서구 가양동 967-1일원	길이 폭 높이	795m 14m 해발고도 8.5m이하	- 12m 최저8.5~최고11.5m	795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5m이하	-	"
변경	3-3	발산 정거장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길이 폭 높이	57m 22m 해발고도 8.5m이하	- 28m~34m 최저8.5~최고11.5m	57m 28m~34m 해발고도 최저8.5~최고 11.5m이하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7~21m → 19~23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2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2~19m → 12~16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3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2m → 11~18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4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2~21m → 11~2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1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폭 = 11~24m → 11~37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폭 = 12~23m → 10~2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3	904정거장	길이 = 6m → 13m 폭 = 1m → 7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4	905정거장	폭 = 65~91m → 57~63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5	906정거장	길이 = 23m → 6m 폭 = 3m → 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1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폭 = 14m → 12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2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폭 = 14m → 12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3	발산 정거장	폭 = 22m → 28m~34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4)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5) 공원 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마곡동 255-1일원	498,298	감) 239	498,059		
변경	3	공원	어린이 공원	마곡동 316-1일원	1,528	감) 18	1,51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면적감소(중앙공원) 498,298㎡ → 498,059㎡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3	어린이공원	면적감소 1,528㎡ → 1,510㎡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6)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가양동 494일원	815	증) 536	1,351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7) 녹지 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의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마곡동 323-5일원	7,830	감) 19	7,811		
변경	6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1076일원	1,342	증) 20	1,362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1043일원	3,993	감) 55	3,938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결녹지	면적 감소 : 7,830㎡ → 7,811㎡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6	연결녹지	면적 증가 : 1,342㎡ → 1,362㎡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12	연결녹지	면적 감소 : 3,993㎡ → 3,938㎡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8)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9)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0) 공동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이하 내용외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공청사	파출소	마곡동 362-3일원	764	감) 5	759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맹지에 대한 진입도로신설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변경

(12) 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4)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5)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6)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7) 자원회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8) 하수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현재 마곡구역은 발산 택지개발 시행,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9호선 건설 및 인천 국제공항철도 계획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남서권역의 관문도시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마곡구역을 국제적,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향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3,591	증)301,745	3,665,336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경없음)

마. 시행기간 : 2007년 ~ 2012년 (변경없음)

바.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363,591 (3,665,336)	증) 301,745	3,665,33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6,384	26,384	0.7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	(감) 2,33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832,849	감) 94,500	738,349	20.2	
	준주거지역	267,763	증) 73,027	340,790	9.3	
일 반 상 업 지 역		675,138	증) 37,615	712,753	19.4	
준 공 업 지 역		1,112,515	-	1,112,515	30.4	
녹지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2,556)	(감) 2,556)	-	-	
	자 연 녹 지 지 역	475,326 (296,855)	증) 259,219	734,545	20.0	

- () : 마곡구역경계 확장된 부분으로 용도지역 면적증가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강서구 방화동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384	•이주자 단독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변경
2	강서구 마곡동, 공향동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3,027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프트 등의 공동주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
3	강서구 공향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34	•신규편입지 용도지역 상향
4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56	•신규편입지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의 결정(변경)조서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향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163)	1,510 (945)	양측12 (편측12)	82.4.22	()는 구역내 사항임
변 경				36,240 (12,564)	1,510 (995)			
기 정	양천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9,600 (4,720)	400	양측12 (편측12)	03.6.22	()는 구역내 사항임

- 변경사유 : 공향아파트 추가편입에 따른 면적 및 연장 변경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김포국제공 향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마곡동 305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3,609,961㎡	29,129,000 (3,363,591)	77.4.22	()는 구역내 사항임
변 경				② 원추표면 (해발 57.86m~ 63.36m미만) 55,375㎡	29,129,000 (3,665,336)		

- 변경사유 : 워터프론트 조성지역 구역내 편입으로 인한 고도제한사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조서(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59	71	20,718	22,437	526,114	569,553	
일 반 도 로	소 계		-	3	3	3,277	3,277	166,736	166,736	
	광로	3 류	40~45	3	3	3,277	3,277	166,736	166,736	
	소 계		-	7	7	4,017	4,641	129,875	158,216	
	대로	2 류	30~31	6	6	3,598	4,222	117,305	145,646	
		3 류	25	1	1	419	419	12,570	12,570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일 반 도 로	소 계		-	38	39	11,728	11,798	213,221	220,503		
	중로	1 류	20	14	14	5,736	5,736	106,530	110,137		
		2 류	15~18	20	20	5,664	5,667	102,755	105,626		
		3 류	12	4	5	328	395	3,936	4,740		
	소 계		-	8	19	1,104	2,129	8,587	16,403		
	소로	1 류	10	5	5	587	570	5,870	5,839		
		2 류	8	1	11	414	1,426	2,070	9,787		
		3 류	4~6.5	2	3	103	133	647	777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	1	1	288	288	5,226	5,226	
		중로	1류	18	1	1	288	288	5,226	5,226	
소계		-	2	2	304	304	2,469	2,469			
소로		1류	10	1	1	224	224	2,062	2,062		
		3류	5	1	1	80	80	407	407		
소계		-	1	1	288	288	5,226	5,226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	3	1	40	주간선 도로	1,427	광3-16 가양동 663답	양천길 마곡동 229-4답	일반 도로	-		
기정	광	3	16	45	주간선 도로	8,890 (1,850)	제2한강교남단 (공항동6-12도)	김포공항 (가양동 972도)	일반 도로	-	서고제603 호 '78.11.15	()사업 구역내
기정	광	3	19	40	주간선 도로	35,306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	-	사업구역 외
기정	대	2	1	31	보조간선 도로	1,329	광3-16 가양동 876-1공	양천길 가양동 272-30도	일반 도로	-	-	
기정	대	2	2	31	보조간선 도로	961	광3-1 마곡동 278-6답	방화로 방화동 217-222답	일반 도로	-	-	
기정	대	2	3	31	보조간선 도로	538	광3-1 가양동 598답	대2-1 가양동 401-2답	일반 도로	-	-	
기정	대	2	4	31	보조간선 도로	480	강서로 가양동 1086답	대2-1 가양동 392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대	2	38	30	보조간선 도로	7,250	내발산동 644-2 (가양동 709도)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답)	일반 도로	-	'71. 4. 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대	2	41	30 (20) 30 (30)	보조간선 도로	6,500 (290) 6,500 (914)	양화교-광16 (마곡동 55-5제)	개화동시계 (마곡동 272-22도)	일반 도로	-	서고제333 호 '84.6.5	()사업 구역내
기정	대	3	1	25	보조간선 도로	419	광3-16 내발산동 198-5공	내발산동 181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	20	집분산 도로	643	양천길 마곡동 224-7전	대2-2 마곡동 363-7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7	20	집분산 도로	565	광3-16 공항동 968-2공	대2-2 방화동 224-2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8	20	집분산 도로	739	광3-16 가양동 533-5답	대2-2 마곡동 363-5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1	20	집분산 도로	353	방화로 공항동 2-105답	중1-7 공항동 4-178잡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2	20	집분산 도로	266	중1-7 공항동940-14대	중1-8 가양동 470-3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3	20	집분산 도로	241	광3-1 가양동 573답	중1-8 가양동 475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4	20	집분산 도로	244	광3-1 가양동 576답	중2-13 가양동 745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5	20	집분산 도로	272	대2-1 가양동 414-1답	중2-13 가양동 743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6	20	집분산 도로	444	대2-38 가양동 1126대	대2-1 가양동 386-1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7	20	집분산 도로	661	방화로 공항동 833-32구	광3-16 공항동1036-1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1	18	20	집분산 도로	645	광3-16 공항동1313-2공	소1-6 공항동 1252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27	20 (3)	집분산 도로	226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384-1답	중2-15 내발산동 358답	일반 도로	-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1	28	20 (3)	집분산 도로	271	중2-15 내발산동 358답	대3-1 내발산동 181답	일반 도로	-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1	29	20	집분산 도로	166	대3-1 내발산동 181답	중2-16 공항동 163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2	18	집분산 도로	427	대2-2 방화동 225답	방화동 183-3전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3	18	집분산 도로	240	중2-2 방화동 235-3답	방화동 208-27전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4	18	집분산 도로	97	중1-1 마곡동 365-8답	마곡동 353답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중	2	5	18	집분산 도로	194	방화로 방화동 산75-9임	중1-7 방화동 217-14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7	18	집분산 도로	205	방화로 방화동 240-4도	중2-2 방화동 238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8	15	집분산 도로	95	중1-2 방화동 224-7전	방화뉴타운 방화동 217-205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9	18	집분산 도로	171	대2-38 가양동 162-1답	중2-10 가양동 172-18전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0	18	집분산 도로	653	양천길 가양동 282-2도	대2-4 가양동 371-1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1	18	집분산 도로	344	대2-1 가양동 349-1전	중2-10 가양동 359-1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2	18	집분산 도로	151	대 2-38 가양동 1069대	중2-10 가양동 359-2잡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3	18	집분산 도로	493	광3-16 가양동 839공	대2-3 가양동 408-3구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4	18	집분산 도로	260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961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5	18	집분산 도로	426	광3-16 내발산동 228-6공	중1-16 내발산동 358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16	18	집분산 도로	412	광3-16 내발산동 91-5공	중1-16 내발산동 162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7	18	집분산 도로	314	방화로 공항동 36-23잡	중1-17 공항동 1133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8	18	집분산 도로	271	중1-17 공항동 1136답	중1-18 공항동 1325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19	18	집분산 도로	243	중1-18 내발산동 1327답	발산택지개발지구 외발산동 338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2	20	18	집분산 도로	233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 335답	중2-15 내발산동 340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21	18	집분산 도로	272	대3-1 내발산동194-3답	중2-15 내발산동 326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2	22	18	집분산 도로	166	대3-1 내발산동 193-1답	중2-16 내발산동 158-2답	일반 도로	-	-	
기정	중	3	1	12	집분산 도로	30	중1-11 공항동 2-12답	방화뉴타운 공항동 4-48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	3	2	12	집분산 도로	116	중2-16 내발산동 162답	소2-2 내발산동 153-15답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중	3	3	12	국지도 로	52	대2-2 방화동 209-2전	방화동 208-22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	3	4	12	집분산 도로	130	중2-16 내발산동 160-4답	소2-2 내발산동 155-2답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	3	5	12	집분산 도로	67	대3-1 내발산동 181답	내발산동 222-1전	일반 도로	-	-	
기정	소	1	1	10	국지 도로	27	양천길 마곡동 222-30도	마곡동 222-20도	일반 도로	-	-	
기정 변경	소	1	2	10	국지 도로	362	중1-1 마곡동 316-1전	소1-1 마곡동 222-37도	일반 도로	-	-	
						345	중1-1 마곡동 317전					
기정	소	1	4	10	국지 도로	57	가양동 1454-1도	소3-2 가양동 1454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	1	5	10	국지 도로	4	중2-7 240-10답	- 241-4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	1	6	10	국지 도로	137	중1-18 공향동 1252답	중1-17 공향동 1207-3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	2	2	8 (5)	국지 도로	414	광3-16 내발산동 81-10공	내발산동 153-15답	일반 도로	-	-	()사업 구역내
기정	소	2	3	8 (5)	국지 도로	370 (147)	마곡동 5-13	마곡동 9-1	일반 도로	-	1988. 6. 4	()사업 구역내
신설	소	2	12	8	국지 도로	97	소2-12 방화동 239-2대	소2-18 방화동 240-7전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3	8	국지 도로	84	방화동 240-1답	소2-18 방화동 242-3도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4	8	국지 도로	66	소2-18 방화동 243-3답	소2-15 방화동 242-9구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5	8	국지 도로	61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3 방화동 239-2대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6	8	국지 도로	81	중2-2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3-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7	8	국지 도로	69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8	8	국지 도로	158	소1-5 방화동 239-5전	소2-19 방화동 254-2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19	8	국지 도로	123	중2-2 방화동 183-2전	방화동 257-7답	일반 도로	-	-	
신설	소	2	20	8	국지 도로	126	소2-19 방화동 255-2답	소2-19 방화동 255-2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	3	1	4	국지 도로	9	소1-2 마곡동 327-3유	마곡동 327-24전	일반 도로	-	-	
기정	소	3	2	6.5	국지 도로	94	광3-16 가양동 1454-10도	소1-4 가양동 1454도	일반 도로	-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	3	3	4	국지도 로	130	대로2-2 361-6답	360-1대	일반 도로	-	-	
기정	중	1	1	18	특수도 로	288	대2-1 가양동 306-2답	중2-10 가양동 172-29전	보행자 도로	-	-	
기정	소	1	1	10	특수도 로	224	중1-11 공항동 4-38대	방화동 461전	보행자 도로	-	-	
기정	소	3	1	5	특수도 로	80	대2-2 방화동 217-272답	중2-5 방화동 217-182전	보행자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2-38	대2-3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버스베이 및 가감속차로)
변경	대로2-41	대로2-41	폭원 : 20m → 30m 연장 : 290m → 914m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라 구역내 편입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	중1-1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7	중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8	중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1	중1-11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7	중1-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1-18	중1-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2	중2-2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3	중2-3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5	중2-5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7	중2-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5	중2-15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7	중2-17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8	중2-18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2-19	중2-19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2-20	중2-20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가감속차로)
변경	중로3-3	중로3-3	폭원 및 연장 변경 없는 위치조정	· 편익시설1,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조정
신설	-	중로3-5	폭원 : 12m 연장 : 67m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변경	소로1-2	소로1-2	폭원 : 10m 연장 : 362m → 345m	· 연결녹지1 선형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기정	소로2-3	소로2-3	폭원 : 8(5)m 연장 : 370(147)m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라 구역내 편입
신설	-	소로2-12	폭원 : 8m 연장 : 97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3	폭원 : 8m 연장 : 84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4	폭원 : 8m 연장 : 66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5	폭원 : 8m 연장 : 61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6	폭원 : 8m 연장 : 81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7	폭원 : 8m 연장 : 69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8	폭원 : 8m 연장 : 158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19	폭원 : 8m 연장 : 123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2-20	폭원 : 8m 연장 : 126m	· 단독주택조성에 따른 도로신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신설	-	소로3-3	폭원 : 4m 연장 : 130m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맹지에 대한 진입도로신설(강서구청 요청사항)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주차장	-	-	23,363	증) 1,749	25,112		
기정	1	주차장	-	마곡동 354일원	2,835	-	2,835		
기정	2	주차장	-	방화동 217-196일원	3,035	-	3,035		
기정	3	주차장	-	가양동 955일원	7,015	-	7,015		
기정	5	주차장	-	마곡동 383-2일원	7,178	-	7,178		
변경	6	주차장	-	가양동 287-3일원	3,300	증) 1,749	5,049		

- 변경사유 : 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면적추가 확보

(3) 철도

(가)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구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인천공항철 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마곡동,가양동, 공항동,방화동	23,417 (1,864)	344,581.2 (26,658)	건고제233호 (1997.7.11)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참조 ()는 마곡지구내 구간임
변경						강서구:마곡동, 가양동,공항동, 방화동,과해동	23,417 (2,484)	350,000.61 (44,343)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당산역(2호선) 노량진역(국철) 동작역(4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 7호선)	26,185 (폭:10~5 6m)	322,676	서고제2002-5 (2002.1.9)	
변경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 역,동작역,고속버 스터미널역	26,185 (1,905)	325,289 (30,210)		
기정	2	철도	904정거장 (신방화역)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	9,145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5정거장 (마곡나루역)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	18,767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6정거장 (양천향교역)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	8,476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3	철도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	건고제695호 ('90.10.13)	
변경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47,400 (1,891)	- (24,130)		
기정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강서구 가양동 531일대			-	5,234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	5,531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공항동 1293일대			-	124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527일대			-	209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783일대			-	248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965일대			-	209	건고제92-148	

■ 철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본선 주요경과지 : 마곡동,가양동,공향동,방화동 →강서구:마곡동,가양동,공향동,방화동,과해동 면적 : 344,581.2㎡→350,000.61㎡ 구간내 연장 : 1,864m → 2,484m 면적 : 26,658㎡ → 44,343㎡	· 본선 구간별 변경내용 반영 · 구역확장에 따른 연장변경
변경	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본선 주요경과지 : 당산역(2호선),노량진역(국철), 동작역(4호선),고속터미널역(3호선,7호선) →김포공항,당산역,여의도역,노량진역,동작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면적 : 322,676㎡→325,289㎡ 구간내 연장 : - → 1,905m, 면적 : - → 30,210㎡	· 본선 구간별 변경내용 반영 · 구간내 연장 및 면적 표기
변경	3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구간내 연장 : - → 1,891m, 면적 : - → 24,130㎡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구간내 연장 및 면적 표기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향동 6-19	강서구 공향동 6-18	길이 폭 높이	42m 17~21m 해발고도 8.5m이하	- 19~23m 최저8.5~최고13.8m	42m 19~23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3.8m이하	-	마곡지구내 구간
변경	1-2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향동 6-18	강서구 공향동 399일원	길이 폭 높이	311m 12~19m 해발고도 8.5m이하	- 12~16m 최저8.5~최고13.8m	311m 12~16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3.8m이하	-	"
변경	1-3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마곡동 372-19일원	강서구 마곡동 371-9일원	길이 폭 높이	210m 12~20m 해발고도 8.5m이하	115m 11~18m 최저8.5~최고13.8m	115m 11~18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3.8m이하	-	"
변경	1-4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마곡동 260-6일원	강서구 마곡동 258-9일원	길이 폭 높이	-	188m 12~21m 최저8.5~최고13.8m	188m 11~21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3.8m이하	-	-
변경	2-1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70-3	강서구 가양동 674	길이 폭 높이	117m 17~33m 해발고도 8.5m이하	217m 11~37m 최저8.5~최고11.2m	217m 11~37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	"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27-2	강서구 가양동 182-1	길이 폭 높이	451m 12~23m 해발고도 8.5m이하	- 10~21m 최저8.5~최고11.2m	451m 10~21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2-3	904정거장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길이 폭 높이	6m 1m 해발고도 8.5m이하	13m 7m 최저8.5~최고11.2m	13m 7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	"
변경	2-4	905정거장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길이 폭 높이	242m 65~91m 해발고도 8.5m이하	- 57~63m 최저8.5~최고11.2m	242m 57~63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	"
변경	2-5	906정거장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23m 3m 해발고도 8.5m이하	6m 1m 최저8.5~최고11.2m	6m 1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	"
변경	3-1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향-고덕)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향-고덕)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1일원	길이 폭 높이	266m 14m 해발고도 8.5m이하	- 12m 최저8.5~최고11.5m	266m 12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5m이하	-	"
변경	3-2	고속철도 (제5호선 본선 방향-고덕)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향-고덕)	강서구 가양동 811-2일원	강서구 가양동 967-1일원	길이 폭 높이	795m 14m 해발고도 8.5m이하	- 12m 최저8.5~최고11.5m	795m 12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5m이하	-	"
변경	3-3	발산 정거장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길이 폭 높이	57m 22m 해발고도 8.5m이하	- 28~34m 최저8.5~최고11.5m	57m 28m~34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5m이하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7~21m → 19~23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2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2~19m → 12~16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3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12~20m → 11~18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1-4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폭 = - → 11~2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3.8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1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폭 = 17~33m → 11~37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폭 = 12~23m → 10~2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3	904정거장	길이 = 6m → 13m 폭 = 1m → 7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4	905정거장	폭 = 65~91m → 57~63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2-5	906정거장	길이 = 23m → 6m 폭 = 3m → 1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2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1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폭 = 14m → 12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2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폭 = 14m → 12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시설 구분 변경 수정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변경	3-3	발산 정거장	시설명 = 고속철도 → 도시철도 폭 = 22m → 28m~34m 높이 = 8.5m → 최저8.5~최고11.5m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

나) 도시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광장	-	-	13,239	-	13,239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마곡동 367-16일원	601	-	60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마곡동 368-3일원	12,638	-	12,638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4	504,230	14	578,722
근린공원	4	463,780	4	559,094
어린이공원	10	20,450	10	19,628
체육공원	1	20,000	-	-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4,230	증)74,492	578,722		
	소계	공원	근린공원		463,780	증)95,314	559,094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마곡동 255-1일원	401,583	증)96,476	498,059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방화동 210-1일원	19,782	감) 1,162	18,620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공향동 1220일원	25,501	-	25,501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내발산동 358-1일원	16,914	-	16,914		
	소계	공원	어린이 공원		20,450	감) 822	19,628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방화동 241-6일원	1,728	감) 6	1,722		
변경	2	공원	어린이 공원	방화동 211-3일원	1,927	-	1,927		
변경	3	공원	어린이 공원	마곡동 316-1일원	1,528	감) 18	1,510		
기정	4	공원	어린이 공원	공향동 484일원	2,014	-	2,014		
기정	5	공원	어린이 공원	공향동 4일원	507	-	507		
변경	6	공원	어린이 공원	마곡동 397-1일원	3,662	감) 798	2,864		
변경	7	공원	어린이 공원	공향동 6-18일원	2,658	-	2,658		
기정	8	공원	어린이 공원	공향동 705일원	2,360	-	2,360		
기정	9	공원	어린이 공원	외발산동 69-1일원	2,000	-	2,000		
기정	10	공원	어린이 공원	내발산동 384-2일원	2,066	-	2,066		
폐지	1	공원	체육공원	마곡동 56-1일대	20,000	감)20,000	-	서울시고시 제2002-392호	확장구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면적증가(중앙공원) 401,583㎡ → 498,059㎡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공원추가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2	근린공원	면적감소 19,782㎡ → 18,620㎡	· 주유소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면적 변경
1	어린이 공원	면적감소 1,728㎡ → 1,722㎡	· 종교용지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면적 변경
2	어린이 공원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 학교3 위치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위치 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어린이 공원	면적감소 1,528㎡ → 1,510㎡	· 연결녹지1 선형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위치 변경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6	어린이 공원	면적감소 3,662㎡ → 2,864㎡	· 연결녹지7 선형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면적 변경
7	어린이 공원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 인천공항철도 환기구 등의 계획변경에 따른 위치 변경
폐지	체육공원	폐지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폐지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가양동 494일원	815	증) 536	1,351		

- 변경사유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4)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	237,344	감) 3,261	234,083		
	계	-	-	-	233,599	감) 584	233,015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마곡동 323-5일원	8,074	감) 263	7,811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마곡동 292-4일원	4,751	-	4,751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311-2일원	17,193	-	17,193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165-1일원	6,949	-	6,949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366-2일원	9,969	-	9,969		
변경	6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1076일원	1,342	증) 20	1,362		
변경	7	녹지	연결녹지	마곡동 382-2일원	22,686	감) 286	22,400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마곡동 374-1일원	28,937	-	28,937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723일원	7,388	-	7,38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413일원	22,075	-	22,075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380-1일원	19,428	-	19,428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1043일원	3,993	감) 55	3,938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공항동 976-1일원	12,768	-	12,768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784일원	12,471	-	12,471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가양동 948-2일원	4,141	-	4,141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공항동 1057일원	8,904	-	8,904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216-1일원	8,786	-	8,786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공항동 1147-1일원	6,902	-	6,902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218-10일원	11,411	-	11,411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외발산동 72일원	9,064	-	9,064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354-1일원	4,722	-	4,722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내발산동 175일원	1,645	-	1,645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방화동 223-42일원	2,677	감) 2,677	-		
	계	-	-	-	1,068	-	1,068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마곡동 222-15일원	509	-	509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내발산동 153-7일원	559	-	559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결녹지	면적 감소 : 8,074㎡ → 7,811㎡	· 선형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면적 변경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2	연결녹지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 연결녹지1 선형조정에 따른 위치변경
6	연결녹지	면적 증가 : 1,342㎡ → 1,362㎡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7	연결녹지	면적 감소 : 22,686㎡ → 22,400㎡	· 선형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으로 면적 변경
12	연결녹지	면적 감소 : 3,993㎡ → 3,938㎡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결과 반영
1	완충녹지	폐지	· 공동주택에서 택시차고지 및 편익시설로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열공급설비	-	가양동 302-5일원	26,440	-	26,440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 공급설비	변전시설	가양동 259-4일원	7,727	-	7,727	서고제15호 '88. 1. 9.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3) 공동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총계					3.22	47,390		
신설	1	공동구	방화동225-1일원	가양동365-11일원	대로2-1	0.35	4,340		
신설	2	공동구	공항동1151일원	방화동225-1일원	대로2-2	1.40	21,000		
신설	3	공동구	가양동297-4일원	내발산동187일원	중로1-7, 중로1-17	1.47	22,050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51,113	증) 931	52,044		
변경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방화동 255-2일원	1,227	감) 166	1,061		
변경	2	공공청사	파출소	마곡동 362-3일원	723	증) 36	759		
변경	3	공공청사	동사무소	방화동 257-7일원	764	-	764		
기정	4	공공청사	우체국	마곡동 363-1일원	1,061	-	1,061		
기정	5	공공청사	-	공항동 944일원	4,828	-	4,828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공청사	출입국관리소	공향동 972-3일원	16,901	-	16,901		
기정	7	공공청사	강서구청	가양동 478일원	22,314	-	22,314		
기정	8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공향동 301-2일원	744	-	744		
기정	9	공공청사	파출소	공향동 38-4일원	744	-	744		
기정	10	공공청사	동사무소	공향동 1250일원	744	-	744		
기정	11	공공청사	우체국	공향동 1222일원	1,063	-	1,063		
신설	12	공공청사	-	내발산동 181일원	-	증)1,061	1,061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위치변경, 면적 감소 1,227㎡ → 1,061㎡	· 행정구역을 고려한 동사무소 등 위치 변경 (강서구청 요청사항)
2	공공청사	위치변경, 면적 증가 723㎡ → 759㎡	· 행정구역을 고려한 동사무소 등 위치 변경 (강서구청 요청사항)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맹지에 대한 진입도로신설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변경(강서구청 요청사항)
3	공공청사	위치변경	· 행정구역을 고려한 동사무소 등 위치 변경 (강서구청 요청사항)
12	공공청사	신설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설

(2)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72,159	-	72,159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방화동 253-3일원	10,921	-	10,921	82.5.14.	세민정보고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방화동 238-1일원	15,832	-	15,832	88.6.4.	송화초
변경	3	학교	중학교	방화동 207-1일원	10,481	-	10,481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공향동 399일원	11,554	-	11,554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공향동 1324일원	12,087	-	12,087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내발산동 153-7일원	11,284	-	11,284	90.10.18.	가곡초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중학교	위치 변경	· 학교 주변 환경을 고려한 위치 변경
4	초등학교	위치 변경	· 토지이용변경으로 인한 부지 선형조정

(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공향동 1151-2일원	1,000	-	1,000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954	증)20,000	21,954		
기정	1	방수설비	-	방화동 706-1일원	1,954	-	1,954	서고제93-186호 '93.6.18	
신설	2	방수설비	-	마곡동 41-7일원	-	증)20,000	20,000		

■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방수설비	신설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신설

(2)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수지	-	마곡동 32-18일원	121,669	감)14,349	107,320	서고제506호 (88.6.4)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면적감소 121,669㎡ → 107,320㎡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변경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내발산동 157일원	43,330	-	43,330		

사) 환경기초시설

(1) 자원회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가양동 260일원	14,724	-	14,724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2)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1	하수도	공향동 1147-1일원	마곡동 20-3일원	2,439	80,960	-	box 5.0*2.0 ~ box 6@5.0*2.0
신설	2	하수도	방화동 217-156일원	마곡동 396-1일원	889	6,561	-	box 3@2.0*2.0
신설	3	하수도	공향동 2-104일원	공향동 973-4일원	486	2,965	-	box 2@2.5*2.0
신설	4	하수도	공향동 707-2일원	공향동 1148-1일원	481	5,542	-	box 2@5.0*3.0
신설	5	하수도	공향동 303-4일원	공향동 1147-1일원	308	3,219	-	box 3@3.0*2.5
신설	6	하수도	내발산동 422-2일원	가양동 400일원	1,052	4,517	-	box 2@2.0*1.5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1	하수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99일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00일원	같이 폭 높이	-	310m 15~31m 해발고도 8.5 m이하	-	-

(나) 하수종말처리장(서남물재생센터)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하수도	종말처리장	마곡동205일대	1,032,423	감)126,598	905,825	건고제151호 '84.5.3	

- 변경사유 :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라 구역내로 편입된 서남물재생센터 확장예정부지 폐지

(다)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1,247	1,247		
신설	7	하수도	중계펌프장	방화동 210-11 일원	-	증) 363	363		
신설	8	하수도	중계펌프장	가양동 590 일원	-	증) 359	359		
신설	9	하수도	중계펌프장	가양동 396-1 일원	-	증) 525	525		

- 변경사유 : 오수관로 유지관리의 원활도모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R	R1	-	1,688	기정	-	-	-
				신설	R1	1,688	
	R2	-	2,552	기정	-	-	
				신설	R2	2,5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R3	-	2,371	기정	-	-	
				신설	R3	2,371	
	R4	-	1,141	기정	-	-	
				신설	R4	1,141	
	R5	-	645	기정	-	-	
				신설	R5	645	
	R6	-	1,661	기정	-	-	
				신설	R6	1,661	
	R7	-	1,655	기정	-	-	
				신설	R7	1,655	
	R8	-	1,781	기정	-	-	
				신설	R8	1,781	
	R9	-	1,542	기정	-	-	
				신설	R9	1,542	
	R10	-	797	기정	-	-	
				신설	R10	797	
총계	-	-	15,833	기정	-	-	-
				신설	-	15,833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A	기정	A1	22,947	-	기정	A1	22,947	-
	폐지	-			폐지	-	-	
	기정	A2	13,365	13,186	기정	A2	13,365	
	변경	A1			변경	A1	13,186	
	기정	A3	23,730	23,457	기정	A3	23,730	
	변경	A2			변경	A2	23,457	
	기정	A4	29,267	20,488	기정	A4	29,267	
	변경	A3			변경	A3	20,488	
	기정	AC5	4,863	-	기정	AC5	4,863	
	폐지	-			폐지	-	-	
	기정	AC6	4,671	-	기정	AC6	4,671	
	폐지	-			폐지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A	기정	AC7	22,589	-	기정	AC7	22,589	
	폐지	-			폐지	-	-	
	기정	A8	14,594	24,975	기정	A8	14,594	
	변경	A4			변경	A4	24,975	
	기정	A9	25,743	27,803	기정	A9	25,743	
	변경	A5			변경	A5	27,803	
	기정	A10	74,567	75,115	기정	A10	74,567	
	변경	A6			변경	A6	75,115	
	기정	AC11	56,986	56,336	기정	AC11	56,986	
	변경	AC7			변경	AC7	56,336	
	기정	AC12	7,270	-	기정	AC12	7,270	
	폐지	-			폐지	-	-	
	기정	A13	28,964	28,690	기정	A13	28,964	
	변경	A8			변경	A8	28,690	
	기정	AC14	70,026	69,122	기정	AC14	70,026	
	변경	AC9			변경	AC9	69,122	
	기정	AC15	46,854	46,032	기정	AC15	46,854	
	변경	AC10			변경	AC10	46,032	
	기정	AC16	15,181	14,962	기정	AC16	15,181	
	변경	AC11			변경	AC11	14,962	
	기정	AC17	15,556	15,311	기정	AC17	15,556	
	변경	AC12			변경	AC12	15,311	
	기정	A18	64,635	64,088	기정	A18	64,635	
	변경	A13			변경	A13	64,088	
	기정	A19	63,022	62,517	기정	A19	63,022	
	변경	A14			변경	A14	62,517	
	기정	A20	55,269	54,719	기정	A20	55,269	
	변경	A15			변경	A15	54,719	
총계	-		660,099	596,801	기정	-	660,099	-
					변경	-	596,801	

(3)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B	기정	B1	6,172	6,172	기정	B1	6,172	-
	기정	B2	5,807	5,807	기정	B2	5,807	
	기정	B3	23,798	23,798	기정	B3-1	13,192	
					기정	B3-2	10,606	
	폐지	B4	14,321	-	기정	B4-1	4,728	
					폐지	-	-	
					기정	B4-2	4,833	
					폐지	-	-	
					기정	B4-3	4,760	
					폐지	-	-	
	신설	B4	-	64,159	신설	B4	64,159	
	기정	B5	45,316	45,361	기정	B5-1	19,951	
					변경	B5-1	20,217	
	변경	B5			기정	B5-2	17,684	
					변경	B5-2	17,463	
					기정	B5-3	7,681	
총계	-		95,414	145,297	기정	-	95,414	-
					변경	-	145,297	

(4) 업무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C	기정	C1	55,587	49,618	기정	C1-1	28,224	-		
					변경	C1-1	25,009			
					기정	C1-2	12,859			
	변경	C1			변경	C1-2	11,584			
					기정	C1-3	14,504			
					변경	C1-3	13,0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C	기정	C2	91,689	97,602	기정	C2-1	16,652	
					변경	C2-1	15,168	
					기정	C2-2	18,609	
					변경	C2-2	17,129	
					기정	C2-3	10,968	
	변경	C2-3			15,225			
	기정	C2-4			12,452			
	변경	C2-4			17,072			
	기정	C2-5			16,200			
	기정	C2-6			16,808			
	폐지	C3	70,809	-	기정	C3	70,809	
					폐지	-	-	
	신설	C3	-	55,011	신설	C3	55,011	
	기정	C4	24,807	24,807	기정	C4-1	14,559	
					기정	C4-2	10,248	
	기정	C5	14,847	14,847	기정	C5	14,847	
	기정	C6	7,584	7,584	기정	C6	7,584	
	기정	C7	32,030	32,030	기정	C7-1	19,345	
					기정	C7-2	12,685	
	기정	C8	41,924	42,827	기정	C8-1	21,091	
					변경	C8-1	21,484	
	변경	C8			기정	C8-2	20,833	
					변경	C8-2	21,343	
총계	-		339,277	324,326	기정	-	339,277	-
					변경	-	324,326	

(5)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D	기정	D1	47,348	45,599	기정	D1	47,348	-
	변경	D1			변경	D1	45,599	
	기정	D2	32,321	32,321	기정	D2-1	18,845	
					기정	D2-2	13,476	
	기정	D3	24,446	24,446	기정	D3-1	12,147	
					기정	D3-2	12,299	
	기정	D4	26,551	26,554	기정	D4-1	13,560	
					변경	D4	기정	
	변경	D4-2					12,994	
	기정	D5			17,958	17,433	기정	
	변경	D5	변경	D5			17,433	
	기정	D6	16,270	16,270	기정	D6	16,270	
	기정	D7	15,523	14,794	기정	D7	15,523	
	변경	D7			변경	D7	14,794	
	기정	D8	17,368	17,368	기정	D8	17,368	
	기정	D9	16,146	16,146	기정	D9	16,146	
	기정	D10	13,378	13,275	기정	D10	13,378	
	변경	D10			변경	D10	13,275	
	기정	D11	28,952	28,592	기정	D11-1	14,195	
					변경	D11-1	13,835	
						기정	D11-2	
	기정	D12	11,966	11,966	기정	D12	11,966	
	기정	D13	12,764	12,764	기정	D13	12,764	
	기정	D14	17,430	17,430	기정	D14	17,430	
	기정	D15	16,439	16,439	기정	D15	16,439	
	기정	D16	11,614	9,614	기정	D16	11,614	
	변경	D16			변경	D16	9,614	
	기정	D17	26,449	26,449	기정	D17-1	12,917	
					기정	D17-2	13,53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D	기정	D18	11,058	11,058	기정	D18	11,058	-
	기정	D19	11,816	11,816	기정	D19	11,816	
	기정	D20	17,709	17,709	기정	D20	17,709	
	기정	D21	10,439	10,439	기정	D21	10,439	
	기정	D22	9,304	9,269	기정	D22	9,304	
	변경	D22			변경	D22	9,269	
	기정	D23	49,960	49,960	기정	D23-1	24,111	
					기정	D23-2	25,849	
	기정	D24	21,163	21,163	기정	D24-1	10,703	
					기정	D24-2	10,460	
	기정	D25	22,038	22,038	기정	D25	22,038	
	기정	D26	32,960	32,960	기정	D26	32,960	
	기정	D27	34,665	34,665	기정	D27-1	17,802	
					기정	D27-2	16,863	
	기정	D28	34,277	34,277	기정	D28-1	16,212	
					기정	D28-2	18,065	
	기정	D29	14,752	14,752	기정	D29	14,752	
	기정	D30	16,093	16,093	기정	D30	16,093	
	기정	D31	24,495	24,495	기정	D31	24,495	
	기정	D32	19,353	19,353	기정	D32-1	12,100	
					기정	D32-2	7,253	
	기정	D33	21,308	21,308	기정	D33-1	13,721	
					기정	D33-2	7,587	
	기정	D34	38,129	38,129	기정	D34-1	20,299	
					기정	D34-2	17,830	
총계	-		742,442	736,944	기정	-	742,442	-
					변경	-	736,944	

(6) 종합의료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E	기정	E1	43,330	43,330	기정	E1	43,330	-

(7) 공공청사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F	기정	F1	1,227	1,061	기정	F1	1,227	-
	변경	F1			변경	F1	1,061	
	기정	F2	723	759	기정	F2	723	소방파출소
	변경	F2			변경	F2	759	
	기정	F3	764	764	기정	F3	764	파출소
	변경	F3			변경	F3	764	동사무소
	기정	F4	1,061	1,061	기정	F4	1,061	우체국
	기정	F5	4,828	4,828	기정	F5	4,828	-
	기정	F6	16,901	16,901	기정	F6	16,901	출입국관리소
	기정	F7	22,314	22,314	기정	F7	22,314	강서구청
	기정	F8	744	744	기정	F8	744	소방파출소
	기정	F9	744	744	기정	F9	744	파출소
	기정	F10	744	744	기정	F10	744	동사무소
	기정	F11	1,063	1,063	기정	F11	1,063	우체국
	신설	F12	-	1,061	신설	F12	1,061	-
총계	-		51,113	52,044	기정	-	51,113	
					변경	-	52,044	

(8) 학교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G	기정	G1	10,921	10,921	기정	G1	10,921	고등학교
	기정	G2	15,832	15,832	기정	G2	15,832	초등학교
	기정	G3	10,481	1,0481	기정	G3	1,0481	중학교
	변경	G3			변경	G3	1,0481	
	기정	G4	11,554	11,554	기정	G4	11,554	초등학교
	변경	G4			변경	G4	11,554	
	기정	G6	12,087	12,087	기정	G6	12,087	초등학교
	기정	G7	11,284	11,284	기정	G7	11,284	초등학교
총계	-		72,159	72,159	기정	-	72,159	
					변경	-	72,159	

(9) 사회복지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H	기정	H1	1,000	1,000	기정	H1	1,000	-

(10) 주차장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I	기정	I1	2,835	2,835	기정	I1	2,835	
	기정	I2	3,035	3,035	기정	I2	3,035	
	기정	I3	7,015	7,015	기정	I3	7,015	
	기정	I5	7,178	7,178	기정	I5	7,178	
	기정	I6	3,300	5,049	기정	I6	3,300	
	변경	I6			변경	I6	5,049	
총계	-		23,363	25,112	기정	-	23,363	
					변경	-	25,112	

(11) 열공급설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J	기정	J1	26,440	26,440	기정	J1	26,440	-
	변경	J1			변경	J1	26,440	

(12) 전기공급설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K	기정	K1	7,727	7,727	기정	K	7,727	-
	변경	K1			변경	K	7,727	

(13) 자원회수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L	기정	L1	14,724	14,724	기정	L1	14,724	-
	변경	L1			변경	L1	14,724	

(14) 방수설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M	기정	M1	1,954	1,954	기정	M1	1,954	
	신설	M2	-	20,000	신설	M2	20,000	
총계	-		1,954	2,1954	기정	-	1,954	
					신설	-	21,954	

(15) 종교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N	기정	N1	661	667	기정	N1	661	
	변경	N1			변경	N1	667	
	기정	N2	650	650	기정	N2	650	
	기정	N3	979	979	기정	N3	979	
	기정	N4	651	651	기정	N4	651	
총계	-		2,941	2,947	기정	-	2,941	
					변경	-	2,947	

(16) 방재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O	기정	O1	121,669	107,320	기정	O1	121,669	
	변경	O1			변경	O1	107,320	
U	신설	U1	-	363	신설	U1	363	
	신설	U2	-	359	신설	U2	359	
	신설	U3	-	525	신설	U3	525	
총계	-		121,669	108,567	기정	-	121,669	
					변경	-	108,567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P	신설	P1	-	800	신설	P1	800	
	신설	P2	-	800	신설	P2	800	
	신설	P3	-	800	신설	P3	800	
	신설	P4	-	800	신설	P4	800	
Q	신설	Q1	-	2,000	신설	Q1	2,000	
	신설	Q2	-	2,000	신설	Q2	2,000	
총계	-		-	7,200	기정	-	-	
					변경	-	7,200	

(18) 편익시설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S	신설	S1	-	2,793	신설	S1	2,793	
	신설	S2	-	4,684	신설	S2	4,684	
	신설	S3	-	6,470	신설	S3	6,470	
	신설	S4	-	12,201	신설	S4	12,201	
	신설	S5	-	20,502	신설	S5	20,502	
총계	-		-	46,650	기정	-	-	
					변경	-	46,650	

(19) 택시차고지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T	신설	T1	-	5,000	신설	T1	5,000	-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	R1~R10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1m
		형태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별표1>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1~R10
	허용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A6, A8,	허용 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의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13~ A15		
	<변경>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변경>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별표2>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배치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변경> - 블록 내부에 중정을 설치할 수 있는 중정형 주동배치 유도 •직각배치 권장구간 <변경> - 직각배치구간에서는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주동을 직각으로 배치한다. •통경 구간 - 권장 - 도시전체의 통경축을 반영하여 폭10m 설정 - 건축물은 통경구간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5m
		형태	•용통형구조 권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신설>
AC	AC7, AC9~ AC12 <변경>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주거와 주거외의 비율은 상업용도의 비율이 10%이상으로 한다. <변경>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변경>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변경>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2>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배치	•1층 벽면 지정선 <삭제>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5m
		형태 및 외관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한다. •용통형구조 권장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신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가구수·건폐율·용적률·세대수 <변경>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합계	596,801.00	11,353		253.66	-
A1	13,186.00	소 계	237	230	50
		60㎡ 이하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A2	23,457.00	소 계	424	230	50
		60㎡ 이하	183		
		60㎡ 초과 ~85㎡ 이하	140		
		85㎡ 초과	101		
A3	20,488.00	소 계	315	230	50
		60㎡ 이하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A4	24,975.00	소 계	464	230	50
		60㎡ 이하	258		
		60㎡ 초과 ~85㎡ 이하	88		
		85㎡ 초과	118		
A5	27,803.00	소 계	439	230	50
		60㎡ 이하	103		
		60㎡ 초과 ~85㎡ 이하	137		
		85㎡ 초과	199		
A6	75,115.00	소 계	1,466	230	50
		60㎡ 이하	675		
		60㎡ 초과 ~85㎡ 이하	588		
		85㎡ 초과	203		
AC7	56,336.00	소 계	1,004	300	60
		60㎡ 이하	191		
		60㎡ 초과 ~85㎡ 이하	325		
		85㎡ 초과	488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8	28,690.00	소 계	526	230	50
		60㎡ 이하	246		
		60㎡ 초과 ~85㎡ 이하	226		
		85㎡ 초과	54		
AC9	69,122.00	소 계	1,239	300	60
		60㎡ 이하	373		
		60㎡ 초과 ~85㎡ 이하	503		
		85㎡ 초과	363		
AC10	46,032.00	소 계	837	300	60
		60㎡ 이하	56		
		60㎡ 초과 ~85㎡ 이하	348		
		85㎡ 초과	433		
AC11	14,962.00	소 계	301	300	60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211		
		85㎡ 초과	50		
AC12	15,311.00	소 계	306	300	60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218		
		85㎡ 초과	48		
A13	64,088.00	소 계	1,354	230	50
		60㎡ 이하	811		
		60㎡ 초과 ~85㎡ 이하	543		
		85㎡ 초과	-		
A14	62,517.00	소 계	1,270	230	50
		60㎡ 이하	582		
		60㎡ 초과 ~85㎡ 이하	600		
		85㎡ 초과	88		
A15	54,719.00	소 계	1,171	230	50
		60㎡ 이하	729		
		60㎡ 초과 ~85㎡ 이하	378		
		85㎡ 초과	64		
주) <삭제>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별표3> AC7, AC9~AC12 필지의 건축물 용도 <변경>

구 분		AC7, AC9~AC12
건축물용 도	도면표시	AC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신설> •노유자시설 <신설> •문화및집회시설 <신설>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수리점(차량)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	D1~ D34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배치	•탑상형 권장구간 <변경> - 연속적 벽면차폐공간을 방지 - 5층초과 부분에서 건축물의 도로에 접한면과 수직면의 비율 설정= 1:1.6 •대지내 조정 - 대지내 조정의 위치가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시 필요 조경을 집중 배치하여 내부에 중정이 형성되는 블록형 배치를 권장 •저층배치구간 - 연결녹지경계로부터 30m, 10m 범위 내에 설정 •고층부 건축한계선 - 4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지정선에서 6m 이격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5m
		형태 및 외관	•1층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조성 •아케이드 설치 구간 - 아케이드 내부공간과 인접한 보도와의 단차는 없도록 하고 횡단기울기는 2% 이내로 한다. <변경> -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관한 사항은 지침서 “제1편 제2장 제20조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신설>

<별표4>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구 분		산업시설용지			
		RD1	RD2	RD3	RD4
		(역세권변) <변경>	(중앙공원변)	(간선도로변)	(주거지변)
건축 물 의 용 도	허용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	공장(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300%이하	350%이하	300%이하
최고층수		-	8층 이하	-	8층이하
해당블럭		D1, D23~D26	D2, D3, D5, D6, D8, D9, D11~D15, D17~D21	D4, D7, D10, D16, D22, D27~D31	D32~D34

주) 산업시설용지 내 지정용도의 부속시설로서 분양목적의 아닌 연구원들의 숙소(기숙사, 게스트하우스)의 용도에 한정하여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변경>

주) 부속시설로서의 숙소는 연결녹지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에는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주)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4) 상업·업무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상업) C (업무)	B1~B3, B5 C1~ C8 (C3제외) <변경>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지정용도가 지정된 경우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을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정용도로 확보 •상업용지 내 역세권 주변 - 1층 전면권장용도: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1층 건축연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 확보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변경>
		배치	•1층부 벽면 지정선 -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지하공동개발 - 권장 - 지하철 및 광장과 연결된 지하공간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5m
		형태 및 외관	•1층부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 참조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신설>

<별표5> 상업·업무 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구 분	상업용지	업무용지
	B1~B3, B5 (역세권변, 주거지변)	C1~C8(C3제외) <변경>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450%이하	450%이하

<별표6> 상업 및 업무 용도분류표 <변경>

구 분		상업용지	
		B3, B5 (역세권주변)	B1, B2 (주거지변)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	X
	판매시설	●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운수시설	X	X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숙박시설	○	X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X	X
	운동시설	◇	◇
산업 시설군	관광휴게시설	X	X
	공장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자동차관련시설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창고시설	X	X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X	X
	의료시설	○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업무시설	●	○
	교정 및 군사시설	X	X
	방송통신시설	X	X
	발전시설	X	X

구 분		상업용지	
		B3, B5 (역세권주변)	B1, B2 (주거지변)
기타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변경>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X : 불허용도

1)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외

2)장외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구 분		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1~C8(C3제외) <변경>
	지정용도	●업무시설(업무 용도에 한함)
	허용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숙박시설(호텔에 한함)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용도에 한함)

(5) 공공청사 및 기타시설 용지

(가) 학교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G	G1~G7	지정 용도	G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변경>
			G3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변경>
			G2, G4, G6, G7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변경>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건축한계선으로 형성된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5m	
		형태 및 외관	●주거지에 면한 대지에는 주거지변으로 공공조경을 조성 -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 보호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H	H1	허용 용도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다) 공공청사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	F1~F4 F8~F11	지정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소방파출소·파출소, 우체국
		허용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폐율	•50% 이하 <변경>
		용적률	•250% 이하 <변경>
		높이	•4층 이하
		배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대지내 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1m, 3m
	F5~F7	지정 용도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소, 세무서) <변경>
		허용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
		배치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변으로 개방된 외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3m

(라) 종합의료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	E1	지정 용도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제외)
		허용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연구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5m <변경>

(마) 편익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S1~S2	허용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S3~S5	허용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P	P1~P4	허용 용도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Q	Q1~Q2	허용 용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사) 방재시설(유수지) 및 하수도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O	O1	허용 용도	•유수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U	U1	허용 용도	•오수펌프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U2~U3	허용 용도	•오수펌프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아) 종교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N	N1~N2, N4 <변경>	허용 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폐율	•50% 이하 <변경>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변경>
	N3 <변경>	허용 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변경>
		건폐율	•60% 이하 <변경>
		용적률	•400% 이하 <변경>
		높이	•4층 이하 <변경>
		배치 및 건축선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자) 기타시설 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J K L M	J1 K1 L1 M1~M2 T1	허용 용도	J1	•발전소 <변경>
			K1	•변전소 <변경>
			L1	•폐기물 재활용시설 <변경> •운동시설 <변경>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M1	•방수설비 <변경>
			T1	•자동차관련시설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신설>
		건폐율	J1	•20% 이하 <변경>
			K1	
			L1	
			M1	•50% 이하 <변경>
			M2	•20% 이하 <변경>
			T1	•50% 이하 <신설>
		용적률	J1	•50% 이하 <변경>
			K1	
			L1	
			M1	•250% 이하 <변경>
			M2	•50% 이하 <변경>
			T1	•250% 이하 <신설>
		높이	J1	- <변경>
			K1	
			L1	
			M1	
			T1	•2층 이하 <신설>

(차) 주차장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I	11~12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변경>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 집회시설 •운동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안마원, 단란주점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6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1	15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변경>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6층 이하
	13, 16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변경>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
		건축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
		형태 및 외관	•근린생활이 위치하지 않는 지상 2,3층 이상의 상층부에 차폐시설을 설치 •상업 및 업무용지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인접 건축물로의 입체보행통로를 설치 •노외주차장의 50%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 1층~2층, 최상층에 우선 배치 <변경> •주변 인접단지와의 차폐를 목적으로 조경 설치

(6) 마곡위터프론트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상업) C (업무)	B4 C3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지정용도가 지정된 경우 건축면적의 20%이상을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정용도로 확보 •상업용지 내 역세권 주변 - 1층 전면권장용도: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1층 건축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 확보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1층부 벽면 지정선 -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위터프론트 마리아 구역에 면한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하공동개발 - 권장 - 지하철 및 광장과 연결된 지하공간 활성화 •공공조경 •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대수 : B4(130% 이상), C3(120% 이상) •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20조" 참조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1층부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참조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 참조 <신설>

<별표7> 상업·업무 용도분류표

구 분		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3
	지정 용도	•업무시설(업무 용도에 한함)
	허용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숙박시설(호텔에 한함)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

구 분		상업용지
		B4
		(워터프론트 내)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X
	판매시설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운수시설	● (유람선 선착장)
	숙박시설	X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X
	운동시설	◇
	관광휴게시설	◇
산업 시설군	공장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자동차관련시설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창고시설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공동주택	X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X
	방송통신시설	X
	발전시설	X
기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묘지관련시설	X

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X : 불허용도

1)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외

2)장 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별표8> 상업·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상업용지	업무용지
	B4	C3
	(위터프론트 변)	(호수 변)
건폐율	20%이하	20%이하
용적률	5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2층이하	12층 이하

(7) 특별계획구역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 구역	특별계획구역1 (C3)	허용 용도	•컨벤션센터(전시장 수중(지하)배치), 호텔, 복합상업문화시설 등	
		건폐율	컨벤션센터	•20%이하
			호텔	•20%이하
		용적률	컨벤션센터	•40%이하
			호텔	•200%이하
		최고 층수	컨벤션센터	•2층
			호텔	•12층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특별계획구역2 (B4)	허용 용도	•대규모 판매 및 영업시설, 복합상업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마리나 관련시설, 주차장 등	
		건폐율	상업시설	•20%이하
			마리나클럽	
			유람선선착장	
		용적률	상업시설	•50%이하
			마리나클럽	
			유람선선착장	
		최고 층수	상업시설	•2층 (+6.5 Level 지하1층)
			마리나클럽	•4층 (+6.5 Level 지하1층)
			유람선선착장	•4층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 구역	특별계획구역3 (워터프론트 공원지역)	허용 용도	•공익 편익시설(매점, 자전거대여소, 레스토랑, 카페, 안내센터, 야외수영장, 스포츠센터, 관리소+화장실, 기타시설물), 기타 워터프론트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펌프장, 수처리시설 등 수방시설 포함)	
		건폐율	공원 편익시설	•20%이하
			기타 워터프론트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용적률	공원 편익시설	•50%이하
			기타 워터프론트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최고 층수	공원 편익시설	•3층
			기타 워터프론트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4층

5)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가)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소계		서울시		강서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913	486,964.5327	520	289,859.6666	519	289,849.6661	1	10	393	197,104.8666	337	181,596.2666	56	15,508.6
전	30	4,894	14	3,684	14	3,684	-	-	16	1,210	16	1210	-	-
답	226	53,099	65	22,986	65	22,986	-	-	161	30,113	157	29,748	4	365
대지	4	530	3	484	3	484	-	-	1	46	1	46	-	-
도로	251	168,804.8666	166	104,115	166	104,115	-	-	85	64,689.8666	50	56,610.2666	35	8,079.6
임야	4	117	2	106	2	106	-	-	2	11	2	11	-	-
하천	27	28,850	25	24,124	25	24,124	-	-	2	4,726	1	212	1	4,514
제방	58	20,797	51	19,345	51	19,345	-	-	7	1,452	6	1,412	1	40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소계		서울시		강서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구거	186	47,504	151	44,073	150	44,063	1	10	35	3,431	32	3,125	3	306
공원	60	48,255	12	1,275	12	1,275	-	-	48	46,980	47	46,801	1	179
잡종지	16	1,953,666	7	687,666	7	687,666	-	-	9	1,266	7	1,142	2	124
유지	47	112,117	24	68,980	24	68,980	-	-	23	43,137	17	41,243	6	1,894
학교용지	1	4	-	-	-	-	-	-	1	4	-	-	1	4
묘지	1	36	-	-	-	-	-	-	1	36	1	36	-	-
공장용지	2	3	-	-	-	-	-	-	2	3	-	-	2	3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 /개수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20,718	증)1,719	22,437	1,263,696	증)155,206	1,418,902	
도 로	일 반 도 로	4~45	56	68	20,126	증)1,719	21,845	518,419	증)43,439	561,858	
	보행자전용도로	5~18	3	3	592	-	592	7,695	-	7,695	
공 원 녹 지	근 린 공 원	-	4	4	-	-	-	463,780	-	559,094	
	어 린 이 공 원	-	10	10	-	-	-	20,450	-	19,628	
	완 충 녹 지	-	1	-	-	-	-	2,677	감)2,677	-	폐지
	경 관 녹 지	-	2	2	-	-	-	1,068	-	1,068	
	연 결 녹 지	-	15	22	-	-	-	233,599	감)584	233,015	
공 공 공 지		-	1	1	-	-	-	815	증)536	1,351	
광 장		-	2	2	-	-	-	13,239	-	13,239	
방 수 설 비		-	1	2	-	-	-	1,954	증)20,000	21,954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마)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도시개발법』제66조 규정에 의한 명세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 서울시(도로행정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259	10	도로	56	56	18,666	-	서울시
2	가양동	259	29	도로	381	381	381	-	서울시
3	가양동	269	2	대	46	46	46	-	서울시
4	가양동	271	26	전	1	1	-	1	서울시
5	가양동	271	36	도로	94	94	83	11	서울시
6	가양동	272	62	도로	684	684	684	-	서울시
7	가양동	495		도로	10,148	10,148	10,148	-	서울시
8	가양동	514		도로	195	195	195	-	서울시
9	가양동	520		도로	715	715	715	-	서울시
10	가양동	530	2	답	57	57	-	57	서울시
11	가양동	533	8	답	22	22	22	-	서울시
12	가양동	662	1	답	422	422	422	-	서울시
13	가양동	664	1	답	1	1	1	-	서울시
14	가양동	664		답	26	26	26	-	서울시
15	가양동	816		도로	1,390	1,390	1,390	-	서울시
16	가양동	824		도로	46	46	46	-	서울시
17	가양동	832		도로	80	80	80	-	서울시
18	가양동	856		도로	119	119	119	-	서울시
19	가양동	879	1	공원	310	310	310	-	서울시
20	가양동	885		도로	212	212	212	-	서울시
21	가양동	886		도로	3,560	3,560	3,560	-	서울시
22	가양동	910		도로	5,765	5,765	5,765	-	서울시
23	가양동	936		도로	5,031	5,031	5,031	-	서울시
24	가양동	974		도로	2,869	2,869	2,869	-	서울시
25	가양동	976		답	128	128	128	-	서울시
26	가양동	979		도로	52	52	52	-	서울시
27	가양동	1454	15	도로	448.6	448.6	448.6	-	서울시
28	공항동	2	106	도로	205	205	205	-	서울시
29	공항동	2	107	도로	1	1	1	-	서울시
30	공항동	832	5	구거	11	11	11	-	서울시
31	공항동	833	3	구거	80	80	80	-	서울시
32	공항동	995		도로	4,575	4,575	4,575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33	공향동	1000		도로	9,405	9,405	9,405	-	서울시
34	공향동	1031	1	공원	452	452	452	-	서울시
35	공향동	1149	2	답	80	80	80	-	서울시
36	공향동	1150	2	답	87	87	87	-	서울시
37	공향동	1151	2	답	137	137	137	-	서울시
38	공향동	1152	2	답	102	102	102	-	서울시
39	공향동	1153	2	답	81	81	81	-	서울시
40	공향동	1193	2	답	83	83	83	-	서울시
41	공향동	1197	2	답	71	71	71	-	서울시
42	공향동	1198	2	잡종지	52	52	52	-	서울시
43	공향동	1201	2	답	42	42	42	-	서울시
44	공향동	1202	2	답	66	66	66	-	서울시
45	공향동	1203	2	답	72	72	72	-	서울시
46	공향동	1210	2	답	293	293	293	-	서울시
47	공향동	1211	2	답	152	152	152	-	서울시
48	공향동	1214		답	63	63	63	-	서울시
49	공향동	1219		답	3	3	3	-	서울시
50	공향동	1220	3	답	77	77	77	-	서울시
51	공향동	1220	4	답	551	551	551	-	서울시
52	공향동	1223	5	답	460	460	422	38	서울시
53	공향동	1223	9	답	327	327	21	306	서울시
54	공향동	1223	12	답	127	127	127	-	서울시
55	공향동	1223	13	답	377	377	377	-	서울시
56	공향동	1250	1	답	44	44	44	-	서울시
57	공향동	1301		도로	33	33	33	-	서울시
58	공향동	1308		도로	344	344	344	-	서울시
59	공향동	1332	2	답	235	235	189	46	서울시
60	공향동	1333		답	357	357	357	-	서울시
61	내발산동	323	4	도로	1,424	1,424	1,424	-	서울시
62	내발산동	327	3	공원	3	3	3	-	서울시
63	마곡동	25	12	대	8	8	-	8	서울시
64	마곡동	52	4	답	229	229	42	187	서울시
65	마곡동	52	5	답	254	254	36	218	서울시
66	마곡동	52	11	답	6	6	-	6	서울시
67	마곡동	221	18	도로	111	111	-	111	서울시
68	마곡동	222	15	도로	146	146	146	-	서울시
69	마곡동	222	16	도로	146	146	141	5	서울시
70	마곡동	222	18	도로	127	127	68	59	서울시
71	마곡동	222	20	도로	85	85	21	64	서울시
72	마곡동	222	22	도로	258	258	122	136	서울시
73	마곡동	222	40	도로	40	40	40	-	서울시
74	마곡동	222	41	도로	1,648	1,648	309	1,339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75	마곡동	324	6	전	601	601		601	서울시
76	마곡동	324	15	전	46	46	30	16	서울시
77	마곡동	327	97	도로	86	86	86	-	서울시
78	방화동	186	37	도로	105	105	105	-	서울시
79	방화동	186	40	전	29	29	29	-	서울시
80	방화동	202	3	도로	8	8	-	8	서울시
81	방화동	204	1	도로	266	266	-	266	서울시
82	방화동	210	6	도로	181	181	181	-	서울시
83	방화동	217	228	도로	39	39	39	-	서울시
84	방화동	217	296	도로	331	331	331	-	서울시
85	방화동	217	297	도로	1,697	1,697	1,697	-	서울시
86	방화동	217	298	임야	4	4	4	-	서울시
87	방화동	233	2	도로	129	129	129	-	서울시
88	방화동	233	4	도로	79	79	79	-	서울시
89	방화동	233	5	답	30	30	30	-	서울시
90	방화동	240	9	답	43	43	43	-	서울시
91	방화동	240	10	답	51	51	51	-	서울시
92	방화동	240	12	답	6	6	6	-	서울시
93	방화동	241	3	도로	212	212	212	-	서울시
94	방화동	241	4	답	30	30	30	-	서울시
95	방화동	241	6	답	380	380	380	-	서울시
96	방화동	242	3	도로	813	813	813	-	서울시
97	방화동	242	4	답	260	260	260	-	서울시
98	방화동	242	7	답	419	419	419	-	서울시
99	방화동	258	6	구거	26	26	26	-	서울시
100	외발산동	303	9	도로	88	88	88	-	서울시

- 서울시(하천관리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259	28	구거	476	476	476	-	서울시
2	가양동	269	8	구거	121	121	121	-	서울시
3	가양동	481	1	답	38	38	38	-	서울시
4	가양동	482	1	답	188	188	188	-	서울시
5	가양동	483		구거	153	153	153	-	서울시
6	가양동	484	1	답	395	395	395	-	서울시
7	가양동	486	2	답	34	34	34	-	서울시
8	가양동	486	4	답	132	132	132	-	서울시
9	가양동	487	2	구거	8	8	8	-	서울시
10	가양동	533	2	답	34	34	34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1	가양동	533	6	답	66	66	66	-	서울시
12	가양동	533	7	답	66	66	66	-	서울시
13	가양동	533	9	답	29	29	29	-	서울시
14	가양동	533		답	68	68	68	-	서울시
15	가양동	534	2	구거	8	8	8	-	서울시
16	가양동	534		구거	80	80	80	-	서울시
17	가양동	536	2	답	298	298	298	-	서울시
18	가양동	536	3	답	164	164	164	-	서울시
19	가양동	536	4	답	187	187	-	-	서울시
20	가양동	536	5	답	3	3	3	-	서울시
21	가양동	538	1	전	548	548	548	-	서울시
22	가양동	538	2	전	105	105	105	-	서울시
23	가양동	554	1	잡종 지	510	510	510	-	서울시
24	가양동	554	2	잡종 지	108	108	108	-	서울시
25	가양동	554	3	잡종 지	32	32	32	-	서울시
26	가양동	555	1	구거	35	35	35	-	서울시
27	가양동	555		구거	345	345	345	-	서울시
28	공향동	706	8	유지	1,141	1,141	1,141	-	서울시
29	공향동	832	4	답	11	11	11	-	서울시
30	공향동	833	1	답	84	84	84	-	서울시
31	공향동	834	1	답	111	111	111	-	서울시
32	공향동	835	1	답	103	103	103	-	서울시
33	공향동	836	1	답	170	170	170	-	서울시
34	공향동	998	1	구거	462	462	462	-	서울시
35	공향동	1024	1	공원	109	109	109	-	서울시
36	공향동	1024	2	구거	150	150	150	-	서울시
37	공향동	1059	1	구거	19	19	19	-	서울시
38	공향동	1060	1	답	139	139	139	-	서울시
39	공향동	1061	1	답	125	125	125	-	서울시
40	공향동	1062		구거	69	69	69	-	서울시
41	공향동	1063	1	구거	9	9	9	-	서울시
42	공향동	1064	1	구거	32	32	32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3	공향동	1139	1	답	71	71	-	-	서울시
44	공향동	1140	1	답	14	14	-	-	서울시
45	공향동	1141		구거	13	13	13	-	서울시
46	공향동	1142	1	구거	1	1	1	-	서울시
47	공향동	1142		구거	264	264	264	-	서울시
48	공향동	1143		답	228	228	228	-	서울시
49	공향동	1144	1	답	2	2	2	-	서울시
50	공향동	1144		답	1,178	1,178	1,178	-	서울시
51	공향동	1145	4	답	807	807	807	-	서울시
52	공향동	1145	5	답	706	706	706	-	서울시
53	공향동	1145	6	답	620	620	620	-	서울시
54	공향동	1145	7	답	555	555	555	-	서울시
55	공향동	1145	8	답	71	71	71	-	서울시
56	공향동	1145	9	답	55	55	55	-	서울시
57	공향동	1145	10	답	64	64	64	-	서울시
58	공향동	1145	11	답	50	50	50	-	서울시
59	공향동	1146	1	답	23	23	-	-	서울시
60	공향동	1147	1	답	890	890	744	-	서울시
61	공향동	1147	2	답	65	65	65	-	서울시
62	공향동	1148	2	답	119	119	47	-	서울시
63	공향동	1148	4	답	440	440	436	-	서울시
64	공향동	1149	1	답	178	178	178	-	서울시
65	공향동	1150	1	답	182	182	182	-	서울시
66	공향동	1151	1	답	290	290	290	-	서울시
67	공향동	1152	1	답	251	251	251	-	서울시
68	공향동	1153	1	답	240	240	240	-	서울시
69	공향동	1193	1	답	494	494	494	-	서울시
70	공향동	1195	1	답	385	385	385	-	서울시
71	공향동	1195	2	유지	125	125	125	-	서울시
72	공향동	1195	3	유지	119	119	119	-	서울시
73	공향동	1197	1	답	260	260	260	-	서울시
74	공향동	1198	1	잡종 지	189	189	189	-	서울시
75	공향동	1201	1	답	155	155	155	-	서울시
76	공향동	1202	1	답	227	227	227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77	공향동	1203	1	답	240	240	240	-	서울시
78	공향동	1206	1	답	114	114	114	-	서울시
79	공향동	1207	1	답	402	402	402	-	서울시
80	공향동	1207	3	답	99	99	99	-	서울시
81	공향동	1210	1	답	401	401	401	-	서울시
82	공향동	1211	1	답	231	231	231	-	서울시
83	공향동	1214	1	답	188	188	188	-	서울시
84	공향동	1215		답	33	33	33	-	서울시
85	공향동	1219	1	답	20	20	20	-	서울시
86	공향동	1219	2	답	81	81	81	-	서울시
87	공향동	1219	3	답	61	61	61	-	서울시
88	공향동	1220	1	답	34	34	34	-	서울시
89	공향동	1220	2	답	639	639	639	-	서울시
90	공향동	1220	5	답	14	14	14	-	서울시
91	공향동	1223	1	답	128	128	73	-	서울시
92	공향동	1223	2	답	20	20	20	-	서울시
93	공향동	1223	3	답	6	6	6	-	서울시
94	공향동	1223	4	답	62	62	62	-	서울시
95	공향동	1223	7	답	35	35	-	-	서울시
96	공향동	1223	8	답	109	109	90	-	서울시
97	공향동	1223	10	답	1	1	1	-	서울시
98	공향동	1223	11	답	5	5	5	-	서울시
99	공향동	1223	14	답	35	35	-	-	서울시
100	공향동	1223	15	답	159	159	52	-	서울시
101	공향동	1224	1	답	1,430	1,430	1,430	-	서울시
102	공향동	1224	2	답	73	73	63	-	서울시
103	공향동	1224	3	답	10	10	4	-	서울시
104	공향동	1225	1	답	713	713	713	-	서울시
105	공향동	1225	2	답	189	189	189	-	서울시
106	공향동	1225	3	답	57	57	57	-	서울시
107	공향동	1227	1	답	390	390	390	-	서울시
108	공향동	1228	1	답	356	356	356	-	서울시
109	공향동	1234	1	답	153	153	153	-	서울시
110	공향동	1236	1	답	123	123	123	-	서울시
111	공향동	1238	1	답	109	109	109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12	공향동	1239	1	답	167	167	167	-	서울시
113	공향동	1241	1	답	192	192	192	-	서울시
114	공향동	1304	1	답	14	14	14	-	서울시
115	공향동	1305		구거	92	92	92	-	서울시
116	공향동	1306		구거	56	56	56	-	서울시
117	공향동	1307	1	답	722	722	722	-	서울시
118	공향동	1307	2	답	50	50	50	-	서울시
119	공향동	1307	3	답	16	16	16	-	서울시
120	공향동	1307		답	2	2	2	-	서울시
121	공향동	1310		구거	76	76	76	-	서울시
122	공향동	1311	1	답	1,221	1,221	1,221	-	서울시
123	공향동	1311	3	답	19	19	19	-	서울시
124	공향동	1312		구거	20	20	20	-	서울시
125	공향동	1313	1	답	1,051	1,051	1,051	-	서울시
126	공향동	1313	4	답	219	219	219	-	서울시
127	공향동	1313	5	답	10	10	10	-	서울시
128	공향동	1321	1	구거	34	34	34	-	서울시
129	공향동	1321	3	구거	2	2	2	-	서울시
130	공향동	1322	1	답	526	526	526	-	서울시
131	공향동	1322	3	답	133	133	133	-	서울시
132	공향동	1322	4	답	6	6	6	-	서울시
133	공향동	1323	1	답	45	45	45	-	서울시
134	공향동	1323	3	답	1	1	1	-	서울시
135	공향동	1324	1	답	4	4	4	-	서울시
136	공향동	1324	2	답	6	6	6	-	서울시
137	공향동	1332	1	답	304	304	304	-	서울시
138	내발산동	290	9	답	31	31	31	-	서울시
139	내발산동	290	10	답	6	6	6	-	서울시
140	마곡동	25	1	제방	112	112	0	-	서울시
141	마곡동	52	2	임야	41	41	7	-	서울시
142	마곡동	54	2	임야	8	8	-	-	서울시
143	방화동	242	9	구거	64	64	64	-	서울시
144	방화동	761	19	하천	750	750	212	-	서울시
145	외발산동	77	2	구거	13	13	13	-	서울시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내발산동	81	7	답	4	4	4	-	서울시
2	내발산동	81	10	공원	90	90	90	-	서울시

- 서울시(재무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내발산동	198	3	답	2,681	2,681	9	2,672	서울시
2	내발산동	198	5	공원	2,777	2,777	2,777	-	서울시
3	방화동	204		답	9,912	9,912	749	9,163	서울시
4	가양동	159	22	대	86	86	-	86	서울시
5	가양동	554		잡종지	686	686	-	686	서울시

- 서울시(도시계획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공항동	7	9	전	263	263	74	189	서울시
2	공항동	9	8	전	36	36	36	-	서울시

- 서울시(교통정책담당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306	10	답	48	48	-	48	서울시
2	가양동	327	3	답	628	628	19	609	서울시
3	가양동	328	6	구거	82	82	21	61	서울시
4	가양동	328	8	답	4	4	-	4	서울시
5	마곡동	278	6	답	803	803	803	-	서울시
6	마곡동	278	7	답	69	69	69	-	서울시
7	마곡동	278	9	답	68	68	68	-	서울시
8	마곡동	278	10	답	619	619	489	130	서울시
9	마곡동	279	5	구거	100	100	88	12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0	마곡동	280	8	답	45	45	-	45	서울시
11	마곡동	282	8	답	102	102	85	17	서울시
12	마곡동	364	11	구거	10	10	-	10	서울시
13	마곡동	366	9	답	125	125	16	109	서울시
14	마곡동	366	10	답	8	8	-	8	서울시
15	마곡동	366	11	답	15	15	-	15	서울시
16	마곡동	367	6	답	1,643	1,643	1,643	-	서울시
17	마곡동	367	11	답	1,869	1,869	1,757	112	서울시
18	마곡동	367	12	답	1,178	1,178	763	415	서울시
19	마곡동	367	14	답	114	114	59	55	서울시
20	마곡동	367	16	답	2,828	2,828	2,467	361	서울시
21	마곡동	368	5	답	1	1	1	-	서울시
22	마곡동	368	7	답	321	321	321	-	서울시
23	마곡동	369	10	답	856	856	552	304	서울시
24	마곡동	369	11	구거	278	278	237	41	서울시
25	마곡동	369	12	답	2,410	2,410	2,145	265	서울시
26	마곡동	369	19	답	227	227	227	-	서울시
27	마곡동	370	4	답	104	104	104	-	서울시
28	마곡동	370	5	답	66	66	-	66	서울시
29	마곡동	370	9	답	71	71	71	-	서울시
30	마곡동	371	5	답	450	450	-	450	서울시
31	마곡동	372	13	답	276	276	264	12	서울시
32	마곡동	372	14	답	131	131	131	-	서울시
33	마곡동	373	8	답	16	16	16	-	서울시
34	마곡동	376	6	답	65	65	65	-	서울시
35	마곡동	376	12	답	86	86	86	-	서울시
36	마곡동	376	13	답	130	130	130	-	서울시
37	마곡동	376	14	구거	2	2	2	-	서울시
38	마곡동	376	15	답	166	166	166	-	서울시
39	방화동	209	3	답	100	100	9	91	서울시
40	방화동	210	11	답	42	42	22	20	서울시
41	방화동	217	35	학교 용지	11	11	11	-	서울시
42	방화동	217	189	답	864	864	864	-	서울시
43	방화동	217	191	답	97	97	97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4	방화동	217	193	답	267	267	267	-	서울시
45	방화동	217	220	답	80	80	80	-	서울시
46	방화동	217	222	답	30	30	30	-	서울시
47	방화동	217	267	전	60	60	60	-	서울시
48	방화동	217	268	전	9	9	9	-	서울시
49	방화동	217	269	전	15	15	15	-	서울시
50	방화동	217	271	답	299	299	155	144	서울시
51	방화동	217	272	답	66	66	10	56	서울시
52	방화동	217	273	답	108	108	82	26	서울시
53	방화동	217	274	답	90	90	90	-	서울시
54	방화동	217	276	답	4	4	-	4	서울시
55	방화동	217	277	답	528	528	528	-	서울시
56	방화동	217	279	답	512	512	359	153	서울시
57	방화동	225	4	답	162	162	162	-	서울시
58	방화동	225	5	답	715	715	558	157	서울시
59	방화동	226	5	답	9	9	9	-	서울시
60	방화동	226	6	답	5	5	5	-	서울시
61	방화동	226	9	답	54	54	54	-	서울시
62	방화동	226	10	답	27	27	27	-	서울시
63	방화동	226	11	답	470	470	470	-	서울시
64	방화동	238	2	학	306	306	306	-	서울시

- 서울시(조경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780	1	공원	65	65	65	-	서울시
2	가양동	788	1	공원	269	269	269	-	서울시
3	가양동	794	2	공원	466	466	466	-	서울시
4	가양동	801		공원	2	2	2	-	서울시
5	가양동	808	2	답	103	103	103	-	서울시
6	가양동	808	4	공원	1114	1114	1114	-	서울시
7	가양동	813		공원	577	577	577	-	서울시
8	가양동	839		공원	2679	2679	2679	-	서울시
9	가양동	861	1	공원	2170	2170	2170	-	서울시
10	가양동	876	1	공원	1663	1663	1663	-	서울시
11	가양동	878		공원	53	53	53	-	서울시
12	가양동	920		공원	2279	2279	2279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3	가양동	931	1	공원	2051	2051	2051	-	서울시
14	가양동	933	1	공원	1315	1315	1315	-	서울시
15	가양동	967	4	공원	1041	1041	1041	-	서울시
16	가양동	970	4	공원	109	109	109	-	서울시
17	공향동	957	1	공원	684	684	684	-	서울시
18	공향동	967	2	공원	343	343	343	-	서울시
19	공향동	968	2	공원	41	41	41	-	서울시
20	공향동	969	2	공원	463	463	463	-	서울시
21	공향동	969	3	공원	357	357	357	-	서울시
22	공향동	1025	1	공원	945	945	945	-	서울시
23	공향동	1028	1	공원	53	53	53	-	서울시
24	공향동	1032	1	공원	1499	1499	1499	-	서울시
25	공향동	1035	1	공원	636	636	636	-	서울시
26	공향동	1036	1	공원	1145	1145	1145	-	서울시
27	공향동	1038	1	공원	3075	3075	3075	-	서울시
28	공향동	1044		답	1	1	1	-	서울시
29	공향동	1304	2	공원	746	746	746	-	서울시
30	공향동	1313	2	공원	574	574	574	-	서울시
31	내발산동	81	8	공원	1373	1373	1373	-	서울시
32	내발산동	81	9	공원	2	2	2	-	서울시
33	내발산동	90	4	공원	23	23	23	-	서울시
34	내발산동	91	5	공원	3375	3375	3375	-	서울시
35	내발산동	195	10	공원	20	20	20	-	서울시
36	내발산동	202	19	공원	277	277	277	-	서울시
37	내발산동	214	14	공원	3521	3521	3521	-	서울시
38	내발산동	217	3	구거	6	6	6	-	서울시
39	내발산동	217	9	공원	58	58	58	-	서울시
40	내발산동	228	6	공원	864	864	864	-	서울시
41	내발산동	306	9	공원	4304	4304	4304	-	서울시
42	내발산동	309	6	공원	36	36	36	-	서울시
43	내발산동	312	16	공원	1223	1223	1223	-	서울시
44	내발산동	320	12	공원	1047	1047	1047	-	서울시
45	내발산동	322	5	공원	613	613	613	-	서울시
46	내발산동	323	5	답	224	224	224	-	서울시

- 서울시(추가편입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마곡동	41	48	전	436	436	90	346	서울시
2	마곡동	41	7	답	2,140	2,140	41	2,099	서울시
3	마곡동	41	67	답	380	380	152	228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	마곡동	45	6	전	9	9	9	-	서울시
5	마곡동	41	11	전	831	831	1	830	서울시
6	마곡동	41	68	전	572	572	26	546	서울시
7	마곡동	41	69	전	2	2	1	1	서울시
8	마곡동	45	5	전	179	179	6	173	서울시
9	마곡동	45	1	전	1,653	1,653	53	1,600	서울시
10	마곡동	45	2	답	2,443	2,443	4	2,439	서울시
11	마곡동	41	97	답	7	7		7	서울시
12	마곡동	41	102	유지	36	36	14	22	서울시
13	마곡동	49	9	답	2,313	2,313	103	2,210	서울시
14	마곡동	49	21	잡종 지	20	20	20	-	서울시
15	마곡동	49	22	잡종 지	231	231	231	-	서울시
16	마곡동	38	21	구거	341	341	341	-	서울시
17	마곡동	38	40	전	54	54	54	-	서울시
18	마곡동	38	3	전	69	69	69	-	서울시
19	마곡동	32	3	답	96	96	96	-	서울시
20	마곡동	32	19	답	44	44	44	-	서울시
21	마곡동	49	3	답	655	655	-	655	서울시
22	마곡동	49	4	전	79	79	-	79	서울시
23	마곡동	32	20	답	16	16	16	-	서울시
24	마곡동	32	7	답	34	34	34	-	서울시
25	마곡동	50	14	답	172	172	40	132	서울시
26	마곡동	70	1	답	1,778	1,778	71	1,707	서울시
27	마곡동	71	10	답	3,748	3,748	-	3,748	서울시
28	마곡동	69	14	답	693	693	39	654	서울시
29	마곡동	69	26	답	814	814	354	460	서울시
30	마곡동	69	11	유	148	148	19	129	서울시
31	마곡동	69	17	답	14	14	14	-	서울시
32	마곡동	69	12	답	492	492	326	166	서울시
33	마곡동	50	24	답	18	18	18	-	서울시
34	마곡동	50	29	답	1	1	1	-	서울시
35	마곡동	26	7	제방	453	453	453	-	서울시
36	마곡동	26	6	제방	212	212	212	-	서울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37	마곡동	27	30	전	79	79	79	-	서울시
38	마곡동	27	31	도	98	98	98	-	서울시
39	마곡동	27	32	도	238	238	238	-	서울시
40	마곡동	27	28	도	1,101	1,101	1,101	-	서울시
41	마곡동	27	33	묘	36	36	36	-	서울시
42	마곡동	18	3	답	268	268	268	-	서울시
43	마곡동	17	5	도	40	40	40	-	서울시
44	마곡동	17	15	제방	337	337	337	-	서울시
45	마곡동	18	1	제방	225	225	225	-	서울시
46	마곡동	17	10	제방	162	162	162	-	서울시
47	마곡동	17	13	제방	23	23	23	-	서울시
48	가양동	259	7	도	2,290	2,290	2,290	-	서울시
49	가양동	258	7	유	925	925	417	508	서울시
50	마곡동	15	9	유	947	947	892	55	서울시
51	마곡동	16	2	유	965	965	672	293	서울시
52	마곡동	17	4	유	221	221	221	-	서울시
53	마곡동	27	22	유	1,677	1,677	1,677	-	서울시
54	마곡동	51	1	유	603	603	603	-	서울시
55	마곡동	51	2	유	30	30	30	-	서울시
56	마곡동	32	10	유	5,099	5,099	5,099	-	서울시
57	마곡동	32	18	유	26,744	26,744	26,744	-	서울시
58	마곡동	37	8	도	37	37	37	-	서울시
59	마곡동	37	1	도	415	415	415	-	서울시
60	마곡동	37	13	구	54	54	54	-	서울시
61	마곡동	37	5	유	1	1	1	-	서울시
62	마곡동	37	3	구	5	5	5	-	서울시
63	마곡동	41	84	유	1,828	1,828	1,802	26	서울시
64	마곡동	69	22	유	1,667	1,667	1,667	-	서울시

- 국토해양부 (하천관리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301	1	구거	9	9	9	-	국토해양부
2	가양동	301	3	구거	43	43	43	-	국토해양부
3	가양동	301	4	구거	21	21	0	21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	가양동	303	2	구거	240	240	240	-	국토해양부
5	가양동	303	6	구거	160	160	160	-	국토해양부
6	가양동	305	2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7	가양동	305	3	구거	115	115	115	-	국토해양부
8	가양동	305	6	구거	136	136	136	-	국토해양부
9	가양동	336	2	구거	315	315	315	-	국토해양부
10	가양동	336	7	구거	89	89	89	-	국토해양부
11	가양동	336	8	구거	697	697	458	239	국토해양부
12	가양동	342	2	구거	66	66	-	66	국토해양부
13	가양동	342	3	구거	919	919	486	433	국토해양부
14	가양동	408	3	구거	337	337	337	-	국토해양부
15	가양동	409	2	구거	245	245	69	176	국토해양부
16	가양동	410	2	구거	790	790	790	-	국토해양부
17	가양동	427	0	하천	325	325	-	325	국토해양부
18	가양동	427	1	하천	33	33	33	-	국토해양부
19	가양동	427	2	하천	436	436	436	-	국토해양부
20	가양동	427	3	하천	37	37	37	-	국토해양부
21	가양동	427	4	하천	176	176	176	-	국토해양부
22	가양동	427	5	하천	5	5	5	-	국토해양부
23	가양동	428		구거	393	393	393	-	국토해양부
24	가양동	429		구거	360	360	360	-	국토해양부
25	가양동	430		구거	499	499	499	-	국토해양부
26	가양동	431	1	하천	6	6	6	-	국토해양부
27	가양동	431		하천	262	262	262	-	국토해양부
28	가양동	432		하천	374	374	251	123	국토해양부
29	가양동	490	1	하천	3	3	3	-	국토해양부
30	가양동	490	2	하천	155	155	155	-	국토해양부
31	가양동	490		하천	8662	8662	8662	-	국토해양부
32	가양동	525		구거	33	33	33	-	국토해양부
33	가양동	607	1	구거	4	4	4	-	국토해양부
34	가양동	607		구거	72	72	72	-	국토해양부
35	가양동	609		구거	93	93	93	-	국토해양부
36	가양동	619	1	구거	30	30	30	-	국토해양부
37	가양동	619	2	구거	49	49	49	-	국토해양부
38	가양동	619		구거	1141	1141	1141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39	가양동	620	1	구거	6	6	6	-	국토해양부
40	가양동	620		구거	50	50	50	-	국토해양부
41	가양동	667	1	하천	2	2	2	-	국토해양부
42	가양동	667		하천	193	193	193	-	국토해양부
43	가양동	668	1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44	가양동	668		구거	962	962	962	-	국토해양부
45	가양동	673		하천	139	139	87	52	국토해양부
46	가양동	679		구거	1779	1779	1249	530	국토해양부
47	가양동	685		구거	73	73	73	-	국토해양부
48	가양동	688		하천	995	995	995	-	국토해양부
49	가양동	689		구거	119	119	119	-	국토해양부
50	가양동	690		구거	76	76	76	-	국토해양부
51	가양동	700		구거	532	532	532	-	국토해양부
52	가양동	703		하천	380	380	380	-	국토해양부
53	가양동	714		구거	374	374	374	-	국토해양부
54	가양동	715		하천	489	489	489	-	국토해양부
55	가양동	716		구거	26	26	-	26	국토해양부
56	가양동	732		하천	605	605	196	409	국토해양부
57	가양동	733		구거	390	390	390	-	국토해양부
58	가양동	736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59	가양동	738		구거	456	456	456	-	국토해양부
60	가양동	772	1	구거	3	3	3	-	국토해양부
61	가양동	772		구거	73	73	73	-	국토해양부
62	가양동	773	1	구거	213	213	213	-	국토해양부
63	가양동	773	2	구거	351	351	351	-	국토해양부
64	가양동	773		구거	130	130	130	-	국토해양부
65	가양동	779		구거	1158	1158	1158	-	국토해양부
66	가양동	868		구거	3	3	3	-	국토해양부
67	가양동	870		구거	139	139	139	-	국토해양부
68	가양동	872		구거	40	40	40	-	국토해양부
69	가양동	877		구거	223	223	223	-	국토해양부
70	가양동	908		하천	1346	1346	1346	-	국토해양부
71	공향동	6	5	구거	17	17	-	17	국토해양부
72	공향동	993		구거	30	30	30	-	국토해양부
73	공향동	1221	1	구거	24	24	24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74	공향동	1244	0	구거	1	1	-	1	국토해양부
75	공향동	1245	0	구거	7	7	-	7	국토해양부
76	공향동	1247	0	구거	7	7	-	7	국토해양부
77	공향동	1249		구거	17	17	17	-	국토해양부
78	공향동	1251		구거	534	534	384	150	국토해양부
79	공향동	1253	0	구거	29	29	-	29	국토해양부
80	공향동	1295		구거	17	17	17	-	국토해양부
81	공향동	1328		답	86	86	45	41	국토해양부
82	공향동	1331		답	169	169	42	127	국토해양부
83	공향동	1334		구거	3749	3749	3749	-	국토해양부
84	공향동	산12	4	구거	50	50	-	50	국토해양부
85	내발산동	92	2	구거	165	165	-	165	국토해양부
86	내발산동	158	1	구거	33	33	-	33	국토해양부
87	내발산동	158	3	구거	46	46	-	46	국토해양부
88	내발산동	191	1	구거	7	7	-	7	국토해양부
89	내발산동	194	1	구거	60	60	-	60	국토해양부
90	내발산동	195	1	구거	18	18	-	18	국토해양부
91	내발산동	195	3	구거	317	317	266	51	국토해양부
92	내발산동	195	6	구거	13	13	-	13	국토해양부
93	내발산동	195	7	구거	2	2	-	2	국토해양부
94	내발산동	196	1	구거	499	499	499	-	국토해양부
95	내발산동	196	3	구거	99	99	99	-	국토해양부
96	내발산동	197	1	구거	271	271	-	271	국토해양부
97	내발산동	198	2	구거	50	50	-	50	국토해양부
98	내발산동	199	2	구거	142	142	-	142	국토해양부
99	내발산동	200	2	구거	10	10	-	10	국토해양부
100	내발산동	201	2	구거	139	139	63	76	국토해양부
101	내발산동	217	1	구거	68	68	51	17	국토해양부
102	내발산동	217	2	구거	17	17	6	11	국토해양부
103	내발산동	218	1	구거	76	76	26	50	국토해양부
104	내발산동	218	3	구거	1160	1160	970	190	국토해양부
105	내발산동	218	9	구거	89	89	21	68	국토해양부
106	내발산동	344	2	구거	731	731	731	-	국토해양부
107	내발산동	345	2	구거	446	446	446	-	국토해양부
108	내발산동	346	2	구거	265	265	265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09	내발산동	347	2	구거	132	132	132	-	국토해양부
110	내발산동	350	3	구거	499	499	309	190	국토해양부
111	내발산동	352	2	구거	301	301	116	185	국토해양부
112	내발산동	352	6	구거	60	60	60	-	국토해양부
113	내발산동	352	7	구거	33	33	33	-	국토해양부
114	내발산동	352	9	구거	370	370	303	67	국토해양부
115	내발산동	352	12	구거	410	410	327	83	국토해양부
116	내발산동	353	1	구거	1	1	-	1	국토해양부
117	내발산동	353	2	구거	10	10	-	10	국토해양부
118	내발산동	355	4	구거	238	238	238	-	국토해양부
119	내발산동	355	5	구거	231	231	76	155	국토해양부
120	내발산동	356	2	구거	17	17	-	17	국토해양부
121	내발산동	606	4	하천	295	295	169	126	국토해양부
122	내발산동	606		하천	4655	4655	1695	2960	국토해양부
123	내발산동	623		구거	2426	2426	1153	1273	국토해양부
124	내발산동	624		구거	458	458	458	-	국토해양부
125	마곡동	24	1	구거	45	45	45	-	국토해양부
126	마곡동	24	4	구거	11	11	11	-	국토해양부
127	마곡동	24	5	구거	142	142	142	-	국토해양부
128	마곡동	24	6	구거	76	76	-	76	국토해양부
129	마곡동	25	6	구거	182	182	182	-	국토해양부
130	마곡동	25	17	구거	124	124	124	-	국토해양부
131	마곡동	25	18	구거	687	687	360	327	국토해양부
132	마곡동	25	19	구거	2	2	2	-	국토해양부
133	마곡동	25	20	구거	562	562	562	-	국토해양부
134	마곡동	25	21	구거	88	88	88	-	국토해양부
135	마곡동	25	22	구거	40	40	40	-	국토해양부
136	마곡동	50	2	제방	149	149	149	-	국토해양부
137	마곡동	50	31	제방	105	105	105	-	국토해양부
138	마곡동	50	32	제방	1	1	1	-	국토해양부
139	마곡동	52	1	제방	2377	2377	1485	892	국토해양부
140	마곡동	52	10	제방	704	704	112	592	국토해양부
141	마곡동	55	7	제방	2	2	2	-	국토해양부
142	마곡동	223	24	제방	464	464	18	446	국토해양부
143	마곡동	223	45	제방	29	29	9	20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44	마곡동	223	55	제방	217	217	163	54	국토해양부
145	마곡동	223	56	제방	65	65	65	-	국토해양부
146	마곡동	225	1	제방	142	142	-	142	국토해양부
147	마곡동	226	1	제방	563	563	62	501	국토해양부
148	마곡동	226	3	제방	47	47	-	47	국토해양부
149	마곡동	228	1	제방	218	218	13	205	국토해양부
150	마곡동	228	7	제방	269	269	269	-	국토해양부
151	마곡동	229	8	제방	1443	1443	524	919	국토해양부
152	마곡동	230	6	제방	102	102	102	-	국토해양부
153	마곡동	230	9	제방	1810	1810	1810	-	국토해양부
154	마곡동	232	1	제방	317	317	317	-	국토해양부
155	마곡동	233	4	제방	447	447	447	-	국토해양부
156	마곡동	233	5	제방	36	36	36	-	국토해양부
157	마곡동	237	1	구거	251	251	251	-	국토해양부
158	마곡동	238	2	구거	668	668	668	-	국토해양부
159	마곡동	238	4	구거	168	168	168	-	국토해양부
160	마곡동	238	5	구거	10	10	10	-	국토해양부
161	마곡동	239	1	구거	274	274	274	-	국토해양부
162	마곡동	241	1	구거	13	13	-	13	국토해양부
163	마곡동	259	3	구거	2452	2452	2452	-	국토해양부
164	마곡동	259	6	구거	26	26	26	-	국토해양부
165	마곡동	259	7	구거	709	709	709	-	국토해양부
166	마곡동	259	9	구거	208	208	208	-	국토해양부
167	마곡동	259	19	구거	203	203	203	-	국토해양부
168	마곡동	259	20	구거	1528	1528	1528	-	국토해양부
169	마곡동	259	23	구거	612	612	612	-	국토해양부
170	마곡동	259	24	구거	189	189	-	189	국토해양부
171	마곡동	276	3	구거	27	27	-	27	국토해양부
172	마곡동	276	10	구거	32	32	32	-	국토해양부
173	마곡동	276	11	구거	4	4	-	4	국토해양부
174	마곡동	278	4	구거	344	344	46	298	국토해양부
175	마곡동	278	5	구거	698	698	688	10	국토해양부
176	마곡동	361	7	구거	33	33	-	33	국토해양부
177	마곡동	366	3	구거	73	73	-	73	국토해양부
178	마곡동	367	2	구거	99	99	13	86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79	마곡동	368	1	구거	20	20	20	-	국토해양부
180	마곡동	369	1	구거	17	17	17	-	국토해양부
181	마곡동	369	3	구거	311	311	311	-	국토해양부
182	마곡동	369	13	구거	132	132	132	-	국토해양부
183	마곡동	370	1	구거	446	446	83	363	국토해양부
184	마곡동	371	2	구거	6	6	-	6	국토해양부
185	마곡동	371	3	구거	582	582	381	201	국토해양부
186	마곡동	371	7	구거	88	88	88	-	국토해양부
187	마곡동	371	8	구거	2	2	-	2	국토해양부
188	마곡동	372	1	구거	222	222	222	-	국토해양부
189	마곡동	372	15	구거	27	27	27	-	국토해양부
190	마곡동	376	16	구거	111	111	111	-	국토해양부
191	마곡동	376	18	구거	30	30	30	-	국토해양부
192	마곡동	380	3	구거	53	53	53	-	국토해양부
193	마곡동	381	4	구거	82	82	82	-	국토해양부
194	마곡동	390	2	구거	228	228	90	138	국토해양부
195	마곡동	391	2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196	마곡동	391	5	구거	483	483	483	-	국토해양부
197	마곡동	409	1	하천	28	28	-	28	국토해양부
198	마곡동	409	2	하천	5	5	5	-	국토해양부
199	마곡동	409		하천	902	902	902	-	국토해양부
200	마곡동	410		하천	14129	14129	7358	6771	국토해양부
201	마곡동	413	1	구거	64	64	64	-	국토해양부
202	마곡동	413	2	구거	2	2	2	-	국토해양부
203	마곡동	413		구거	3974	3974	3628	346	국토해양부
204	마곡동	414		하천	281	281	281	-	국토해양부
205	방화동	759	1	구거	325	325	325	-	국토해양부
206	방화동	759	2	구거	5	5	5	-	국토해양부
207	방화동	759	3	구거	9	9	9	-	국토해양부
208	방화동	759	4	구거	43	43	43	-	국토해양부
209	방화동	759		구거	8	8	8	-	국토해양부
210	외발산동	38	2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211	외발산동	59	2	구거	112	112	112	-	국토해양부
212	외발산동	59	4	구거	1	1	1	-	국토해양부
213	외발산동	59	19	구거	1	1	1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214	외발산동	60	2	구거	73	73	73	-	국토해양부
215	외발산동	60	8	구거	54	54	54	-	국토해양부
216	외발산동	60	9	구거	13	13	13	-	국토해양부
217	외발산동	65	2	구거	222	222	222	-	국토해양부
218	외발산동	66	2	구거	175	175	175	-	국토해양부
219	외발산동	70	1	구거	23	23	23	-	국토해양부
220	외발산동	71	1	구거	119	119	119	-	국토해양부
221	외발산동	301	1	구거	63	63	63	-	국토해양부
222	외발산동	301	2	구거	7	7	-	7	국토해양부
223	외발산동	401	2	구거	289	289	289	-	국토해양부
224	외발산동	401	6	구거	461	461	461	-	국토해양부
225	외발산동	402		구거	1151	1151	1151	-	국토해양부
226	외발산동	403		구거	426	426	426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공원녹지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779	1	공원	32	32	32	-	국토해양부
2	가양동	800		공원	10	10	10	-	국토해양부
3	가양동	826		공원	30	30	30	-	국토해양부
4	가양동	877	1	공원	184	184	184	-	국토해양부
5	공향동	36	53	공원	24	24	24	-	국토해양부
6	내발산동	195	9	공원	104	104	104	-	국토해양부
7	내발산동	217	8	공원	15	15	15	-	국토해양부
8	내발산동	599	2	공원	49	49	49	-	국토해양부
9	내발산동	599	3	공원	74	74	74	-	국토해양부
10	내발산동	606	5	공원	632	632	632	-	국토해양부
11	내발산동	609	3	공원	62	62	62	-	국토해양부
12	내발산동	609	4	공원	59	59	59	-	국토해양부
13	마곡동	227	16	전	176	176	176	-	국토해양부
14	마곡동	227	17	전	45	45	45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철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공항동	6	18	답	1,686	1,686	1,686	-	국토해양부
2	마곡동	25	15	잡종지	203	203	203	-	국토해양부
3	마곡동	25	23	잡종지	7	7	4,666	-	국토해양부
4	마곡동	52	12	임야	97	97	97	-	국토해양부
5	마곡동	53	2	답	371	371	371	-	국토해양부
6	마곡동	237	5	대	431	431	431	-	국토해양부
7	마곡동	239	5	전	766	766	766	-	국토해양부
8	마곡동	240	5	전	476	476	476	-	국토해양부
9	마곡동	253	10	답	64	64	64	-	국토해양부
10	마곡동	258	9	답	1,991	1,991	1,991	-	국토해양부
11	마곡동	258	11	답	75	75	75	-	국토해양부
12	마곡동	258	12	답	265	265	265	-	국토해양부
13	마곡동	258	14	답	442	442	442	-	국토해양부
14	마곡동	258	16	답	65	65	65	-	국토해양부
15	마곡동	260	6	답	357	357	357	-	국토해양부
16	마곡동	260	8	답	43	43	43	-	국토해양부
17	마곡동	261	10	답	1,071	1,071	1,071	-	국토해양부
18	마곡동	262	6	답	351	351	351	-	국토해양부
19	마곡동	273	3	답	310	310	310	-	국토해양부
20	마곡동	273	5	답	257	257	257	-	국토해양부
21	마곡동	274	1	답	51	51	51	-	국토해양부
22	마곡동	276	8	답	912	912	912	-	국토해양부
23	마곡동	369	14	답	327	327	327	-	국토해양부
24	마곡동	369	16	답	90	90	90	-	국토해양부
25	마곡동	369	17	답	2	2	2	-	국토해양부
26	마곡동	369	18	답	31	31	31	-	국토해양부
27	마곡동	370	7	답	766	766	766	-	국토해양부
28	마곡동	370	10	답	11	11	11	-	국토해양부
29	마곡동	371	9	답	487	487	487	-	국토해양부
30	마곡동	372	16	답	355	355	355	-	국토해양부
31	마곡동	372	18	답	1	1	1	-	국토해양부
32	마곡동	372	19	답	217	217	217	-	국토해양부
33	마곡동	373	9	답	410	410	410	-	국토해양부
34	마곡동	373	11	답	1,018	1,018	1,018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35	마곡동	375	4	답	1,235	1,235	1,235	-	국토해양부
36	마곡동	376	20	답	2,029	2,029	2,029	-	국토해양부
37	마곡동	382	5	답	172	172	172	-	국토해양부
38	마곡동	382	7	답	360	360	360	-	국토해양부
39	마곡동	384	3	답	23	23	23	-	국토해양부
40	마곡동	385	6	답	23	23	23	-	국토해양부
41	마곡동	385	7	답	254	254	254	-	국토해양부
42	마곡동	385	9	답	685	685	685	-	국토해양부
43	마곡동	387	13	답	169	169	169	-	국토해양부
44	마곡동	387	15	답	535	535	535	-	국토해양부
45	마곡동	387	17	답	557	557	557	-	국토해양부
46	마곡동	396	1	답	422	422	422	-	국토해양부
47	마곡동	397	4	답	482	482	482	-	국토해양부
48	마곡동	397	5	답	276	276	276	-	국토해양부
49	마곡동	398	1	답	1,226	1,226	1,226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토목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159	4	도로	40	40	40	-	국토해양부
2	가양동	160	1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3	가양동	160	10	도로	9	9	9	-	국토해양부
4	가양동	175	1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5	가양동	175	7	도로	33	33	33	-	국토해양부
6	가양동	175	10	도로	33	33	33	-	국토해양부
7	가양동	177	1	도로	99	99	81	18	국토해양부
8	가양동	177	2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9	가양동	177	3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10	가양동	178	6	도로	36	36	15	21	국토해양부
11	가양동	178	7	도로	43	43	19	24	국토해양부
12	가양동	181	2	도로	63	63	51	12	국토해양부
13	가양동	259	30	도로	16	16	16	-	국토해양부
14	가양동	268	4	도로	73	73	73	-	국토해양부
15	가양동	269	4	도로	23	23	23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6	가양동	272	27	도로	10	10	-	10	국토해양부
17	가양동	272	28	도로	33	33	-	33	국토해양부
18	가양동	272	29	도로	7	7	-	7	국토해양부
19	가양동	272	30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20	가양동	279	7	도로	13	13	-	13	국토해양부
21	가양동	280	4	도로	17	17	17	-	국토해양부
22	가양동	281	5	도로	76	76	76	-	국토해양부
23	가양동	283	2	도로	10	10	5	5	국토해양부
24	가양동	283	3	도로	73	73	23	50	국토해양부
25	가양동	284	1	대	23	23	23	-	국토해양부
26	가양동	422	61	도로	9,263	9,263	2,763	6,500	국토해양부
27	가양동	422	83	도로	10	10	10	-	국토해양부
28	가양동	422	84	도로	138	138	138	-	국토해양부
29	가양동	422	85	도로	63	63	63	-	국토해양부
30	가양동	422	88	도로	6,438	6,438	4,483	1,955	국토해양부
31	가양동	460		도로	628	628	394	234	국토해양부
32	가양동	469		도로	1,028	1,028	1,028	-	국토해양부
33	가양동	488		도로	10	10	10	-	국토해양부
34	가양동	489		도로	3	3	3	-	국토해양부
35	가양동	491		도로	76	76	76	-	국토해양부
36	가양동	492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37	가양동	494		도로	6,777	6,777	6,777	-	국토해양부
38	가양동	512		도로	20	20	20	-	국토해양부
39	가양동	517		도로	255	255	255	-	국토해양부
40	가양동	524		도로	10	10	10	-	국토해양부
41	가양동	526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42	가양동	571	1	도로	220	220	220	-	국토해양부
43	가양동	571	2	도로	465	465	465	-	국토해양부
44	가양동	571	3	도로	6	6	6	-	국토해양부
45	가양동	571	4	도로	5,214	5,214	5,214	-	국토해양부
46	가양동	571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47	가양동	802		도로	3,872	3,872	3,872	-	국토해양부
48	가양동	803		도로	116	116	116	-	국토해양부
49	가양동	804		도로	60	60	60	-	국토해양부
50	가양동	814		도로	2,782	2,782	2,782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51	가양동	815		도로	46	46	46	-	국토해양부
52	가양동	840		도로	3,111	3,111	3,111	-	국토해양부
53	가양동	865		도로	3,823	3,823	3,823	-	국토해양부
54	가양동	895		도로	83	83	83	-	국토해양부
55	가양동	904		도로	49	49	49	-	국토해양부
56	가양동	909		도로	3,782	3,782	3,782	-	국토해양부
57	가양동	928	2	도로	355	355	355	-	국토해양부
58	가양동	928	3	도로	206	206	206	-	국토해양부
59	가양동	928		도로	2,376	2,376	240	2,136	국토해양부
60	가양동	935		도로	2,165	2,165	2,165	-	국토해양부
61	가양동	947		도로	479	479	479	-	국토해양부
62	가양동	971		도로	3	3	3	-	국토해양부
63	가양동	972		도로	1,892	1,892	1,892	-	국토해양부
64	공향동	4	176	도로	1,964	1,964	1,964	-	국토해양부
65	공향동	6	1	도로	959	959	959	-	국토해양부
66	공향동	6	21	도로	2,715	2,715	2,715	-	국토해양부
67	공향동	6	22	도로	1,131	1,131	1,131	-	국토해양부
68	공향동	7	3	도로	20	20	10	10	국토해양부
69	공향동	9	11	도로	139	139	72	67	국토해양부
70	공향동	9	14	도로	34	34	34	-	국토해양부
71	공향동	36	48	도로	754	754	754	-	국토해양부
72	공향동	428		도로	215	215	215	-	국토해양부
73	공향동	429		도로	132	132	132	-	국토해양부
74	공향동	430		도로	172	172	172	-	국토해양부
75	공향동	607		도로	86	86	86	-	국토해양부
76	공향동	940	5	도로	9	9	9	-	국토해양부
77	공향동	940	8	대	30	30	30	-	국토해양부
78	공향동	947	1	도로	12	12	12	-	국토해양부
79	공향동	947	2	도로	306	306	189	117	국토해양부
80	공향동	947		도로	832	832	508	324	국토해양부
81	공향동	961		답	10	10	10	-	국토해양부
82	공향동	962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83	공향동	979		도로	9,174	9,174	9,174	-	국토해양부
84	공향동	991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85	공향동	992		도로	496	496	496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86	공향동	산12	9	임야	9	9	9	-	국토해양부
87	내발산동	228	2	도로	18	18	18	-	국토해양부
88	내발산동	311	5	도로	30	30	30	-	국토해양부
89	내발산동	320	5	도로	820	820	820	-	국토해양부
90	내발산동	320	7	도로	99	99	99	-	국토해양부
91	내발산동	322	4	도로	308	308	308	-	국토해양부
92	내발산동	323	1	도로	121	121	121	-	국토해양부
93	내발산동	323	2	도로	52	52	52	-	국토해양부
94	내발산동	324	1	도로	1	1	1	-	국토해양부
95	내발산동	328	1	도로	116	116	116	-	국토해양부
96	내발산동	329	1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97	내발산동	330	3	도로	43	43	43	-	국토해양부
98	내발산동	330	5	도로	231	231	231	-	국토해양부
99	내발산동	330	6	도로	103	103	103	-	국토해양부
100	내발산동	330	8	도로	126	126	126	-	국토해양부
101	내발산동	331	8	도로	33	33	33	-	국토해양부
102	내발산동	331	10	도로	72	72	72	-	국토해양부
103	내발산동	331	11	도로	426	426	426	-	국토해양부
104	내발산동	331	13	도로	596	596	596	-	국토해양부
105	내발산동	331	21	도로	35	35	35	-	국토해양부
106	내발산동	331	22	도로	90	90	90	-	국토해양부
107	내발산동	331	29	도로	525	525	525	-	국토해양부
108	내발산동	331	31	도로	508	508	508	-	국토해양부
109	내발산동	332	3	도로	188	188	188	-	국토해양부
110	내발산동	332	4	도로	64	64	64	-	국토해양부
111	내발산동	332	6	도로	643	643	643	-	국토해양부
112	내발산동	599	1	도로	108	108	-	108	국토해양부
113	내발산동	599		도로	207	207	-	207	국토해양부
114	내발산동	609	12	도로	3,205	3,205	1,592	1,613	국토해양부
115	내발산동	609		도로	600	600	361	239	국토해양부
116	내발산동	625	4	도로	411	411	-	411	국토해양부
117	내발산동	625	5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118	내발산동	625		도로	683	683	534	149	국토해양부
119	마곡동	22	1	도로	23	23	8	15	국토해양부
120	마곡동	222	12	도로	330	330	181	149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21	마곡동	222	21	도로	24	24	20	4	국토해양부
122	마곡동	222	37	도로	76	76	76	-	국토해양부
123	마곡동	223	13	도로	139	139	71	68	국토해양부
124	마곡동	223	15	도로	3	3	-	3	국토해양부
125	마곡동	223	16	도로	913	913	678	235	국토해양부
126	마곡동	223	17	도로	3	3	-	3	국토해양부
127	마곡동	223	18	도로	248	248	248	-	국토해양부
128	마곡동	223	65	도로	442	442	381	61	국토해양부
129	마곡동	223	67	도로	97	97	-	97	국토해양부
130	마곡동	224	4	도로	56	56	56	-	국토해양부
131	마곡동	224	5	도로	10	10	10	-	국토해양부
132	마곡동	224	6	도로	582	582	504	78	국토해양부
133	마곡동	225	3	도로	45	45	-	45	국토해양부
134	마곡동	407	23	도로	13	13	13	-	국토해양부
135	마곡동	407	26	도로	497	497	392	105	국토해양부
136	마곡동	407	28	도로	262	262	262	-	국토해양부
137	마곡동	407	29	도로	6,140	6,140	6,140	-	국토해양부
138	마곡동	407	31	도로	465	465	465	-	국토해양부
139	마곡동	407	32	도로	1,237	1,237	1,237	-	국토해양부
140	마곡동	411		도로	2,506	2,506	2,506	-	국토해양부
141	방화동	758	14	도로	476	476	93	383	국토해양부
142	방화동	758	15	도로	374	374	374	-	국토해양부
143	방화동	767	29	도로	190	190	190	-	국토해양부
144	외발산동	38	4	도로	248	248	146	102	국토해양부
145	외발산동	41	5	도로	188	188	188	-	국토해양부
146	외발산동	41	6	도로	1,845	1,845	1,630	215	국토해양부
147	외발산동	42	3	도로	1,303	1,303	1,303	-	국토해양부
148	외발산동	42	8	도로	84	84	84	-	국토해양부
149	외발산동	42	9	도로	87	87	87	-	국토해양부
150	외발산동	45	4	도로	142	142	142	-	국토해양부
151	외발산동	45	5	도로	10	10	10	-	국토해양부
152	외발산동	52	3	도로	165	165	165	-	국토해양부
153	외발산동	52	6	도로	26	26	26	-	국토해양부
154	외발산동	52	7	도로	635	635	635	-	국토해양부
155	외발산동	54	4	도로	1,025	1,025	1,025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56	외발산동	56	2	도로	1,316	1,316	1,316	-	국토해양부
157	외발산동	56	4	도로	23	23	23	-	국토해양부
158	외발산동	57	1	도로	1,005	1,005	1,005	-	국토해양부
159	외발산동	57	2	도로	212	212	212	-	국토해양부
160	외발산동	57	3	도로	7	7	7	-	국토해양부
161	외발산동	58	4	도로	993	993	993	-	국토해양부
162	외발산동	58	9	도로	2	2	2	-	국토해양부
163	외발산동	59	6	도로	281	281	281	-	국토해양부
164	외발산동	77	1	도로	23	23	23	-	국토해양부
165	외발산동	301	26	도로	2,270	2,270	2,270	-	국토해양부
166	외발산동	400		도로	276	276	276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추가편입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마곡동	41	49	전	276	276	73	203	국토해양부
2	마곡동	41	101	전	50	50	46	4	국토해양부
3	마곡동	41	103	유지	12	12	9	3	국토해양부
4	마곡동	406	8	유지	5	5	5	-	국토해양부
5	마곡동	41	95	전	250	250	227	23	국토해양부
6	마곡동	41	5	전	693	693	31	662	국토해양부
7	마곡동	40	1	전	1,270	1,270	62	1,208	국토해양부
8	마곡동	41	96	답	867	867	590	277	국토해양부
9	마곡동	41	100	답	53	53	27	26	국토해양부
10	마곡동	41	99	답	437	437	300	137	국토해양부
11	마곡동	40	4	전	748	748	565	183	국토해양부
12	마곡동	49	12	잡	833	833	146	687	국토해양부
13	마곡동	49	14	잡	833	833	160	673	국토해양부
14	마곡동	49	19	잡	833	833	31	802	국토해양부
15	마곡동	49	6	잡	3,306	3,306	137	3,169	국토해양부
16	마곡동	407	19	도	7	7	7	-	국토해양부
17	마곡동	407	18	도	41	41	29	12	국토해양부
18	마곡동	407	4	도	20	20	-	20	국토해양부
19	마곡동	39	7	전	1,380	1,380	1,110	270	국토해양부
20	마곡동	39	8	전	37	37	37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21	마곡동	39	2	구	98	98	98	-	국토해양부
22	마곡동	39	6	구	255	255	255	-	국토해양부
23	마곡동	38	49	답	43	43	15	28	국토해양부
24	마곡동	38	5	구	190	190	-	190	국토해양부
25	마곡동	38	41	구	849	849	762	87	국토해양부
26	마곡동	38	42	구	38	38	38	-	국토해양부
27	마곡동	38	46	구	1	1	1	-	국토해양부
28	마곡동	38	45	구	710	710	521	189	국토해양부
29	마곡동	38	9	구	661	661	-	661	국토해양부
30	마곡동	38	43	구	298	298	66	232	국토해양부
31	마곡동	38	11	구	3	3	-	3	국토해양부
32	마곡동	50	5	답	2,349	2,349	678	1,671	국토해양부
33	마곡동	50	1	구	109	109	-	109	국토해양부
34	마곡동	31	2	구	5	5	-	5	국토해양부
35	마곡동	31	4	구	6	6	6	-	국토해양부
36	마곡동	31	1	답	26	26	15	11	국토해양부
37	마곡동	38	12	전	171	171	1	170	국토해양부
38	마곡동	38	47	전	209	209	69	140	국토해양부
39	마곡동	31	9	답	412	412	389	23	국토해양부
40	마곡동	50	13	답	87	87	10	77	국토해양부
41	마곡동	76		답	1,858	1,858	46	1,812	국토해양부
42	마곡동	72		답	1,498	1,498	-	1,498	국토해양부
43	마곡동	66	3	답	662	662	-	662	국토해양부
44	마곡동	66	1	답	293	293	-	293	국토해양부
45	마곡동	66	2	답	3,812	3,812	-	3,812	국토해양부
46	마곡동	68	5	답	958	958	-	958	국토해양부
47	마곡동	56	1	답	710	710	-	710	국토해양부
48	마곡동	56	5	답	366	366	-	366	국토해양부
49	마곡동	56	4	답	641	641	-	641	국토해양부
50	마곡동	68	2	답	612	612	-	612	국토해양부
51	마곡동	69	1	답	1,719	1,719	-	1,719	국토해양부
52	마곡동	56	23	답	123	123	-	123	국토해양부
53	마곡동	69	4	도	7	7	6	1	국토해양부
54	마곡동	56	2	유	96	96	-	96	국토해양부
55	마곡동	69	2	유	119	119	2	117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56	마곡동	55	8	제방	2	2	1	1	국토해양부
57	마곡동	69	13	잡	6	6	6	-	국토해양부
58	마곡동	55	11	제방	15	15	15	-	국토해양부
59	마곡동	56	17	답	1,676	1,676	-	1,676	국토해양부
60	마곡동	56	22	답	4,745	4,745	-	4,745	국토해양부
61	마곡동	68	6	답	1,323	1,323	16	1,307	국토해양부
62	마곡동	68	11	답	1,315	1,315	-	1,315	국토해양부
63	마곡동	66	5	답	596	596	-	596	국토해양부
64	마곡동	68	8	답	662	662	8	654	국토해양부
65	마곡동	68	7	답	659	659	8	651	국토해양부
66	마곡동	68	1	답	996	996	13	983	국토해양부
67	마곡동	68	9	답	9	9	9	-	국토해양부
68	마곡동	68	10	답	2	2	2	-	국토해양부
69	마곡동	73	12	답	2	2	-	2	국토해양부
70	마곡동	63	5	답	13	13	13	-	국토해양부
71	마곡동	60	10	답	18	18	18	-	국토해양부
72	마곡동	67	2	제방	33	33	33	-	국토해양부
73	마곡동	67	3	제방	7	7	7	-	국토해양부
74	마곡동	230	7	제방	375	375	375	-	국토해양부
75	마곡동	230	2	제방	5	5	5	-	국토해양부
76	마곡동	229	2	제방	625	625	625	-	국토해양부
77	마곡동	229	5	제방	40	40	40	-	국토해양부
78	마곡동	228	5	제방	212	212	212	-	국토해양부
79	마곡동	228	2	제방	149	149	149	-	국토해양부
80	마곡동	55	12	제방	3,025	3,025	3,025		국토해양부
81	마곡동	61	5	답	169	169	169	-	국토해양부
82	마곡동	168	6	도	76	76	76	-	국토해양부
83	마곡동	55	5	제방	560	560	560	-	국토해양부
84	마곡동	228	8	제방	69	69	69	-	국토해양부
85	마곡동	229	1	제방	78	78	78	-	국토해양부
86	마곡동	230	1	제방	329	329	329	-	국토해양부
87	마곡동	233	1	제방	89	89	89	-	국토해양부
88	마곡동	52	9	제방	132	132	132	-	국토해양부
89	마곡동	50	3	제방	26	26	26	-	국토해양부
90	마곡동	50	27	제방	82	82	82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91	마곡동	50	26	제방	12	12	12	-	국토해양부
92	마곡동	50	4	제방	443	443	443	-	국토해양부
93	마곡동	69	21	도	20	20	20	-	국토해양부
94	마곡동	55	6	제방	114	114	114	-	국토해양부
95	마곡동	55	13	제방	3	3	3	-	국토해양부
96	마곡동	55	3	제방	363	363	290	73	국토해양부
97	마곡동	55	1	제방	94	94	94	-	국토해양부
98	마곡동	55	4	제방	356	356	356	-	국토해양부
99	마곡동	55	14	제방	4,617	4,617	4,617	-	국토해양부
100	마곡동	20	1	제방	1,560	1,560	1,560	-	국토해양부
101	마곡동	27	14	도	20	20	20	-	국토해양부
102	마곡동	22	5	도	66	66	66	-	국토해양부
103	마곡동	21	2	도	40	40	40	-	국토해양부
104	마곡동	21	1	도	182	182	182	-	국토해양부
105	마곡동	17	14	제방	18	18	18	-	국토해양부
106	마곡동	18	5	도	83	83	83	-	국토해양부
107	마곡동	16	4	제방	104	104	104	-	국토해양부
108	가양동	258	5	제방	44	44	44	-	국토해양부
109	가양동	259	6	제방	149	149	149	-	국토해양부
110	가양동	422	86	도	66	66	66	-	국토해양부
111	가양동	272	22	도	820	820	820	-	국토해양부
112	가양동	258	3	유	1,863	1,863	1,424	439	국토해양부
113	가양동	259	27	유	1	1	1	-	국토해양부
114	마곡동	32	17	유	12,076	12,076	10,408	1,668	국토해양부
115	마곡동	19	4	유	45	45	45	-	국토해양부
116	마곡동	19	6	유	19	19	19	-	국토해양부
117	마곡동	17	17	유	1	1	1	-	국토해양부
118	마곡동	20	3	유	17,460	17,460	17,460	-	국토해양부
119	마곡동	35	8	유	5,141	5,141	5,141	-	국토해양부
120	마곡동	32	9	유	2,483	2,483	2,483	-	국토해양부
121	마곡동	28	4	유	2,890	2,890	2,890	-	국토해양부
122	마곡동	29	1	답	89	89	89	-	국토해양부
123	마곡동	30	1	유	717	717	717	-	국토해양부
124	마곡동	32	16	유	5,619	5,619	5,619	-	국토해양부
125	마곡동	37	11	유	5	5	5	-	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26	마곡동	1	3	유	35	35	35	-	국토해양부
127	마곡동	406	1	유	16,535	16,535	13,820	2,715	국토해양부
128	마곡동	1	2	유	2	2	-	2	국토해양부
129	마곡동	41	86	유	269	269	263	6	국토해양부
130	마곡동	407		도	3,151	3,151	209	2,942	국토해양부
131	마곡동	407	30	도	3,592	3,592	3,341	251	국토해양부
132	마곡동	407	24	도	1,885	1,885	1,337	548	국토해양부
133	마곡동	73	11	답	2,491	2,491	-	2,491	국토해양부
134	마곡동	50	20	유	6,455	6,455	6,455	-	국토해양부
135	마곡동	50	6	유	46	46	46	-	국토해양부
136	마곡동	50	28	유	850	850	474	376	국토해양부
137	마곡동	407	3	유	436	436	436	-	국토해양부
138	마곡동	69	20	유	1,222	1,222	1,222	-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마곡동	290	1	구거	10	10	10	-	농림수산식품부
2	가양동	368	3	답	50	50	-	50	농림수산식품부
3	공항동	1221		답	19	19	-	19	농림수산식품부

- 국방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공항동	6	3	답	157	157	-	157	국방부
2	공항동	6	16	답	58	58	-	58	국방부
3	공항동	36	15	도로	486	486	486	-	국방부
4	공항동	36	20	잡종지	609	609	-	609	국방부
5	공항동	36	23	잡종지	2,349	2,349	-	2,349	국방부
6	공항동	36	24	답	2,472	2,472	-	2,472	국방부
7	공항동	36	25	잡종지	2,748	2,748	-	2,748	국방부
8	공항동	37	1	대	4,155	4,155	-	4,155	국방부
9	공항동	165		임야	180	180	-	180	국방부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795		공원	36	36	36	-	기획재정부
2	가양동	262	0	묘지	109	109	-	109	기획재정부
3	공향동	6	17	답	16	16	-	16	기획재정부
4	공향동	940	3	대	33	33	-	33	기획재정부
5	공향동	940	6	대	7	7	-	7	기획재정부
6	방화동	226	8	답	538	538	-	538	기획재정부
7	가양동	378	2	답	4,073	4,073	-	4,073	기획재정부
8	가양동	394	0	묘지	350	350	-	350	기획재정부
9	공향동	4	4	전	3	3	-	3	기획재정부
10	공향동	4	177	잡종지	2,256	2,256	-	2,256	기획재정부
11	공향동	4	178	잡종지	1,095	1,095	-	1,095	기획재정부
12	공향동	6	6	답	27	27	-	27	기획재정부
13	공향동	940	9	대	80	80	-	80	기획재정부
14	공향동	940	10	대	7	7	-	7	기획재정부
15	공향동	940	11	대	1	1	-	1	기획재정부
16	공향동	940	14	대	1	1	-	1	기획재정부
17	공향동	1148	1	답	4,309	4,309	-	4,309	기획재정부
18	공향동	1148	3	답	90	90	-	90	기획재정부
19	공향동	1311	0	답	859	859	-	859	기획재정부
20	공향동	1311	2	답	47	47	-	47	기획재정부
21	공향동	산142	0	임야	1,686	1,686	-	1,686	기획재정부
22	마곡동	25	5	답	99	99	-	99	기획재정부
23	마곡동	230	3	답	2,731	2,731	-	2,731	기획재정부
24	마곡동	230	4	답	17	17	-	17	기획재정부
25	마곡동	230	5	답	833	833	-	833	기획재정부
26	마곡동	230	8	답	244	244	-	244	기획재정부
27	마곡동	245	4	답	3,124	3,124	-	3,124	기획재정부
28	마곡동	385	4	답	1,963	1,963	-	1,963	기획재정부

- 강서구(토목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가양동	159	8	도로	304	304	304	-	강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2	가양동	259	10	도로	56	56	16	-	강서구
3	가양동	280	1	도로	17	17	17	-	강서구
4	가양동	281	2	도로	36	36	22	14	강서구
5	가양동	281	4	도로	17	17	4	13	강서구
6	가양동	281	8	도로	86	86	71	15	강서구
7	가양동	145 4	16	도로	337.1	337.1	337.1		강서구
8	가양동	145 4		도로	135.3	135.3	135.3	-	강서구
9	공향동	4	169	도로	1,355	1,355	1,355	-	강서구
10	공향동	4	183	도로	648	648	648	-	강서구
11	공향동	136 9	15	도로	6.1	6.1	6.1	-	강서구
12	내발산동	603	2	도로	831	831	-	831	강서구
13	내발산동	603		도로	241	241	-	241	강서구
14	마곡동	324	8	도로	269	269	237	32	강서구
15	마곡동	324	14	도로	51	51	33	18	강서구
16	마곡동	327	66	도로	36	36	25	11	강서구
17	마곡동	327	101	도로	1	1	1	-	강서구
18	마곡동	327	102	도로	7	7	7	-	강서구
19	마곡동	327	103	도로	1,073	1,073	1,073	-	강서구
20	마곡동	332	1	도로	370	370	361	9	강서구
21	마곡동	335	4	도로	184	184	133	51	강서구
22	마곡동	359	19	도로	20	20	20	-	강서구
23	마곡동	425	1	도로	25.5	25.5	25.5	-	강서구
24	마곡동	425	2	도로	6.6	6.6	6.6	-	강서구
25	방화동	183	7	도로	151	151	142	9	강서구
26	방화동	186	21	도로	36	36	36	-	강서구
27	방화동	186	32	답	40	40	13	27	강서구
28	방화동	210	8	도로	7	7	7	-	강서구
29	방화동	211	11	도로	6	6	6	-	강서구
30	방화동	215	1	도로	10	10	10	-	강서구
31	방화동	216	3	도로	2	2	2	-	강서구
32	방화동	217	219	학교용지	4	4	4	-	강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33	방화동	217	255	잡종지	29	29	29	-	강서구
34	방화동	217	256	도로	541	541	541	-	강서구
35	방화동	217	257	잡종지	43	43	-	43	강서구
36	방화동	217	258	도로	216	216	216	-	강서구
37	방화동	220	1	도로	712	712	712	-	강서구
38	방화동	233	6	도로	68	68	68	-	강서구
39	방화동	240	4	도로	122	122	122	-	강서구
40	방화동	257	25	도로	792	792	792	-	강서구

- 강서구(치수방재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공향동	706	2	답	285	285	285	-	강서구
2	공향동	706	3	답	39	39	39	-	강서구
3	공향동	706	6	유지	5	5	5	-	강서구
4	공향동	706	7	답	520	520	28	492	강서구
5	공향동	706	9	유지	452	452	452	-	강서구
6	공향동	706	10	유지	412	412	412	-	강서구
7	공향동	707	3	구거	100	100	100	-	강서구
8	내발산동	607		하천	5,484	5,484	4,514	970	강서구
9	마곡동	25	8	구거	2	2	-	2	강서구
10	마곡동	25	13	구거	120	120	120	-	강서구
11	마곡동	25	14	구거	242	242	-	242	강서구
12	마곡동	50	10	제방	69	69	-	69	강서구
13	마곡동	50	33	제방	40	40	40	-	강서구

- 강서구(공원녹지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내발산동	202	18	공원	179	179	179	-	강서구

- 강서구(추가편입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보상 면적(㎡)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본번	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마곡동	50	16	구	991	991	86	905	강서구
2	마곡동	18	6	도	588	588	588	-	강서구
3	마곡동	2	20	장	2	2	2	-	강서구
4	마곡동	2	21	장	1	1	1	-	강서구
5	마곡동	41	6	유	169	169	169	-	강서구
6	마곡동	50	11	잡	191	191	95	96	강서구
7	마곡동	50	30	유	550	550	215	335	강서구
8	마곡동	50	25	유	641	641	641	-	강서구

6)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일반산업단지 지정】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마곡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 면 적 : 1,112,515㎡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07년 ~ 2012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마) 주요 유치업종

- 핵심 유치산업
 - GT, BT, IT 3개 업종에 대해 각 10%이상 입주토록 의무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융합녹색기술을 위주로 4개업종(GT·BT·NT·IT) 기업들의 분양시점 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항목 중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내용과 동일함」

사)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항목 중 사.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동일함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가) 산업단지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다) 산업단지의 목적 및 개요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 산업단지의 면적 : 1,112,515㎡

마) 사업시행기간

- 개발기간 : 2007년 ~ 2012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항목 중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일함

3.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관계도면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4.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 02) 6361-3519)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4)
- SH공사 마곡사업단 (☎ 02) 3410-7389)

5.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 실시계획변경을 위해 관할구청(강서구) 사전 경유시『워터프론트 사업시행은 강서구 진단의견이 나올때까지 보류토록 요청』하는 “조건부 경유” 의견이 제시되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련 기관(부서) 협의시 강서구 제시의견을 참언하여 협의 하였던 사항으로써
금번 실시계획변경인가는 공동주택건설과 산업단지조성 등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하여 우선 인가하는 사항이므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관련(부서)등과 협의후 반영(변경)하여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
- 금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그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
- 사업완료후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804	기정	마곡동	407	-	29	도로	6,173	6,17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07	-	29	도로	6,140	6,140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966	기정	가양동	262			묘지	109	109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가양동	262			묘지	109	-	국(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1,385	기정	가양동	434			하천	64,845	64,845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가양동	434			하천	64,845	-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1,996	기정	공항동	2	-	104	도로	8,863	206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공항동	2	-	104	도로	8,657	-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2	-	106	도로	205	205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2	-	107	도로	1	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2,320	기정	공항동	1,044			답	1	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공항동	1,044			답	1	1	미등기		
2,595	기정	공항동	1,301			도로	33	33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공항동	1,301			도로	33	33	미등기		
3482	기정	마곡동	17	-	5	임야	40	40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17	-	5	도로	40	40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412	기정	마곡동	29	-	1	답	89	89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29	-	1	답	89	89	미등기		
3,414	기정	마곡동	30	-	7	답	51	51	김춘자	용산구청파동1가89-80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0	-	7	답	51	51	미등기		
3,415	기정	마곡동	30	-	8	답	1,498	1,498	김춘자	용산구청파동1가89-80	
									정말선	속초시청학동482-6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0	-	8	답	1,498	1,498	미등기		
3,416	기정	마곡동	30	-	9	답	58	58	김춘자	용산구청파동1가89-80	
									정말선	속초시청학동482-6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0	-	9	답	58	58	미등기		
3,425	기정	마곡동	32	-	11	답	1,564	1,564	김삼진	서초구방배동754-2	
									정광서	강남구대치동511미도아파트211동107호	
									이종환	동작구노량진동225-188	
									강현구	서초구방배동428-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2	-	11	답	1,564	1,564	미등기		
3,426	기정	마곡동	32	-	12	답	1,542	1,542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2	-	12	답	1,542	1,542	미등기		
3,427	기정	마곡동	32	-	13	구거	43	4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2	-	13	구거	43	43	미등기		
3,433	기정	마곡동	35	-	5	답	14	14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5	-	5	답	14	14	미등기		
3,439	기정	마곡동	37	-	9	대	50	50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7	-	9	대	50	50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443	기정	마곡동	37	-	17	대	195	195	배철홍	양천구목동911목동신시가 지아파트601-504	
	변경	마곡동	37	-	17	대	195	195	미등기		
3,444	기정	마곡동	38	-	1	답	3,213	3,21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나정자	강서구방화동538-5정우연립 307	
	변경	마곡동	38	-	1	전	3,213	3,213	미등기		
3,445	기정	마곡동	38	-	2	구거	10	10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2	구거	10	10	미등기		
3,448	기정	마곡동	38	-	6	전	2,136	2,136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마곡동	38	-	6	전	2,136	2,136	미등기		
3,450	기정	마곡동	38	-	8	구거	15	15	김도형	노원구하계동56-13	
									김혜경	용인군용인읍역곡리산8군인 아파트12동103호	
									윤노미	은평구수색동189-22	
									박근무	양천구목동925목동신시가 지아파트702-70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8	구거	15	15	미등기		
3,452	기정	마곡동	38	-	10	답	314	314	김주열	도봉구쌍문동494-3	
									곽대순	강동구성내동174-71	
									박명준	구로구개봉동325-6	
	변경	마곡동	38	-	10	답	314	314	미등기		
3,455	기정	마곡동	38	-	13	답	302	302	강호영	수원시장안구천천동330주공 아파트166-506	
									이영돌	강서구공항동50	
									이봉교	안양시동안구평촌동899향 촌아파트308-505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455	기정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13	답	302	302	미등기		
3,457	기정	마곡동	38	-	15	답	1,973	1,973	안중광	동대문구이문동87-89	
									김갑수	고양군원당읍성사리715주공 아파트223동202호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마곡동	38	-	15	답	1,973	1,973	미등기		
3,459	기정	마곡동	38	-	17	답	167	167	이정열	광명시광명동366-16	
									김원섭	용산구한강로2가161-9	
									배봉자	강서구화곡동981-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17	답	167	167	미등기		
3,460	기정	마곡동	38	-	18	구거	205	205	김영식	서초구내곡동1-1006	
									정재명	성동구중곡동122-18	
	변경	마곡동	38	-	18	구거	205	205	미등기		
3,461	기정	마곡동	38	-	21	구거	341	34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21	구거	341	341	미등기		
3,463	기정	마곡동	38	-	24	답	2	2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24	답	2	2	미등기		
3,464	기정	마곡동	38	-	25	전	106	106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25	전	106	106	미등기		
3,465	기정	마곡동	38	-	26	답	43	43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26	답	43	43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466	기정	마곡동	38	-	27	전	60	60	전성은		
	변경	마곡동	38	-	27	전	60	60	미등기		
3,469	기정	마곡동	38	-	39	구거	50	50	전성은		
	변경	마곡동	38	-	39	구거	50	50	미등기		
3,474	기정	마곡동	38	-	44	구거	621	621	김도형	노원구하계동56-13	
									김혜경	용인군용인읍역곡리산8군인 아파트12동103호	
									김성호	양천구목동525-13	
									김국태	구로구개봉동175-8전실아 파트1506호	
									윤노미	은평구수색동189-22	
									정채경	송파구방이동89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318-1105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38	-	44	구거	621	621	미등기		
3,478	기정	마곡동	38	-	48	답	1,106	1,106	김광재		
	변경	마곡동	38	-	48	답	1,106	1,106	미등기		
3,480	기정	마곡동	38	-	50	답	1,322	1,322	이만수		
	변경	마곡동	38	-	50	답	1,322	1,322	미등기		
3,497	기정	마곡동	41	-	47	전	986	507	차동진	양천구신정동326목동아파트 1204동506호	
									이덕영	양천구신정동1029-1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3,518	변경	마곡동	41	-	47	전	986	507	미등기		
	기정	마곡동	44			답	3,438	9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4			답	3,438	9	미등기		
3,521	기정	마곡동	45	-	3	답	1,898	1,887	윤창섭	마포구서교동367-28	
									조경순	강남구역삼동813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5	-	3	답	1,898	1,887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522	기정	마곡동	45	-	4	답	3,088	3,021	김귀운	강서구마곡동5번지	
									김영철	강서구마곡동5번지	
									최정우	중구장충동2가193-111	
									이락구	강남구압구정동298한신아파트102-905	
									박상덕	강동구성내3동412-2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마곡동	45	-	4	답	3,088	3,021	미등기		
3,525	기정	마곡동	46			답	522	522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6			답	522	522	미등기		
3,527	기정	마곡동	48	-	1	답	5,035	5,017	양영자	은평구역촌동31-13	
									이필유	충북괴산군증평읍증평리935-28태양맨션13-206	
									최의소	중랑구면목동390-6	
									박기호	서초구잠원동14-6	
									최길환	중랑구목동121-20	
									권혁희	청주시사창동282-1주성아파트8-103	
									최수경	강남구압구정동230-5	
									황정연	용산구영산동3가1-68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8	-	1	답	5,035	5,017	미등기		
3,530	기정	마곡동	49	-	1	잡	813	81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	잡	813	813	미등기		
3,531	기정	마곡동	49	-	2	답	1,825	1,825	유철관	도봉구방학동498-29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2	답	1,825	1,825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536	기정	마곡동	49	-	8	답	992	963	이태규	강남구논현동105동현아파트5동209호	
	변경	마곡동	49	-	8	답	992	963	미등기		
3,538	기정	마곡동	49	-	10	답	1,098	1,098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0	답	1,098	1,098	미등기		
3,539	기정	마곡동	49	-	11	잡	833	83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1	잡	833	833	미등기		
3,541	기정	마곡동	49	-	13	잡	833	833	임재한	양천구신정동313목동신시가 지아파트906-808	
									정영진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201-3 공신주택가동207호	
									권오한	경북예천군예천읍통울리501	
	변경	마곡동	49	-	13	잡	833	833	미등기		
3,543	기정	마곡동	49	-	15	잡	833	83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5	잡	833	833	미등기		
3,544	기정	마곡동	49	-	16	잡	833	83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6	잡	833	833	미등기		
3,545	기정	마곡동	49	-	17	잡	833	833	이안수	송파구문정동452-20	
	변경	마곡동	49	-	17	잡	833	833	미등기		
3,546	기정	마곡동	49	-	18	잡	833	83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49	-	18	잡	833	833	미등기		
3,548	기정	마곡동	49	-	20	잡	20	20	송일섭	서초구반포동2-1신반포아파트5-305	
	변경	마곡동	49	-	20	잡	20	20	미등기		
3,529	기정	마곡동	49			답	992	267	이현조	강남구논현동105동현아파트5동302호	
	변경	마곡동	49			답	992	267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557	기정	마곡동	50	-	12	답	2,013	2,013	정정영	성동구행당동128-59	
									최현순	중구신당동838-3동화주택3 동302	
									양승공	종로구창신동611-15	
									문양빈	강동구고덕동307공무원아 파트809-207	
									임미자	강남구일원동657-5	
									정진향	노원구상계동685보람아파 트107-1112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3,586	변경	마곡동	50	-	12	답	2,013	2,013	미등기		
	기정	마곡동	56	-	16	유지	873	87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3,588	변경	마곡동	56	-	16	유지	873	873	미등기		
	기정	마곡동	56	-	18	답	3	3	유용담	송파구문정동150혜밀리아파 트204동702호	
3,591	변경	마곡동	56	-	18	답	3	3	미등기		
	기정	마곡동	57	-	1	답	856	856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3,592	변경	마곡동	57	-	1	답	856	856	미등기		
	기정	마곡동	60	-	9	답	51	51	황규삼	양천구신월동483-10성일연 립가동202호	
									유성준	안양시비산동245뉴타운아 파트9-709	
3,599	변경	마곡동	60	-	9	답	51	51	미등기		
	기정	마곡동	66	-	4	답	662	662	맹교천	양서구신월동산154-5	
3,601	변경	마곡동	66	-	4	답	662	662	미등기		
	기정	마곡동	67	-	1	답	3,512	43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67	-	1	답	3,512	43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604	기정	마곡동	67	-	4	답	29	29	이양춘	강서구방화동333	
									원이옥	도봉구월계동8457동105호	
									권이정	강서구방화동583-12	
	변경	마곡동	67	-	4	답	29	29	미등기		
3,605	기정	마곡동	67	-	5	답	1,537	1,537	이양춘	강서구방화동333	
									원이옥	도봉구월계동8457동105호	
									권이정	강서구방화동583-12	
	변경	마곡동	67	-	5	답	1,537	1,537	미등기		
3,623	기정	마곡동	69	-	18	잡	50	50	박원덕	강동구고덕동670시영아파트 3동205호	
									남순자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애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원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숙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희	강동구천호동330-19	
	변경	마곡동	69	-	18	잡	50	50	미등기		
3,624	기정	마곡동	69	-	19	잡	33	33	박원덕	강동구고덕동670시영아파트 3동205호	
									남순자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애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원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숙	강동구천호동330-19	
									박경희	강동구천호동330-19	
	변경	마곡동	69	-	19	잡	33	33	미등기		
3630	기정	마곡동	70	-	2	답	3,461	3,46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양동1	
	변경	마곡동	70	-	2	답	3,461	3,461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631	기정	마곡동	71	-	1	답	2,833	1,436	한상엽	서초구서초동1456-2보천아파트에이동102호	
									박정희	구로구독산동945-4	
									정숙영	성북구장위동219-281	
									김수자	강릉시교동941-10	
									강대성	노원구상계동720주공아파트6단지623동506호	
									양영규	서대문구홍재동61-3	
									권옥진	중구신당동432-96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71	-	1	답	2,833	1,436	미등기		
3632	기정	마곡동	71	-	2	답	1,438	1,238	안운분	김포군양동면가양리177	
									강성구	강남구반포동1092반포아파트9동806호	
									백산구	서대문구연희동181-197	
									김광래	구로구고척동162-27	
									심진섭	동작구사당동321-28	
									박진희	강서구화곡동361-1화곡아파트9-40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마곡동	71	-	2	답	1,438	1,238	미등기		
3633	기정	마곡동	71	-	3	답	2,798	2,798	김광수	구로구고척동162	
									박경희	강서구화곡동361-1화곡아파트9-401	
									심진섭	동작구사당동321-28	
									정은오	강남구신사동521-22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71	-	3	답	2,798	2,798	미등기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634	기정	마곡동	71	-	4	답	1,438	1,438	김광래	도봉구미아동111-28	
									강성구	강남구반포동1092반포아파트9동308호	
									심진섭	동작구사당동321-28	
									박창희	강서구화곡동361-1화곡아파트9-40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서울특별시	서울중구태평로1가31	
	변경	마곡동	71	-	4	답	1,438	1,438	미등기		
3635	기정	마곡동	71	-	5	답	660	98	신갈현	강남구대치동316은마아파트17동402호	
									이철수	서초구방배동432-15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71	-	5	답	660	98	미등기		
3636	기정	마곡동	71	-	6	답	660	4	정명채	마포구성산동450시영아파트20동703호	
	변경	마곡동	71	-	6	답	660	4	미등기		
3638	기정	마곡동	71	-	11	답	78	78	김동석외19	성동구성수2가532-44	
	변경	마곡동	71	-	11	답	78	78	미등기		
3639	기정	마곡동	72			답	1,498	1,498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72			답	1,498	1,498	미등기		
3640	기정	마곡동	73	-	10	답	2,364	1,357	오일교	구로구시흥동923-35	
									김만수	관악구봉천동922-11	
									송기준	관악구신림동808-117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73	-	10	답	2,364	1,357	미등기		
3645	기정	마곡동	87	-	4	전	774	52	강태규	관악구신림동409-191	
									국(국토해양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마곡동	87	-	4	전	774	52	미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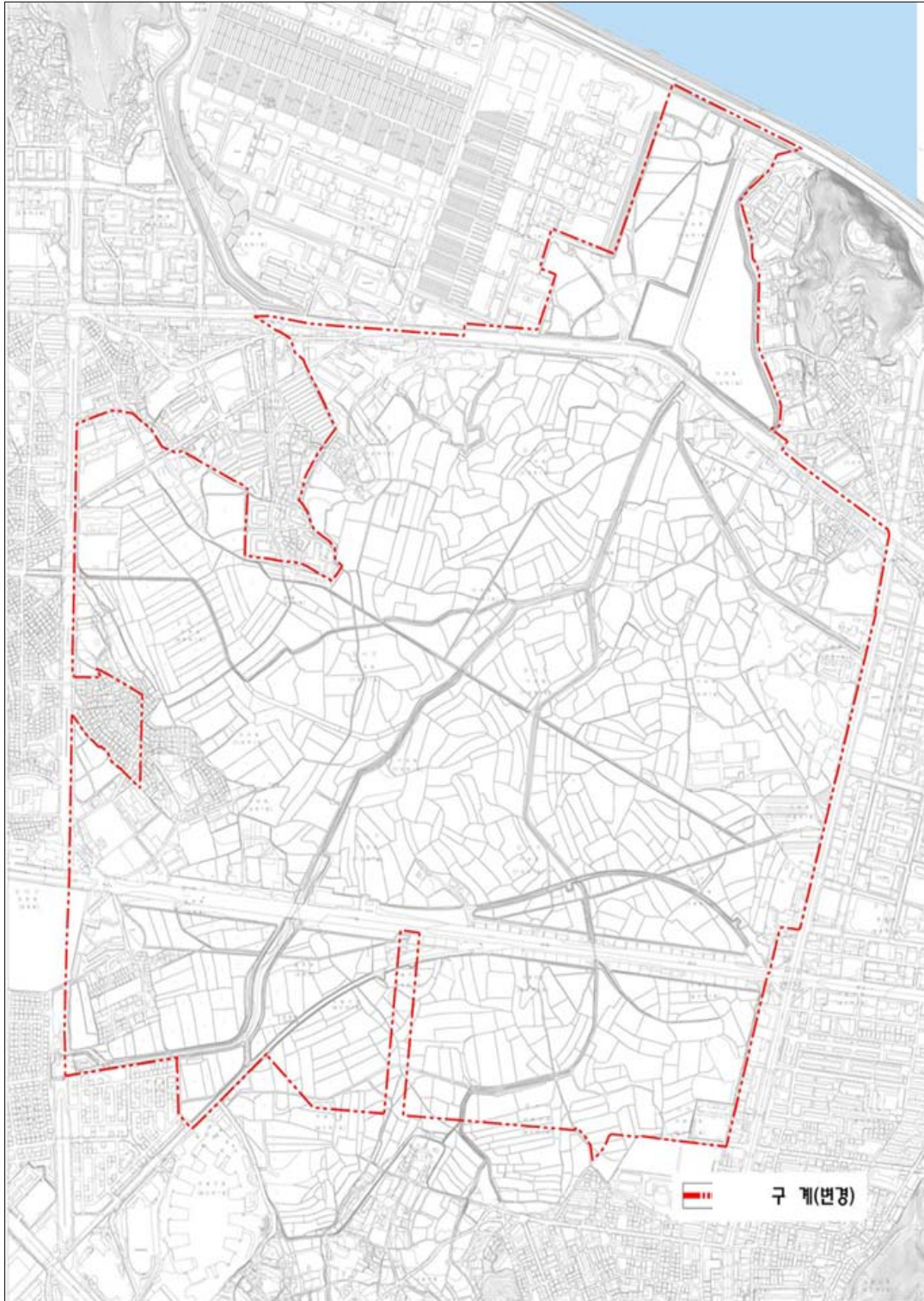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3684	신설	마곡동	31	-	10	답	3	3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85	신설	마곡동	32	-	15	유지	266	266	미등기		
3686	신설	마곡동	32	-	21	답	76	76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87	신설	마곡동	38	-	51	전	189	189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88	신설	마곡동	49	-	23	잡종지	8	8	서울특별시	서울중구덕수궁길15	
3689	신설	마곡동	49	-	24	잡종지	532	532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90	신설	마곡동	49	-	25	잡종지	29	29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91	신설	마곡동	50	-	34	제방	377	377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92	신설	마곡동	51	-	3	유지	22	22	서울특별시	서울중구덕수궁길15	
3693	신설	마곡동	56	-	24	답	1,938	1,938	미등기		
3694	신설	마곡동	407	-	20	도로	461	461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95	신설	마곡동	407	-	30	도로	3,641	3,641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3696	신설	가양동	259	-	1	구거	5	5	서울특별시	서울중구덕수궁길15	
3697	신설	가양동	422	-	86	도로	5,556	65	국(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기정	공항동	4	-	174	대	131	131	이창순	서울시강서구방화동247-171	
									정동윤	서울시강남구대치2동미도아파트207동601호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공항동	4	-	174	대	131		이창순	서울시강서구방화동247-171	지번합병
									정동윤	서울시강남구대치2동미도아파트207동601호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기정	공항동	4	-	175	잡종지	20	20	이창순	서울시강서구방화동24-171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공항동	4	-	175	잡종지	20		이창순	서울시강서구방화동24-171	지번합병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기정	공항동	5	-	118	학교 용지	1,046	1,046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공항동	5	-	118	학교 용지	1,046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지번합병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기정	방화동	184	-	51	전	60	8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방화동	184	-	51	전	60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지번합병
	기정	방화동	184	-	58	답	53	48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방화동	184	-	58	답	53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지번합병
	기정	방화동	217	-	259	대	61	61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방화동	217	-	259	대	61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지번합병
	기정	방화동	217	-	260	대	44	44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변경	방화동	217	-	260	대	44		서울시강서구	서울강서구화곡로153	지번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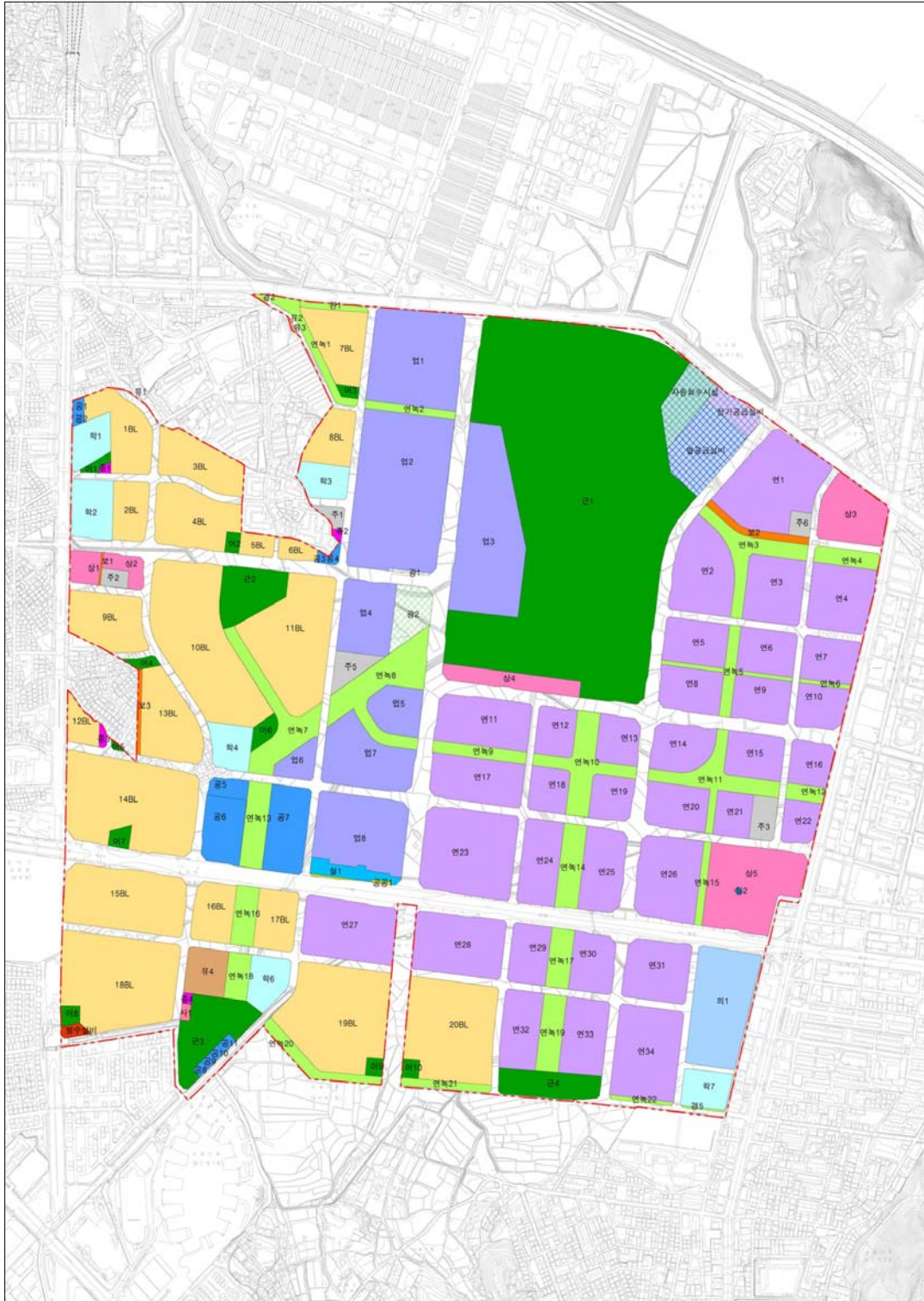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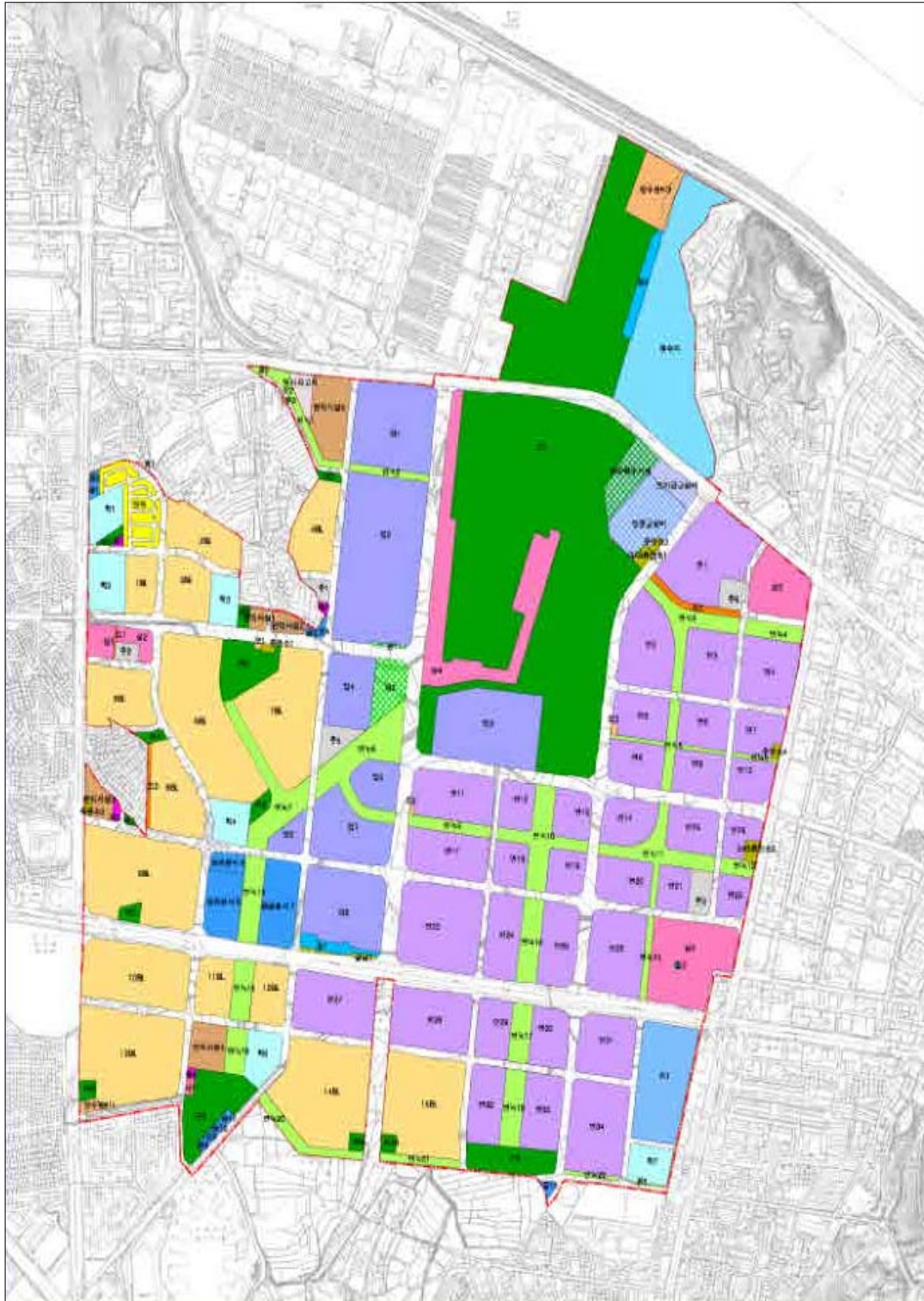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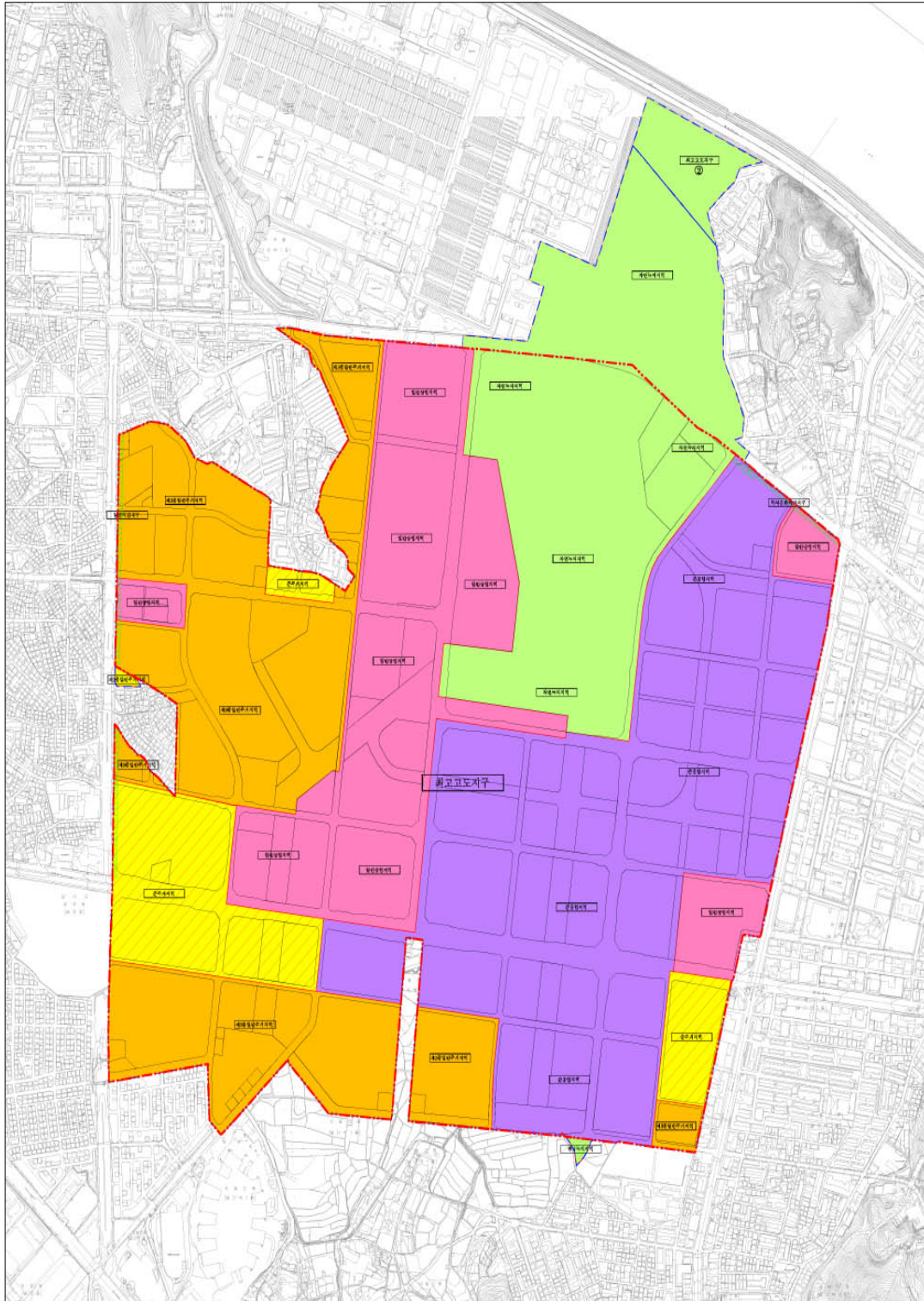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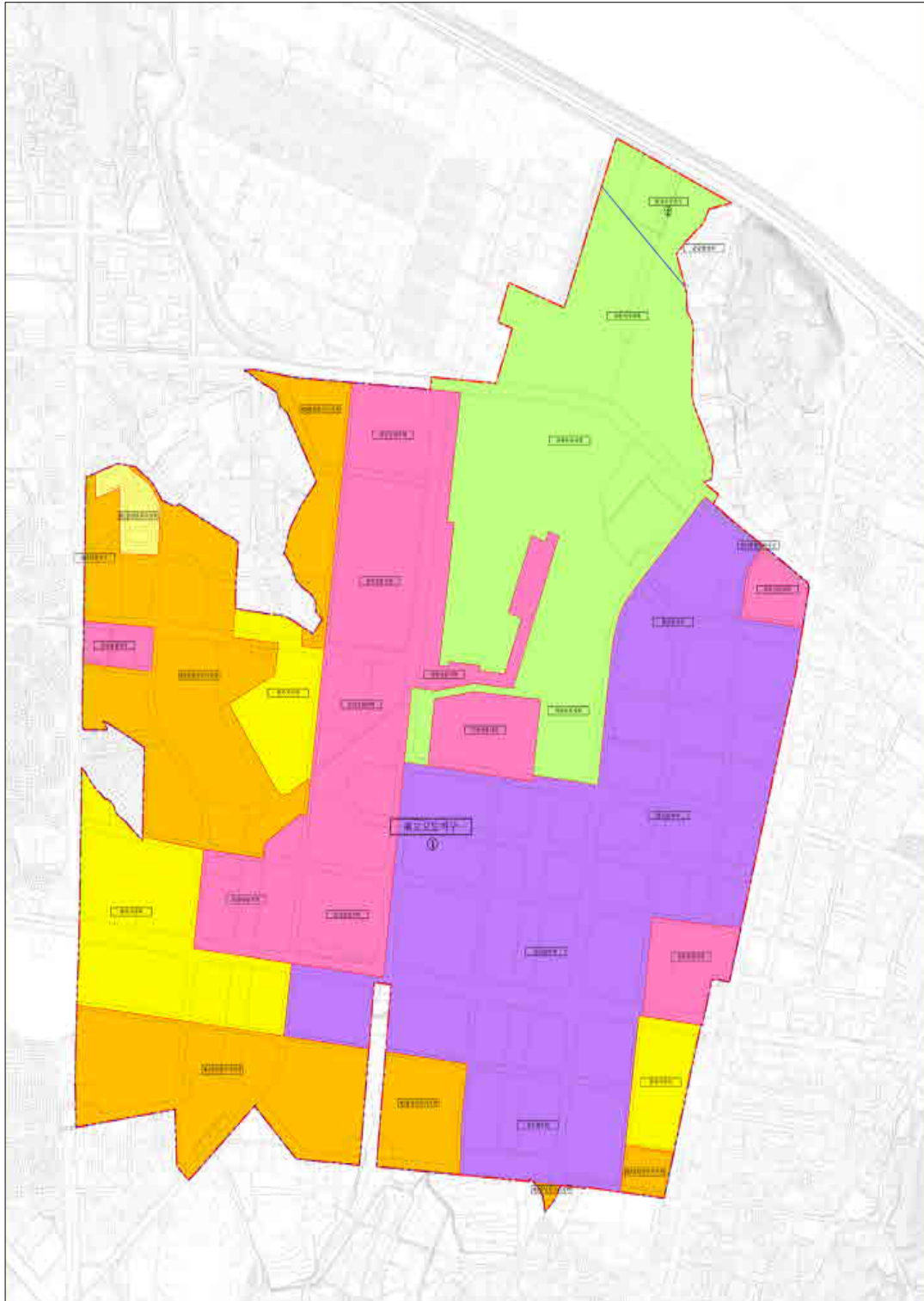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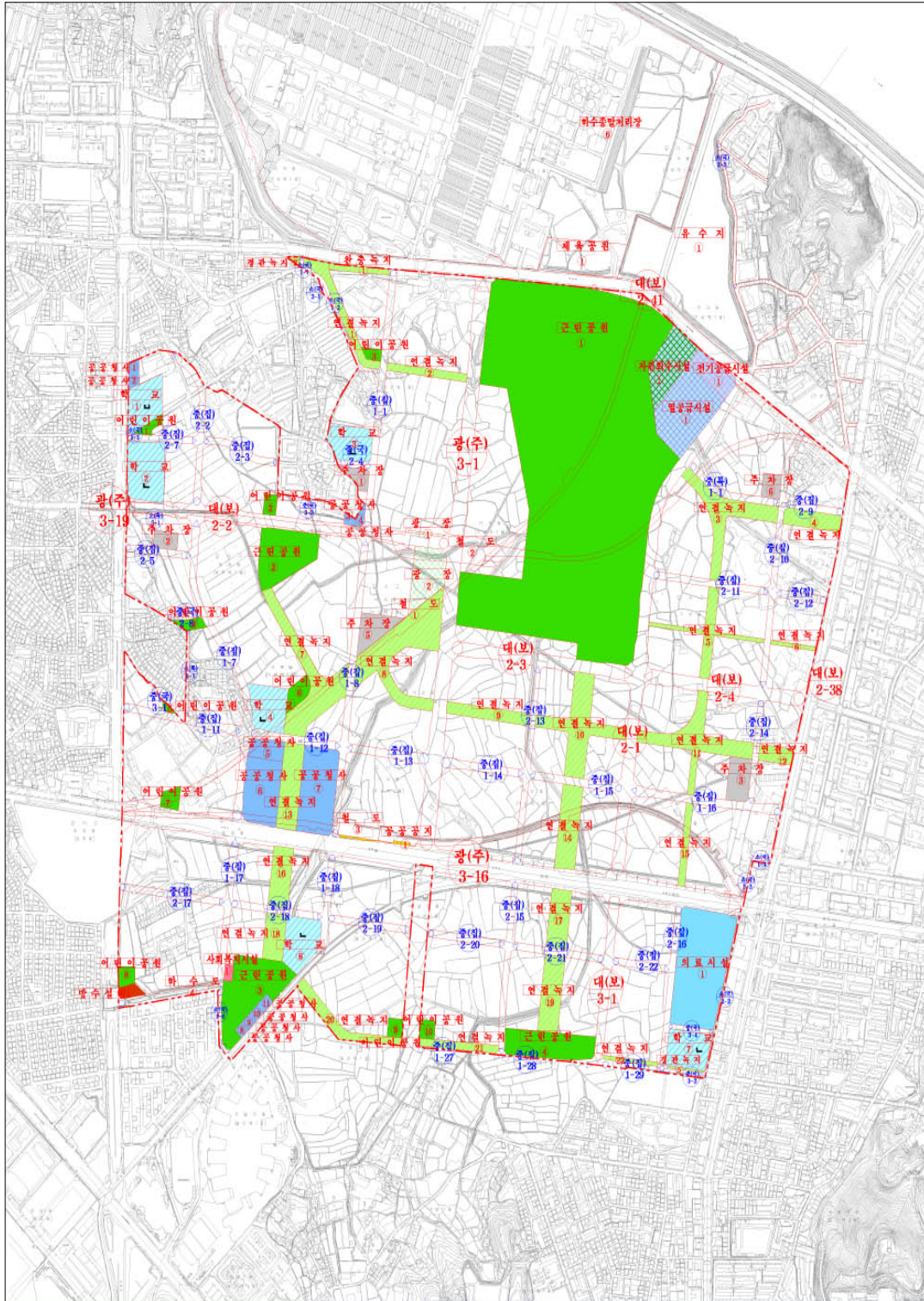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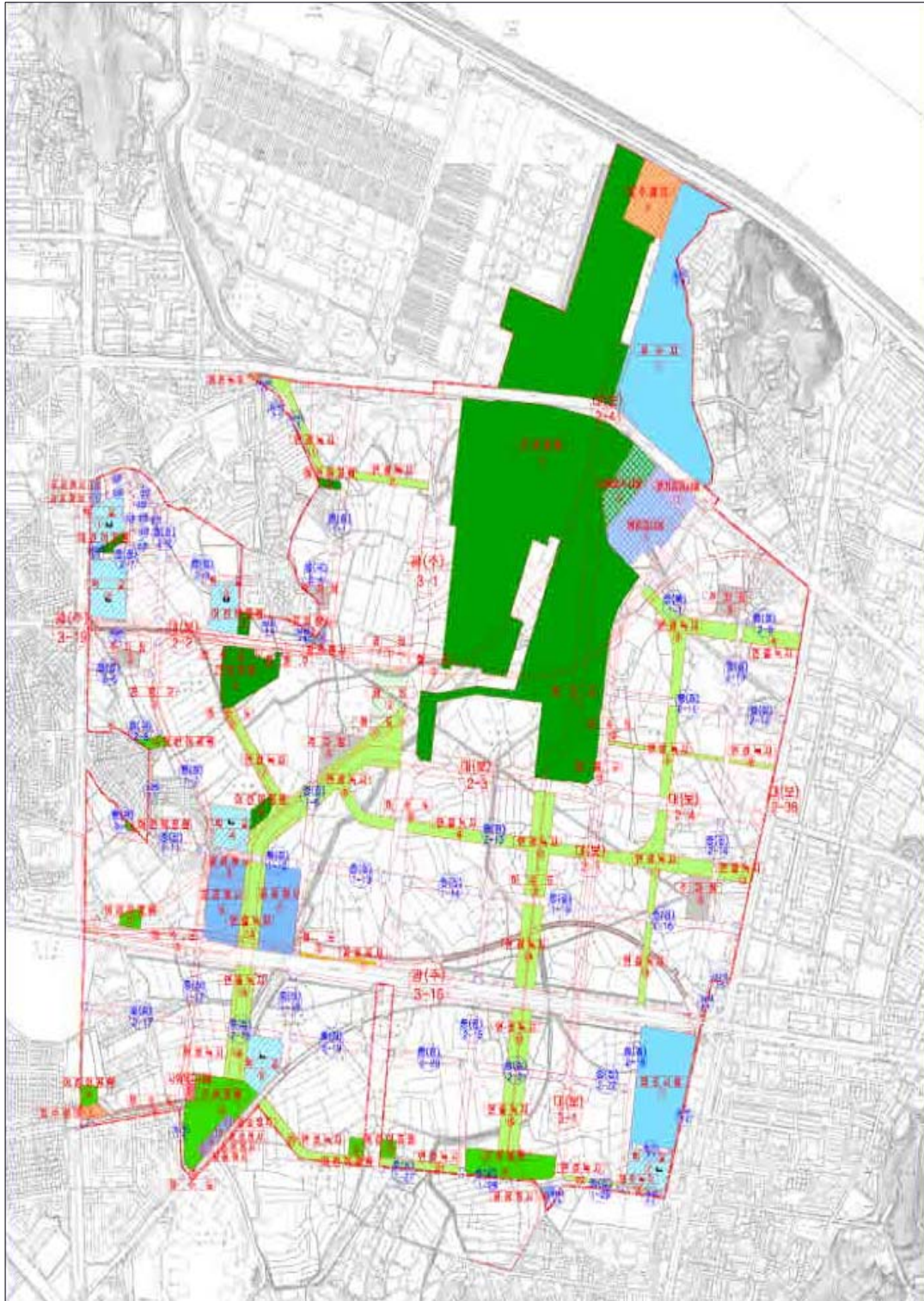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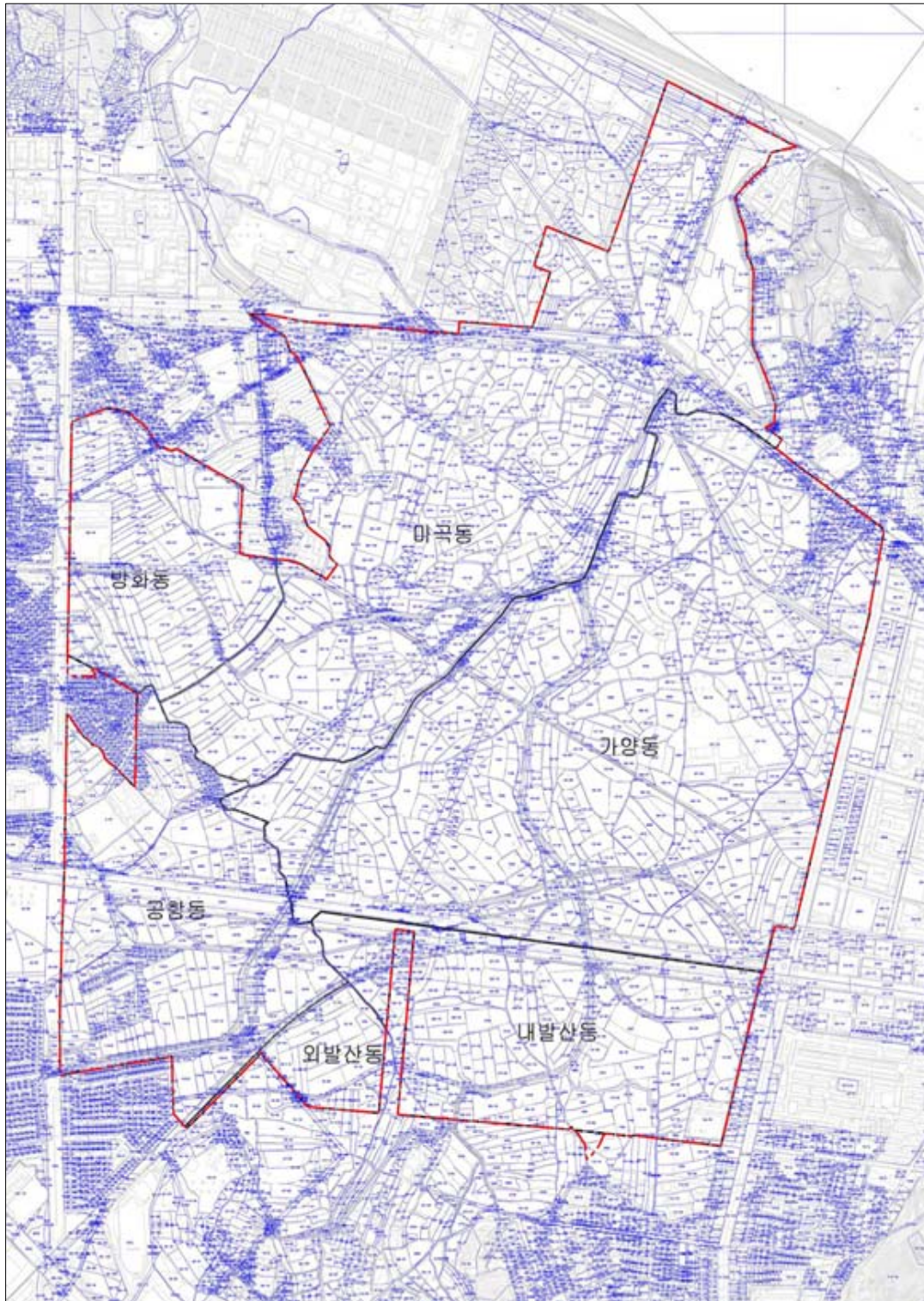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0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공고 등의 내용)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사업개요(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포함)

제11조(현장설명회)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 또는 기본계획 현황 등)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1호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건립예정세대수를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토지 등소유자수의 150%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의 정비계획을 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의 정비계획도서를 정비기본계획도서로 한다.

[별표1] 설계자 자격심사 기준 중 Ⅳ. 설계 우수자의 결정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구역지정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건립예정 세대수를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토

지등소유자수의 150%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2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3호(2009.0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18호(2009.12.17)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1호(2010.08.19)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34호(2010.09.02)로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된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 내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회현동1가 산 1-19 외 1필(중구 예장동 산5-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
3. 사업의 내용
 -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 2동
 - 건축면적 : 1,453.45㎡(연면적 3,063.45㎡)
 - 하부승강장 : 973.58㎡(연면적 2,094.5㎡) /지상5층
(건축면적 증 269.08㎡, 연면적 증 734.79㎡/지상 1~3층 증축)
 - 상부승강장 : 479.87㎡(연면적 986.85㎡)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증 96.2㎡, 연면적 증 102.86㎡ / 지상 1~2층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사장 한광수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산 1-19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0. 12. 31일까지
6. 변경내용 :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건축연면적 변경
 -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 건축연면적(당초 2,094.50㎡, 변경 2,092.83㎡)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02-3783-59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71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업 종	등록 일자
서울E-2-394 서울S-2-360	(주)초콜리트더하기	박한제	강남구 논현동 175-8	110111- 4338954	전문설계업1종 전문감리업	2010.09.16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산업지원담당관(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7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기간	모 집 지 역	모집방법
제2010- 28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3-1	제3세계 국가 전쟁피해자 지원	2억원 (현금, 물품)	2010. 9.17. ~ 2010.12.31.	전 국	자선걷기행사, 온/오프라인 모금함 설치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02-731-622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79호

서울특별시 수해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소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해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용자지원규모 : 총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2. 용자대상
서울시소재 중소기업으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
3. 용자제한
 - 1)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2) 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도 수해관련 보증 기 수혜업체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우리시 업체 지원한도까지는 추가지원 가능
 - 3)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4. 용자조건 및 한도
 - 경영안정자금 : 연리 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억원이내
5.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완화
 - 1) 신용보증 및 자금용자 동시 접수(용자추천은 신용보증심사수준으로 처리)
 - 2) 신용보증의 심사기준 완화 : 1차 심사기준 적용, 2차 심사면제
 - 3) 보증심사 특례적용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
6.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다운가능
 - ②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원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⑥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용자신청서류 접수(직접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 2010. 9. 24 ~ 10. 31
(단 공휴일, 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8. 융자신청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자 치 구 명	영 업 점	전 화	위 치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2174-5511	마포구 마포로 108(공덕역 3번 출구)
강남구	강남지점	3467-3621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10층(역삼역 8번출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대문지점	3670-5811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빌딩 3층 (종로5가역 12번 출구)
영등포구, 동작구	영등포지점	2168-7311	영등포구 경인로 15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 7번 출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지점	901-5411	강북구 도봉로 357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3층(수유역 8번 출구)
구로구, 금천구	구로지점	2027-7511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 벤처센터 7층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광진구, 성동구	광진지점	2049-4311	광진구 광나룻길 469 우리은행 구의동지점 3층(구의역 1번 출구)
중랑구, 노원구	중랑지점	490-4211	중랑구 동1로 강오빌딩 4층 (중화역 4번 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2657-6411	강서구 송화길 15 서울산업지원센터 1층 (등촌역 6번 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2143-4511	송파구 중대로 11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빌딩1층 (가락시장역 2번 출구)
은평구, 서대문구	은평지점	350-4611	은평구 통일로 342 파레제페빌딩 3층 (연신내역 3번 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2224-9711	강동구 천호대로 850 태승빌딩 2층 (천호역 7번 출구)
중구	명동지점	3783-5711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명동역 8번 출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사당동	사당지점	520-1911	동작구 사당동 1042-19 태광빌딩 2층 (사당역 8번 출구)

※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0호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철거한 아래 업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전 청문통지(공시송달)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 제 목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9. 30. ~ 2010. 10. 15.(15일간)
- 처분원인 : 폐업신고 미필
- 공고내역

연번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역
1	먹는샘물수입판매업	62	(주)오일나라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빌딩1611호	권기영	등록취소 (2010.9.24자)
2	먹는샘물수입판매업	90	두희물산	용산구 한강로3가 40-604	안영환	등록취소 (2010.9.24자)
3	먹는샘물수입판매업	117	(주)그린디파트먼트오브코리아	용산구 한남동 79-3(3층)	장사무엘	등록취소 (2010.9.24자)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2	(주)그린디파트먼트오브코리아	용산구 한남동 79-3(3층)	장사무엘	등록취소 (2010.9.24자)

□ 고지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중위생과(☎ 02-3707-9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10 - 64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9월 20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녹색교통문화진흥회
4.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10-7
5. 대표자 : 김 종 기
6. 설립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交通安全 실천방안 및交通安全 의식을 향상시키고, 어렵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통편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8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조례안 (6)	1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녹색환경정책담당관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제과
	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심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심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제과
의견 청취안 (3)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과
동의안 (1)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국제협력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8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홍보담당관 부서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홍보담당관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폐기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0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

2.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내용

등록공인명	규격	등록공인인영	등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 (최초사용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인	2.7cm×2.7cm		-	2010.9.27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의인	2.7cm×2.7cm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인	2.1cm×2.1cm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인	2.1cm×2.1cm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인	2.1cm×2.1cm			

3.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내용

폐기공인명	규격	폐기공인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일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인	2.7cm×2.7cm		-	2010.9.27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인	2.7cm×2.7cm		-	
서울특별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단장인	2.4cm×2.4cm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인	2.1cm×2.1cm			
서울특별시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인	2.1cm×2.1cm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인	2.1cm×2.1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사유

- 2010.3.22 도로법 일부개정으로 벌칙규정에 과태료 추가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의한 신규 등록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강서도로사업소 징수관	한글전서체 2cm×2cm 정방형		2010.9.27	2010.3.22자 도로법 일부개정 및 2010.9.27자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강서도로사업소 수입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방형		2010.9.27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2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의 지정명칭 변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명칭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지정명칭 변경안

종별번호	현재 지정명칭	지정명칭 변경안
민속자료 제18호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관훈동 민씨가옥

2. 명칭변경 사유

- 원래 종로구 관훈동 30-1에 위치했던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은 1977년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학계에서 이미 철종의 사위이자 영혜옹주(永惠翁主:1859년~1872년)의 남편인 금릉위 박영효(朴泳孝:1861년~1939년)가 살았던 집으로 알려져 왔으나
- 2년여 동안 정밀 사료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으로 알려진 한옥은 박영효가 거주했던 가옥이 아니라, 여흥민씨 세력의 좌장으로 일제 강점기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던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대저택의 일부로, 민영휘의 아들이자 동일은행 이사장을 지낸 민대식과 민대식의 맏아들 민병수, 민영휘의 큰딸 민운식 등 민영휘 일가가 1970년대까지 거주하던 가옥임이 새롭게 규명됨
- 따라서 새롭게 밝혀진 동 가옥의 역사적 성격에 따라 문화재 지정명칭을 <서울시 가옥 명칭부여 기준>에 따라 <관훈동 민씨 가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사료조사 및 오류규명 결과 개요 : <별첨 1>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71-2594
 - ② 팩스 : (02) 2171-2589
 - ③ 우편 :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금번 변경 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 비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2171-2594로 문의하시거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시정소식(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사료조사 및 오류규명 결과

☐ 근거사료

-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독립신문> 등 조선후기~일제강점기 신문
- 1910년~1911년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와 경무총감부에서 작성한 <경성부 시가도>·<경성·용산시가도> 등 조선후기~일제 강점기 각종 지도
- <고종실록>·<순종실록>·<대한제국관원이력서>·<영혜옹주길례등록>·<매천야록>·<갑신일록>·<윤치호일기>·<알렌의일기>·<주한일본공사관기록>·<조선교섭자료>·<조선신사록>·<조선신사보감>·<조선신사명감>·<조선인사흥신록>·<별건곤>·<삼천리>·<개벽> 등 조선후기~일제 강점기 각종 문헌자료

☐ 오류규명 결과

○ 관훈동 30-1 가옥의 성격

- ▶ 동 가옥은 박영효가 거주한 가옥이 아니라 그에 인접한 가옥으로, 명성황후의 정치적 배후인 여흥민씨 세력의 구심점이고, 중추원의장(오늘날 국회 의장)을 지냈으며, 휘문의숙(오늘날 휘문중·고교)을 설립하기도 한 친일파 민영휘(1852~1935)가 1894년 청일전쟁 후 정치적으로 실각해 그 전에 명성황후의 배려로 살던 안국동의 감고당(인현황후가 폐위 시 거주하던 곳)을 떠나 1895년부터 1935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관훈동·경운동 일대 대저택의 일부(소실집)임
- ▶ 민영휘의 소실로 풍문학원을 설립한 안유평과 그 아들 민대식(민영휘의 서장자(庶長子)로 동일은행 이사장을 지냄) 그리고 민영휘의 큰딸 민윤식의 가족들이 1970년대까지 거주하였음

○ 부마도위 박영효가 실제 살았던 집은 경운동 88번지 등 서울에 총 5 ~ 6곳

- ▶ 경운동 88번지(오늘날 천도교 중앙대교당 일대) : 1872년 부마 간택~1883년 12월 일본공사관에 매각
- ▶ 윤니동(정확한 지번 불명)·압구정 강정(江亭) : 갑신정변 시기(1883년 12월~1884년 12월 일본 망명)
- ▶ 안국동 8번지(오늘날 안국동 윤보선가) : 1894년 11월(8월 1차 일본 망명에서 귀국 후)~1895년 7월(2차 일본 망명)
- ▶ 경운동 89번지 : 1907년 6월(2차 일본 망명에서 귀국 후)~1907년 8월(제주도 귀양) 1910년 10월(제주도 귀양에서 서울로 복귀)~1911년 9월(민병석에게 매각)
- ▶ 송인동 76번지(오늘날 송인동 롯데캐슬 천지인 일대) : 1911년 9월~1939년 9월 24일 사망

민영휘 (閔泳徽 : 1852년(철종 3)~1935년) 인적사항

본관은 여흥(驪興). 초명은 영준(泳駿). 자는 군팔(君八), 호는 하정(荷汀). 민두호(閔斗鎬)의 아들이다.

187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에 제수된 뒤 주서(注書)·겸설서(兼說書)·정언(正言)·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승진하면서, 당시의 민씨 척족의 세력을 배경으로 정계에 등장하였다.

민씨 척당의 중심적 인물로 1882년 임오군란 때는 난군의 습격을 받고 가옥이 파괴당하기도 하였다.

1884년金玉均(金玉均) 등의 갑신정변을 진압, 1886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1887년 5월 청나라의 간섭 아래 수교, 체결한 외국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주일변리대신(駐日辦理事)으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귀국 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1889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로 전직하였다가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에 오르고 이어 형조·예조·공조의 판서를 차례로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청나라를 비롯한 외교관계에 있어 민영익(閔泳翊)의 역할을 대신 맡으면서부터는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영합하였다. 1891년 경리사(經理使)와 이조판서를 거쳐 연무공원판리(鍊武公院辦理)가 되었다. 그 뒤 민씨세력의 수령으로 당대에 으뜸가는 탐관오리로 꼽히면서, 1893년 내무부독판(內務府督辦)·통영사(統營使)·경리사·선혜야문당상(宣惠衙門堂上)을 겸

직하고 이듬해 친군경리사(親軍經理使)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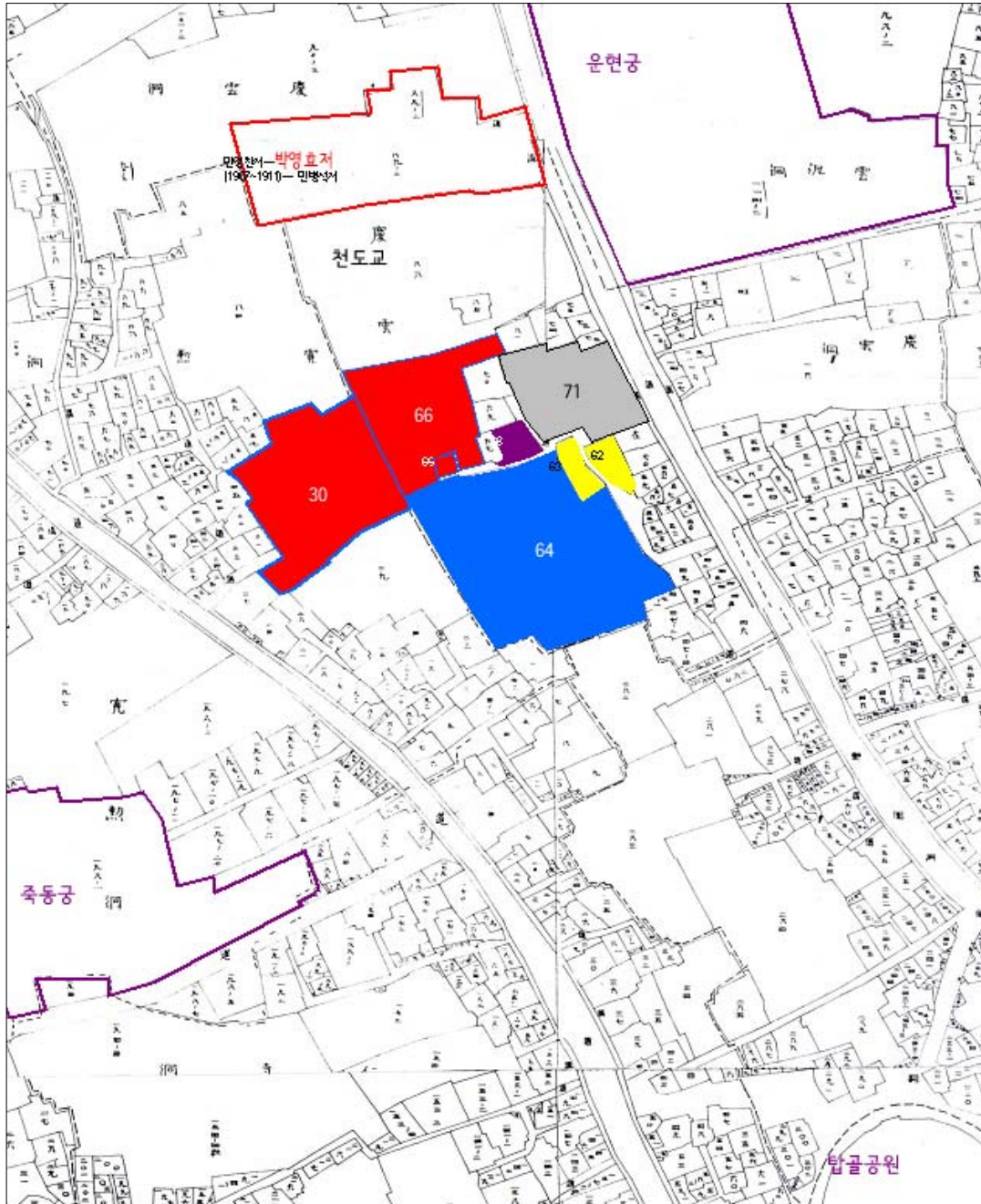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게 지원을 요청, 혁명군 토벌을 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후 선혜청 당상을 사임하고 칩거하였다.

그 뒤 갑오개혁으로 민씨 척족과 함께 실각, 부국탐학(負國貪虐)하여 이치민원(以致民怨)한 죄목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에 유배되었으나 탈출, 평양으로 잠행하여 벽동(碧潼)의 청군부대에 은신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이듬해 일본측의 농간으로 대원군측의 이준용(李埈鎔)과 교환조건 형식으로 대사령으로 귀국, 중추원의장·시종원경(侍從院卿)·헌병대사령관·표훈원총재(表勳院總裁)를 역임, 정부로부터 훈일등팔괘장(勳一等八卦章)·태극장·태극이화대수장(太極李花大綬章) 등을 받았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거액을 투자하여 동일은행(東一銀行)과 1906년 휘문학교(徽文學校)를 설립하였다.

관훈동 30-1 소재 <민영휘 저택> 관련 지도



▲ 경성부지형명세도(1929년)상의 민영휘 일가 저택

- 1929년 기준으로 관훈동 30·198번지, 경운동 62·63·64·65·66·68·71번지 일대를 점유

관훈동 30-1 소재 <관훈동 민씨 가옥> 관련 설명

- 관훈동 30-1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은 최초 건립시기와 건립자가 불명하나 민영휘가 1895년 안국동으로부터 교동으로 이주하면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가를 거주하게 한 가옥 중 하나이다.
- 민영휘와 그 본처, 입양한 장남 민형식(閔衡植)은 경운동 64번지에, 민영휘의 첩인 해주마마 안유풍(安遺豐) 및 민영휘와 안유풍 사이에서 태어난 민대식(閔大植)은 관훈동 30번지와 1924년 이후 관훈동 198번지의 죽동궁(竹洞宮 : 명성왕후의 오빠 민승호와 조카 민영익이 거주한 곳)에, 민대식의 맏아들이 민병수(閔丙壽)는 관훈동 198에 살다 관훈동 30에, 민대식의 둘째 아들이자 요절한 민천식(閔天植)의 양자인 민병도(閔丙燾)는 경운동 68번지와 71번지에, 민대식과 중국인 나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병옥(閔丙玉)과 민병완(閔丙琬)은 경운동 66번지에 거주하는 등 민영휘 일가는 경운동과 관훈동 일대 한데 모여 살았다.
- 1923년 무렵 관훈동 198에 있던 죽동궁을 민영휘가 해주마마에게 매입해 주면서 그 맏아들인 민대식이 죽동궁을 소유하게 되고, 대신 관훈동 30번지를 민영휘의 맏딸로 1922년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온 민윤식(閔潤植)이 1924년 사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그 조카이자 민대식의 아들들인 민병수 등이 여전히 관훈동 30에 거주하고 있었다.
- 관훈동 30번지에는 1936년 기준으로 총 6동의 목조와죽과 2층 양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976년 관훈동 30번지에 있던 가옥 중 일부가 멸실되고 안채 일부와 문간채 등 목조와죽 2동만 남아있었으며, 이 가옥이 1977년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로 지정되었다.
- 이 가옥은 1966년 민윤식이 그 아들인 이홍재(李弘宰)에게 증여하고, 이홍재는 다시 1967년 그 자식들인 이진완·이진승·이문승·이정완·이규승·이사영 등 총 6인에게 상속함으로써 민영휘의 외손들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9년 박승규·이진환·성상호·유대열 등 4인에게 경락되면서 민씨 일가와 관련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80년 동북건설주식회사 ⇒ 1983년 유정순(가등기) ⇒ 1983년 조흥은행(가등기) ⇒ 1984년 대왕흥업주식회사(가등기) ⇒ 1986년 경인미술관으로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동하였으며 경인미술관 소유 당시이던 1995~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안채 일부와 문간채가 이전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공고

도로법 개정으로 신설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남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남부도로사업소 징수관	한글전서체 2cm * 2cm		시세외수입 관련 업무처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남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남부도로사업소 수입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교통지도과로 부서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교통지도과로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폐기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담당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교통지도과로 부서명칭변경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담당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담당관 본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09.27	교통지도과로 부서명칭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직인 폐기 사유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한 폐기등록 및 2010년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변경에 의한.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사 유
문화시설사업단 신청사담당관	신청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9.27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신청사담당관 본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96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안)을 열람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면적 : 531,830㎡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내 용			비고
대 지 면 적	531,830.00㎡			
단 계	1단계(금회)	2단계(예정)	3단계(예정)	
건 축 면 적	30,389.16㎡	107,813.66㎡	263,142.20㎡	
건 폐 율	5.71%	20.27%	49.48%	법정:55.00%이하
연 면 적	210,957.93㎡ (총 2개동)	328,987.66㎡ (총 5개동)	547,059.22㎡ (총 7개동)	
용 적 륜 (지상층연면적)	13.33% (70,878.78㎡)	24.78% (131,762.76㎡)	55.11% (293,103.79㎡)	법정200.0%이하
조경면적	81,687.15㎡ (15.36%)	93,116.77㎡ (17.51%)	115,413.79㎡ (21.70%)	법정 79,774.50㎡ (대지면적의 15%이상)
층 수	지하3층/지상18층	지하3층/지상18층	지하3층/지상18층	
주차대수	2,091대	4,037대	8,795대	법정 : 4,270대
공사기간	2011년~2013년	2013년~2015년	2015년~2018년	

※ 금회 1단계 사업시행 2, 3단계는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 예정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표 김주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 1단계(공구) : 실시계획인가일~2013년
 - 2단계(공구) : 2013년~ 2015년
 - 3단계(공구) : 2015년 ~2018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대	542,860	530,621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2	대	60	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0	전	20	2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1	전	136	136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2	전	73	73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8	도	40	4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9	도	248	248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41-35	구	14	14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814-1	도	618	618	-	서울특별시			
합계				544,069	531,830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6321-4027) 및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공사1팀(☎ 3435-05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공고

◆ 교육청공고 제2010-15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	부 의 안 건	제 출 자	비고
1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과학영재교육과)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0-7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중고 제65호(2010. 8.19)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된 신당동 292-60 외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가정복지과(☎02-3396-54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 모	사업기간	시설결정고시
중구 신당동 292-60, 292-100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대지 : 608㎡ 연면적 : 2,183.3㎡	실시계획 고시일 ~ 2011년 6월	서중고 제65호 (2010. 8.19.)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 붙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가정복지과(☎3396-5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당동 292-60	대	337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2	신당동 292-100	대	271	"	"				

물 건 조 서

사업명 :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당동 292-60 외 1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블럭조 평슬래브지붕	2,183.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영업의 종 류	상 호 명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지하1호	레저용품 판매업	아스펜상사	1식	윤인환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지하1호			
2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102호	에어컨 설치업	(주)에어젠	1식	임대현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102호			
3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6층	미터기 제조업	한국엠티에스(주)	1식	경덕호	중구 신당동 292-60 한국빌딩 6층			

◆ 서대문구고시 제2010-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연세의료원 심장혈관병동 증축 : 제1회 설계변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대지위치	사 업 내 용	사업 시행자	비 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학교』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심장혈관병동 증축 ※ 건축(증축)규모(제1회 설계변경) - 증축부분(당초)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4,252.87㎡ - 증축부분(변경)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4,589.95㎡ -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나. 착수예정일 및 사용승인(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 1년

◆ 송파구고시 제2010-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43호(1983.11.2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2004-64호(2004.10.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시장(롯데월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 29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대표이사 신영재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이철우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잠실롯데 종합관광 유통시설공사

라. 사업규모

- 건축물용도 : 숙박,판매,위락,관람집회,운동,전시,업무,근린생활시설
- 시행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28,246.20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580,803.34	583,563.66	증2,760.32
시장연면적	237,228.01	280,903.05	증43,675.04
비도시계획시설 연 면 적	343,575.33	302,660.61	감40,914.72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변경없음

◆ 동작구고시 제2010-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중앙대학교 병원증축)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 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건축과(☎820-91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비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병원증축」	동작구 흑석동 224-1 일대	○ 사업면적 : 23,055㎡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학교법인중앙대학교 병원 증축공사 2.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15층 연면적 60,222.96㎡ ※ 증축내용 · 의료시설: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12,623.32㎡ · 주차시설:지하1층/지상 4층 연면적 6,103.91㎡	시행사:학교법인중앙대학교 주 소:서울시 동작구 흑석 동 221번지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4개월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0-6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00병원 이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삼청동 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00병원 이전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30일
종로구청장

1. 공 고 일 : 2010. 9. 30.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731-1444)
4.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청동 25-1호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00병원 이전사업)
 - 2) 사업의 명칭 : 군사시설(의료시설) 증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15,693.10㎡
 - 건축계획 : 건축면적 3,648.09㎡, 연면적 14,250.44㎡ 지하2층/지상5층
 - ※건축계획 범위내에서 건축협의를 따라 시행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 마. 사업 시행기간 : 2010.11월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등 명세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1	삼청동 25-1	대	15,693.1	국방부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 성동구공고 제2010-6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88호(2009.7.23)

로 결정된 금호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3가동 1266번지
2. 공원면적 : 13,467.8㎡
3. 조성계획(안)
 - 시설면적 : 5,372㎡(변경없음)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신축 (기존 건축물 철거)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02-2286-5654)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0-86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1.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1호(2007. 8.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9-4호(2009. 2. 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480-1395~7)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3번지 외 10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3번지 외 11필지

나.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동길 27(성내동 540)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명일근린공원 조성
- 라. 사업면적 및 규모
 - 면 적
 - 당초 : 43,508m²
 - 변경 : 43,888m²
 - 내 용(변경없음)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마.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1.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별첨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관계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 리명세	
당초	계	11필지		49,811	43,508						
변경	계	12필지		47,761	43,888						
당초	1	산43	임야	1,456	1,456		서울특별시				
변경	1	변경없음									
당초	2	산44	임야	900	900		서울특별시				
변경	2	변경없음									
당초	3	산45	임야	345	345		서울특별시				
변경	3	변경없음									
당초	4	산46-8	임야	6,000	6,000		서울특별시				
변경	4	변경없음									
당초	5	산50-3	임야	2,610	2,610		서울특별시				
변경	5	변경없음									
당초	6	산54-1	임야	10,000	10,000		서울특별시				
변경	6	변경없음									
당초	7	145-8	전	2,468	2,468		서울특별시				
변경	7	변경없음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 리명세	
당초	8	산38	임야	17,212	17,212	최희련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27-904				지분 27/50
							서울특별시				지분 23/50
변경	8	산38	임야	17,212	17,212		서울특별시				
당초	9	135-3	전	117	117	이운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92-6				
변경	9	135-3	전	117	117		서울특별시				
당초	10	산21-1	임야	3,050	1,000	박장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7-207	(주)삼화상호 저축은행	강남구 삼성동 157-36	근저당권 지상권	
								(주)삼화두리 상호저축은행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1	근저당권	
변경	10	산21-4	임야	1,000	1,000	박장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7-207	(주)삼화상호 저축은행	강남구 삼성동 157-36	근저당권 지상권	
								(주)삼화두리 상호저축은행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1	근저당권	
당초	11	산34	임야	5,653	1,400	양태진	서울시 상일동 산34				
변경	11	산34-1	임야	1,400	1,400		서울특별시				
추가	12	산34	임야	4,253	380	양태진	서울시 상일동 산34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0-152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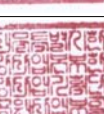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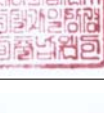
한강사업본부 조직개편 및 회계관직 변경으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직 직인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직인의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과 (공원사업부)	공원사업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공원사업부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공원사업부 분임물품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한강사업본부 공원계획과 (공원시설부)	공원시설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공원시설부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공원시설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2. 폐기직인 내역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사 유
한강사업본부 기획과 (사업기획부)	사업기획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사업기획부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사업기획부 일상경비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과 (공원사업부)	공원사업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공원사업부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공원사업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한강사업본부 시설과	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시설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10.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 동부도로사업소공고 제20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장

1. 직인 등록 사유

- 2010. 9. 23. 字「도로법」개정에 따라 운행제한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한 신규등록 및 2010년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의함.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동부도로 사업소 장 수 관	한글전서체 2cm×2cm 정방형		2010.9.27.	도로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신규등록 및 2010.9.27.자 조직개편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동부도로 사업소 수입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방형		2010.9.27.	"

◆ 북부도로사업소공고 제2010-1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2010.9.17일 일부개정 공포)으로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과태료 업무를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직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장

1. 직인의 등록

소관부서	회계관직 명칭	서체및 규 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등록사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북부도로사업소 징수관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27	회계관계공무원 신규지정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북부도로사업소 수입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10. 9.27	회계관계공무원 신규지정

◆ 북부도로사업소공고 제2010-1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010. 9. 27 조직개편으로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관직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장

1. 직인의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명 변경

2. 직인명 및 인영 등록(폐기) 일자

소관부서	회계관직 명칭	서체및 규 격	인 영	등록(폐기) 일 자	비 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지출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물품관리관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록

소관부서	회계관직 명칭	서체및 규 격	인 영	등록(폐기) 일 자	비 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지출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물품관리관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소관부서	회계관직 명칭	서체및 규 격	인 영	등록(폐기) 일 자	비 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소관부서	회계관직 명칭	서체및 규 격	인 영	등록(폐기) 일 자	비 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등 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2cm×2cm		2010. 9. 27	폐 기

◆ 남부도로사업소공고 제20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남부도로사업소장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5019호, 2010.09.27) 및 동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제3766호, 2010.09.27)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업소 명칭변경, 2010.09.2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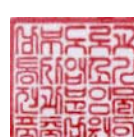
2. 등록인영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경리관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직개편 (‘10.09.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물품관리관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지출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직개편 (‘10.09.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굴착복구기금지출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 유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직개편 (‘10.09.27)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3. 폐기인영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경리관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직개편 (‘10.09.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물품관리관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지출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굴착복구기금지출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직개편 (‘10.09.27)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건설사업비특별회계지출원	한글전서체 2.0cm*2.0cm 정사각형		2010. 09. 27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 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조작개편 (‘10.09.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기전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정사각형		2010. 09. 27	

◆ 도봉소방서공고 제2010-24호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3월)을 받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도 봉 소 방 서 장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기간)	적용법규
신현엔지니어링 [서울 도봉구 창동 630-24]	이태형	소방시설공사업 (일반-기계분야) [제도봉2006-5호] (2006. 5. 30)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주인력 및 보조인력)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영업정지 3월 (2010.9.30~ 2010.12.2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2호 나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956-0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소방서공고 제2010-5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관 악 소 방 서 장

대 상 명	업 종	주 소	업주명	면 적	
				연면적	영업장면적
삼정 고시원	고시원	관악구 낙성대동 1594-7	오 경 민	1778.18㎡	1543.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875-4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83번지 등 7필지
 - 면 적 : 15,6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제방사면 녹화
 - 개 요 :
 - 시 설 공 : 호안사면(식재기반) 조성 12,480㎡
경계석 설치 2,742m, 계단정비 1개소
배수관(D=100mm) L=1,760m, 유공관(D=150mm) 910m
 - 식 재 공 : 식생매트 설치 12,480㎡(수크령 등 10종)
 - 포 장 공 : 탄성포장 3,011㎡
 - 기타시설 : 안내판 1개소, 초화류명패 30개소, 관수설비 1식 등
5. 점용기간 : 영구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3(화곡동 980-16호)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3-1번지 및 226번지
- 면 적 : 1,259㎡(영구: 536㎡, 일시: 72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배수펌프장 토출암거 설치
- 개 요 : 토출암거(3m×2.5m×2연) : L=78.6m
- ※ 일시점용시설물 : 도달기지 및 복공판, 임시자전거도로 1식 등

5. 점용기간 : 영구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종량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07-6번지 등 75필지 일원
- 면 적 : (당 초) 101,192㎡(영구: 85,910㎡, 일시: 15,282㎡)
(변 경) 101,536㎡(영구: 85,910㎡, 일시: 15,6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개 요 : 붙임

5. 점용기간 : 영구

〈붙임〉

공 사 개 요

당 초	○ 영구시설물 - 동부간선도로 개설 L=3.2km, B=3차로(10.5m) - 마들길 확장 L= 2.3km, B=4차로(12m) - 옹벽설치 L=2,329m (역T형옹벽 220m, 켄틸레버형옹벽 1,089m, U타입 옹벽 1,020m) - 지하차도 3개소 L=1,080m (녹천지하차도 L=130m, 창동지하차도 L=130m, 도봉지하차도 L=820m) - 상수도관 설치 (D=2,000mm L=50m, D=1,650mm L=400m, D=1,200mm L=60m) ○ 임시시설물 - 가도설치 : L=3.2km, 가시설 설치
변 경	○ 영구시설물 - 동부간선도로 개설 L=3.2km, B=3차로(10.5m) - 마들길 확장 L= 2.3km, B=4차로(12m) - 옹벽설치 L=2,329m (역T형옹벽 220m, 켄틸레버형옹벽 1,089m, U타입 옹벽 1,020m) - 지하차도 3개소 L=1,080m (녹천지하차도 L=130m, 창동지하차도 L=130m, 도봉지하차도 L=820m) - 상수도관 설치 (D=2,000mm L=50m, D=1,650mm L=400m, D=1,200mm L=60m) ○ 임시시설물 - 가도설치 : L=3.2km, 가시설 설치 - 가교설치 : L=75m, B=4.5m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회사무총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 면 적 : 61,9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 개 요 : (당초) 주차장 1식(746면), 체육시설(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그늘막 1개소
(변경) 주차장 1식(746면), 체육시설(축구장 2면-국회회기 등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한해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족구장 3면), 그늘막 1개소
5. 점용기간 : 2008.03.23 ~ 2013.03.22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개화동 일원
 - 면 적 : (당 초) 7,036.5㎡ → (변 경) 7,037.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
 - 개 요 : (당 초) 가스관로(D=600mm) : L=6,342m
(변 경) 가스관로(D=600mm) : L=6,345m
5. 점용기간 : 2005.12.31 ~ 2010.12.31

